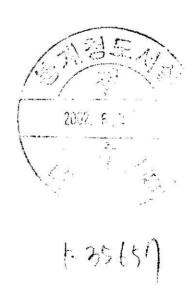
201 50 6247 CiV

제7회 『통계의 날』기념 세미나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와 생활시간 활용 및 배분-

2001.9



통 계 청

○ 행사일정

일 시	일 정	비 고
13:00~13:30	참가자 접수 및 등록	
13:30~13:40	- 개회식 · 개회선언 · 청장님 인사말씀	- 사회 : 사회통계과장
13:40~13:50	- 생활시간조사 개발현황과 전망 발표	- 발표 : 기획과 손애리 사무관
13:50~14:00	- 제1부 사회자 인사 및 발표자, 토론자 소개	
14:00~14:40	- 주제1, 주제2 발표	- 각 20분씩
14:40~15:00	- 주제별 지정토론자의 토론	- 각 10분씩
15:00~15:20	- 제1부 종합토론	
15:20~15:40	- 휴 식	
15:40~15:50	- 제2부 사회자 인사 및 발표자, 토론자 소개	
15:50~16:50	- 주제3, 주제4, 주제5 발표	- 각 20분씩
16:50~17:20	- 주제별 지정토론자의 토론	- 각 10분씩
17:20~17:50	- 제2부 종합토론	
17:50~18:00	- 폐 회	

이 자료는 통계청의 연구용역의뢰에 따라 김준영(성균 관대), 문숙재(이화여대), 이기영(서울대), 김승권(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이재현(충남대) 5명이 연구 집필한 것 으로서 그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통계청의 공식견해 와는 무관합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집필자 또는 통계청(☎ (042)-481-2269 · 227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 「생활시간조사」 개발현황과 전망1 ♣ 발표 : 손애리 (통계청)
○ 제 1 부 :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 주제 1.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반영의 종합적 연구13 ♣ 발표 :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 주제 2.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개발의 기초분석 37 ♣ 발표 : 문숙재 (이화여자대학교)
○ 제 2 부 : 생활시간활용 및 배분
 ○ 주제 3.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57 ♣ 발표 : 이기영 (서울대학교)
 ○ 주제 4.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83 ♣ 발표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제 5. 한국인의 여가 및 문화시간 분석113 ♣ 발표 : 이재현 (충남대학교)

「생활시간조사」 개발현황과 전망

통 계 청 손 애 리

「생활시간조사」 개발현황과 전망

손 애 리

I. 들어가는 말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토지, 자본, 지식 같은 다른 자원과는 달리,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씩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축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으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겨지는 것도 아니다. 즉, 시간이라는 자원을 사람이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행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하여 활용할 것인가 정도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진이 달라지고, 한 나라의 대다수 국민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모습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의 선택의 폭이 증대되면서 생활양식이 다양화되어 자원으로서의 시간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일상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활용조사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통계청은 우리 국민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개인의 특성별 생활양식과 삶의 모습에 관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사를 개발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0년에 공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시간활용연구의 목적과 쓰임새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동향 및 방법론적 다양성을 소개하도록 한다. 또한, 통계청에서 「생활시간조사」를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도하였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적 기법과 시행착오, 구체적인 현장사례 및 특징과 한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생활시간조사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의해 본다.

Ⅱ. 시간활용에 관한 연구 동향

시간활용연구에 관한 논문은 1913년 미국에서 출판된 "일하는 남자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Bevans, 1913)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이후 정부 또는 연구소차원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미국(1920, by Univ. of Cornell), 러시아(1924), 영국(1938, by BBC)등이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1969년부터는 NHK에 의해, 1976년부터는 통계국에 의해 대규모 조사가 정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는 1986년전국규모의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998년까지 3차례 실시하였고, 네덜란드는 1975년 이후 1998년까지 5차례, 노르웨이는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3차례 실시하는 등 현재 30여개국 이상에서 생활시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국가간 시간활용형태 비교를 위한 조사가 1960년 중반에 시도되었는데, 13개국에서 "다국가간 생활시간조사(Multinational Time Use Study)"가 동시에 실시된 바 있다. 이런 시도는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나는데,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HETUS)가 EUROSTAT에 의해 주도되어 유럽 18개국에서 1997년에 시험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곧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통합된 행동분류체계와 조사표를 개발중에 있다. 통계청에서 개발한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방법의 많은 부분을 HETUS와 공유할 수 있도록 행동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시간활용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1981년 KBS에 의해 시간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국민생활시간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1995년까지 6차례 실시되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주부의 생활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조사를 1979년 이후 실시하고 있고, 그 이외 연구자들에 의해 소규모 연구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전자의 경우는 조사목적이 각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대별, 요일별 대중매체 이용실태 및 여가생활의 파악에 주어져 있었던 반면, 후자의 연구들은 주로주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과 기본자료를 통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 목적 등 가정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기존의 시간연구들이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한 특화된 소규모 조사들이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간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정책적 활용도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1997년 처음으로 시간에 관한 조사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고 국제비교도 가능한 행동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10세 이상 약4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생활시간조사의 목적과 유용성

1.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파악에 활용

생활시간조사는 무보수가계노동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계정을 산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의 국민계정은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그 한계를 지적 받고 있는데, 전통적인 경제 개념으로는 아이돌보기나 가사노동과 같은 무보수가계노동까지 포함하는 총생산활동의 규모와 구조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 받는다(Goldschmidt-Clermont, 1987; Juster & Stafford, 1991). 무보수로 행해지는 가사노동, 쇼핑하기, 서비스하기 등을 생산활동으로 규정하는 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보수노동은 총생산노동의 절반에 채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실제보다 낮게 파악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가족구성원에 의한 자원활동이 많은 나라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심한데, 지난 1995년 뻬이징 여성국제회의에서는 비시장생산에 소요된 노동시간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활용조사를 실시할 것을 모든 나라에 적극 권장한 바 있다.

2. 노동력 분석(Labor Force Analysis)에 활용

현재의 노동력 통계는 중사상 지위가 상이한 집단간 실제노동시간의 차이를 파악하기에 미흡하고, 고용된 노동에 한정하여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시간활용조사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실제노동시간의 차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Niemi, 1990), 임금노동뿐만 아니라모든 종류의 시간활용형태를 보여줌을 통해 국가의 노동력 활용 실태에 관한 전체적인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

3. 사회변화(Social Change)의 파악 및 대처

생활시간조사는 근무시간대 및 근무형태, 쇼핑시간대, 전화 및 통신 이용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사회변화에 대처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직업, 나이, 성별에 따라 다양화되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통신 이용시간대 및 흡연 시간대도 파악될 수 있는데, 이런 행동과 관련된 시간활용자료는 행동패턴과 변화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삶의 질 파악에 유용(Quality of life)

생활시간조사는 교육, 보건, 가족생활, 사회적 교제 생활, 여가 등에 관한 다양한 사회자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연령별, 성별, 직업별 집에 머무는 시간대와 시간량 및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와 대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데, 가족과의 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더욱이 정보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가족과의 대면적 관계가 감소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서적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외국의조사결과에 의하면, 집밖에서 보내는 여가(outdoor recreation)활동보다 TV를 시청하거나 낮잠을 즐기는 등의 집안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제공되는 여가상품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경제지표 지향성에서 벗어나서 일과가정생활, 여가의 균형 정도나 교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편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어복지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여성 삶 파악에 유용(Women's Concerns)

생활시간조사의 자료는 특히 여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비시장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INSTRAW, 1995). 가사노동, 아이돌보기, 성별분업, 쇼핑하기, 무급가족총사일 등에 할당되고 있는 시간을 측정하여, 무보수로 행해지는 여성노동의 경제적 기여도와 사회적 지위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6. 여가 생활 및 이동에 관한 사항

그 외 생활시간조사는 취업자, 주부, 학생, 노인 집단에 따른 대중매체 이용시간대 차이와 이용형태의 변화에 관한 정보 및 여가 시간 활용 실태 및 취미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 주민의 연령이나 학력별 특성이나 지역특성에 적합한 문화 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하루 일과 중 사람들이 이동한 것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파악이 되어 어떤 시간대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얼마만 큼의 시간동안 이동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동 및 여행에 관한 정보는 시간대별 이동자 수와 필요한 교통수단 및 교통량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IV. 생활시간조사의 개발 과정 및 방법론적 논의

최근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가치의 우선 순위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여가에 대한 욕구도 증가되고,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진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산업 및 고용구조가 유연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며 하나의 직업만 가졌던 이전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고,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수면을 취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생활 양식도 변화되어 야간에 업무를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시간에 대한 고정 관념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무보수로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던 가계부문생산의 경제직 역할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도 사회적으로 요청되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유형과 노동시간, 그리고 무보수 가사노동량의 파악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97년부터 "생활시간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의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삶의 영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시간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용한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유급 또는 무급노동에 분배되고 있는 시간 측정, 개인복지 및 경제적 복지를 위한 노동과 여가의 균형, 무급의 가사노동에 대한 화폐적 가치측정을 통하여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되며, 각종 문화, 교통·관광, 노동 등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나라에 다라 조사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론이 상존하며, 어떠한 측정방법이 절대우위라는 합의에 이른 것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시간지각(time perception)은 그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이 받으며, 사회마다 문화는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를 관찰하여 시간을 측정할 것인지, 응답자 스스로 기록하게할 것인지, 몇 세 이상부터 자신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가능한지, 어떤 계절에 조사하는 것이 계절적 요인이 가장 적은지, 응답자는 몇 일 정도 기입해 줄 수 있는지, 시간을가장 잘 인식하는 최소 시간 단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사 도구를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조사실시에 앞서 3차례의 시험조사와 마지막점검을 위한 시범예행조사(Dress Rehearsal)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검증해 보았는데, 그 과정을 방법론적 대안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조사 대상자 범위

조사 목적과 응답자의 기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결정해야 하는데, 특히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24시간동안 자신이 행한 행동을 정해진 시간간격에따라 스스로 기입해야 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웨덴(64까지로한정)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조사들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는데, 노년층의 생활양식과 시간활용 형태파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의 하한선은 편차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자 연령은 2세 이상(불가리아)부터 15세 이상(캐나다)까지로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사방법과 조사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정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만 1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자 연령을 낮추어 적용해보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의 시간일지(time-diary) 기입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하루에 행한 행동의 건수인 episodes 수가 평균보다 많이 나오고, 시간이 세분되어조사되는 등 조사 완성도가 높음이 증명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성상 초등학교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 11세의 사교육과 관련된 생활실태의 파악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EUROSTAT 권고안이 10세이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국제비교성도확보하기 위하여 연령 하한선을 만 10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한편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집의 가구원중 해당되는 가구원 전원을 조사할 것인지, 가구원중 한 사람을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것인지도 결정해야하는 사안인데, 응답자부담을 고려하면, 한가구당 1명을 선정함이 용이할 듯하나, 문헌조사결과 시간활용형태는 가족끼리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과 가족주기(family stage)에 따라 삶의 pattern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우리청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원중 1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단, 응답자의 부담이 가구원수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며, 특히 10세 이상 가구원이 많은 경우 응답부담에 따른 응답거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가구당 지급하던답례품을 조사대상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시간의 생활을 기입하는데 따른 사생활 노출과 시간적인 부담때문에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유럽국가처럼 무용답을 인정하는 조사방법을 원용하거나 또는 답례품 형태의 단일 보상제(incentive)를 개선하여, 조사예협조한 가구의 경우 자녀의 사회봉사 점수로 인정해 준다든지, 은행대출시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안이 향후 모색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2. 표본 규모 및 시간일지 작성기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는 다목적표본을 주로 이용하는데, 규모는 전국 3만가구로써 표본조사구는 7개 대도시와 각 도의 동부와 읍·면부의 총 25개 지역별로 작성된 추출단위 조사구명부에서 각 시도별 표본조사구 수 규모를 크기의 측도(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조사구내 가구수를 8로 나누어 반올림한 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계통추출한 표본이다. 처음에 생활시간조사를 설계할 때는 기존의 다른 특별조사와동일하게 다목적표본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의경우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즉 노령자거나, 실업자거나, 무학자이거나, 농촌지역거주자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전원의조사표가 분석 가능한 특징이 있고, 한편 다른 조사에 비해 조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점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표본 규모를 전국 17,000가구로 결정하였다.

표본규모의 축소가 가능했던 또 다른 요인은 시간일지 작성 날짜의 확대이다. 즉. 애초에는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해 응답자당 1일씩 시간일지를 기입하는 것으로 조사 설계를 했으나, 4차례의 시험조사에서 1일간 작성하는 방안부터 7일간 연속하여 작성 하는 방법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2일 연속 작성이 가능하며 조사의 질도 높음이 입증 되었다. 조사설계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한 응답자로 하여금 1주일간을 연속 작성하도록 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응답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불응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해 준 경우에도 7일 간의 시간일지를 실제 생활에 근거하여 기입하기보다는 평상시 생활 개념으로 매일매 일의 생활이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기입되는 문제가 나타나서 채택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1일 작성에 비해 오히려 2일간 연속하여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이 보다 성실했는 데, 작성의 요령이 숙지됨에 따라 이틀째 조사표의 행동발생건수(episodes)가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면의 경우 연속되는 이틀을 조사하는 것이 분석에 유리한 점등을 고려하여 시간일지 작성기간을 2일씩 결정함에 따라 표본규모를 절반정도로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가능한 시간일지 분량은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응답자 1인당 2일씩 작성함에 따라 회수되는 시간일지는 응답자 수의 두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간활용에 대한 분석 자료로 사용되는 시간일지는 표본규모를 축소시키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1차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17,000가구의 10세이상 가구원 약 47,600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42,973명의 약 86,000개였다. 표본규모 축소를 통해 조사비용이 절감되었을 뿐 아니라, 조사원 통제가 원활해짐에 따른 비표본오차의 감소 등의 효과도 수반되었다.

3. 시간 측정 도구 및 조사방법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시간일지 기록방법, 행동유형별시간 기록방법(log of specific activities), 그리고 질적 방법(qualitative methodology or ethnograph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일지 방법은 하루 일과를 응답자가 자신의 언어로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방법으로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기록되며, 동시행동과 행동이 일어난 장소, 누구를 위한 그리고 누구와 함께한 activities인지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행동유형별 시간 기록 방법은 연구목적이 특정 행동에 대한 관심에 있는 경우유용한 방법으로써, 행동종류와 유형을 미리 구분해 놓은 log를 재시하고, 각각의행동에 응답자가 얼마의 시간을 언제 사용했는지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분류해 놓은 활동의 범위 내에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응답자로 하여급 자신이 한 행동이 미리 분류되어 있는 행동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재택할 경우 미리분류된 행동의 범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지침목록을 제시해야 하고 응답자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방법 또는 민속지방법이라고 말하는 세 번째 조사 방법은 응답가 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하루종일 응답자의 일과를 관찰하고 조사원이 그것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한 반면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내용을 객관화하기가 어려우며 관찰자로 인한 거부감을 유발하여 응답거부 우려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시간활용조사의 예처럼 시간관념이 희박하고 시계의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벽지를 조사할 경우나,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자해독율도 높고 반면 사생활 노출을 기피하는 조사 환경을 감안하여 응답자가 직접 시간일지를 기입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입요령을 알려주고, 정확하게 실제 행동이 일어나 시점에 기입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이 응답가구에 매일 한차례 이상 방문하여 기입 과정을 점검하고 총 4번 이상 동일 가구를 방문하여 내용검증을 현장에서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한편, 응답 능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약한 극소수의 응답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응답가구를 자주 방문하고 조사원이 관찰하면서 기입을 해주는 방법도 일부 적용하였다.

4. 시간일지 설계 방법

pre-coded 시간일지는 발생 가능한 행동들을 연구자가 미리 분류하여 그 행동목록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가 자신이 행한 행동의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시간일지에 그 번호를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본과 영국 등에서 채택했던 방법이다. after-coded 시간일지는 일정한 간격의 시간에 따라 공백의 줄을 만들어 놓고 그 빈 줄에 응답자가 일기를 쓰듯 자신이 한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언어로 적게 하고, 회수한 후에 기입되어 있는 행동을 미리 구축해 놓은 일련의 행동분류체계에 맞추어 해당되는 번호를 코딩요원이 부호화 작업을 하는 방법이다.

조사를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시간일지 설계 방법이었는데, 문헌자료의 분석이나 다른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방법간의 장단점을 가리기는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1차 시험조사에서는 46개의 미리 분류해 놓은 행동분류목록을 제시하고, 생활계획표 모양의 원으로 그려놓은 시간일지에 하루 24시간을 15분 간격 으로 나누어 행동의 해당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는 pre-coded 시간일지를 적용하였다. 2차 시험조사에서는 일기장 모양의 소책자형태로 설계된 시간일지를 배부하고, 응답 자가 10분 간격으로 자신의 행동을 언어로 쓰고 회수한 뒤에 코딩요원이 부호화하는 after-coded 방법을 적용하였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 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3차 시험조사에서는 pre-coded와 after-coded 방법으로 설계된 시간일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1일 작성, 2일 작성, 7일 연속 작성 방법과, 원 모양의 조사표와 메모장 형태의 조사표를 각각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pre-coded 시간일지의 경우 코딩하는 시간이 짧으며, 코딩요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적고 객관식 답안에 익숙한 응답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장점은 있으나, 특정 행동이 어느 부호에 해당되는지 분별하기에 애매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번호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주는 단점도 나타났다. 반면, after-coded 시간일지는 응답자로 하여금 활동상황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행동분류에 구속받지 않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게하고, 조사표 설계상 어디서 누구와 행동했는지 동시에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구하기에 용이하였다. 물론 조사표 분량이 많아 응답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재코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조사표도구와 방법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소책자 형태의 after-coded 시간일지를 이용하여 연속된 이틀씩을 기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V. 생활시간조사의 향후 전망

국민의 시간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시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신규로 「생활시간조사」를 개발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개발과정에서 국가 공식 통계 작성 기관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러 번의 시험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대안들을 시도해 보고 연구설계 과정에서 미처 예견하지 못한 조사체계상의 문제점들도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아쉬움과 한계는 남게 마련이다. 조사의 특성상 응답가구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통계청으로서는 최초로 임시조사원의 조사수당을 성과급으로 실시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응답률이 80%를 상회하기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총 회수율이 94%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반면, 무리한 협조 요청에 의한 응답가구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었으며, 현장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절할 수 없는 관계로 지역특성상 조사가 어려운 조사구를 맡는 조사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조사를 위하여 연구되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자료 수집기간과 관련된 것인데,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조사대상가구를 균등하게 임의로 나누어서 일년 365일 동안 시간일지를 수집한다. 왜냐하면 시간활용 형태는 계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우리의 경우 9월 2일부터 14일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조사가실시됨에 따라 계절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추분에 맞추고, 특별한 행사가 많지 않고 시기로 조사시점을 정하기는 했지만, 아쉬움이 있다. 추석 직전이 조사시기인 관계로 성묘나 제사관련 행동이 평상시에 비해과다하게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행동분류체계를 개발할 때부터 별도의 부호를 마련해두어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었으나, 주말의 노동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과다하게 나타난 것은 추석특수에 의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았다. 따라서, 향후조사는 조사여건상 1년동안의 자료 수집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4계절이 뚜렷한 호주의 생활시간조사처럼 4계절 각각에 10일씩 총 4번의 조사를 실시하여계절성을 배제한 자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부용하여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인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반영의 종합적 연구

> 성 균 관 대 학 교 김 준 영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반영의 종합적 연구

김 준 영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국민계정에서 계측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이외에 가계 내에서 최종자가소비를 위한 가사 및 개인 서비스에 의하여 무급생산(unpaid production)된 비시장생산활동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측정 필요성이심각히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5년마다 Time use survey data를 활용하여 unpaid work(domestic work, household work)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1993년에는 UN의 '국민계정' 권고안에 따라 국민계정의 가계부문에 비시장경제활동을 포함함으로써 가계생산에 대한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1999년 통계청에서 전국단위의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기준의 시발점으로서 가계 내에서 이루어진 무급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및 평가모델 개발이 시급한 사회·경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소수계층에 속하는 결손가정 및 여성가장인 가계들이 직면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과 함께 좀 더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통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질적인 기여를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긴요한실정이다.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선진적 경제·사회정책 수립과 제도의 도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동 분야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1999년 이전의 국내연구들이 무급노동가치평가의 시도에 있어서 공식적인 생활시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규모표본을 기초로 조사한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태홍(2000)의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에 비하여 무급노동가치측정의 객관도를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무급노동가치평가는 평가방법에서의 객관도는 진전되고 있으나, 정확도와 정

밀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추계과정에서 노동유형별 또는 직종별 미시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중분류 또는 평균임금을 사용하였거나, 연령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가치평가에 있어서 무급(가사)노동의 임금적합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여성 또는 주부의 인구를 추계하여 각 연령별 주부수를 가치평가의 과정에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연령별 주부인구추계가 생략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가치추계과정에 투영시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비전 하에서, 비시장생산(non-market production) 부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보다 신뢰할수 있는 평가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를 제도적인 차원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가사노동가치의 신뢰성 있는 평가모델 개발 → 가사노동가치의 결정요인 부석 및 가사노동의 국민경제 기여도 측정 → 제도적 방안 제시

Ⅱ.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 및 평가측정

1.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모형

무급노동가치의 평가방법은 투입접근방법과 산출접근방법이 있고, 각 접근법은 수 량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급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무급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산출량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실현가능한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투입접근법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각 무급생산활동에 투입된 시간에 적합한 임금률을 곱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투입접근법에 의한 평가모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진되어 왔으나,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으로 크게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을 보다 세분시켜 네 가지 유형별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을 측정하고, 이들 네 평가모형에 임금가중치를 사용하여 통합평가모형으로 발전시키켜 무급(가사)노동을 평가할 것이다.

(1) 시장대체비용법

시장대체비용법(market replacement cost method)은 시장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가사일을 수행시키는 대신, 주부 스스로 가사일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추계방법이다. 이 추정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개별기능대체비용법

개별기능대체비용법(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은 가사노동영역에 속하는 각각의 기능을 분류한 후, 각 기능에 해당되는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하여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가사노동을 개별기능으로 나누어서 각 개별기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시켜 가사노동 가치를 추계한다. 이 추계방법의 기본요소는 가사노동의 기능에 따른 객관적인 대체임금의 존재이다.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평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WK_{IFR} = \sum_{j=1}^{N} \sum_{i=1}^{M} H_{ij}PK_{j}W_{ij}$$

단: UWK_{IFR}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개별대체비용추정치

 H_{ii} : i 기능의 j 주부(연령별 데모그래픽)의 무급노동시간

 PK_i : 연령별로 무급노동에 참여한 주부의 수

 W_{ij} : i 기능의 j 주부(연령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임금

특히 본 추게방법은 주부의 무급노동을 활동·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1992)』와 노동부에서 발표된 『임급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직종별, 연령별 임금자료(<표 1> 참조)를 이용하여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의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가사노동에 상응하는 소분류 시간당 임금을 <표 1>에서처럼 활동유형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가족보살피기의 평균임금이 7,940원으로 가정관리활동의 평균임금 5,212원, 참여, 봉사활동의 5,642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직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5,643원수준이었고,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50대가 6,134원으로서 가장 높고, 40대, 30대, 2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주부의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있어서 기본변수인 연령별 가사노동참여수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2000)」의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유배우 여자인구(1999년 5,315천명)에「생활시간조사」대상 표본의 연령별 주부가사노동참여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로 요약된다.

주부의 가사노동 참여수는 30대가 약 1/3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서였다.

<표 1>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

(단위 : 원)

	KSCO			연령특	별 시간	당 평균	-	위 : 원
시간사용코드	ユニ	무급노동 활동	평균임금	20대	,	40대	50대	60대
가정관리			5,212	5,329	5,231	5,297	5,729	4,265
411-412	512	식사준비 및 설겆이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13	741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3,298	3,409	3,329	3,501	3,461	2,552
421	913	세탁 및 세탁물 널기	3,593	4,615	3,620	3,389	3,170	2,935
422	512	옷정리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23-424	913	다림질 및 의류수선	3,593	4,615	3,620	3,389	3,170	2,935
425	743	재봉, 뜨개질	3,274	3,538	3,522	3,280	3,001	2,578
431	512	방, 물품정리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32-433	914	집안청소 및 기타	3,996	5,541	2,930	4,351	4,173	3,817
441	712	가재도구, 집수리 서비스 받기	4,944	4,838	6,665	3,454	3,234	5,061
442-443	914	세차 및 집관리	3,996	5,541	2,930	4,351	4,173	3,817
451-452	512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453	341	내구재 구매관린행동	9,160	7,913	9,575	11,396	12,391	2,457
461	412	가계부 정리	7,330	6,007	7,474	7,601	10,337	4,873
462	131	가정계획	10,483	9,212	9,333	10,774	11,510	13,529
463	412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7,330	6,007	7,474	7,601	10,337	4,873
499-841	512	기타 가사일	4,478	4,805	4,646	4,332	4,541	3,763
가족보살피기)		7,940	6,157	7,624	9,302	9,051	7,720
511-512, 519	233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8,398	5,682	7,532	9,962	10,812	9,049
521-523, 529	233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8,398	5,682	7,532	9,962	10,812	9,049
530, 540, 550, 851	323	배우자 및 부모 보살피기	7,022	7,106	7,809	7,983	5,528	5,061
무급가사노동	5		5,643	5,460	5,609	5,929	6,253	4,811
참여, 봉사횔	동	200000	5,642	4,856	5,821	5,868	5,682	5,859
610	51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4,264	3,830	4,589	3,799	4,023	5,061
641	511	국가 및 지역행사 지원	4,264	3,830	4,589	3,799	4,023	5,061
642	233	자녀교육관련봉사	8,398	5,682	7,532	9,962	10,812	9,049
643	323	아동, 노인, 장애인관련	7,022	7,106	7,809	7,983	5,528	5,061
644, 649, 861	511	재해지역, 기타자원봉사 및 이동	4,264	3,830	4,589	3,799	4,023	5,061
부급노동			5,643	5,334	5,653	5,916	6,134	5,029

자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2000)』 원자료 이용.

<표 2>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참여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주부수(명)	950,322	1,766,175	1,114,024	796,187	688,292	5,315,000
비율(%)	17.88	33.23	20.96	14.98	12.95	100.0

2) 주부대체비용법

주부대체비용법(housekeeper replacement cost method)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하나의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주부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전체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며, 구체적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WK_{HRC} = \sum_{i=1}^{N} H_{i}PK_{i}W_{Hi}$$

단, UWK_{HRC}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주부대체비용추정치

 H_i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즉,
$$H_j = \sum_{i=1}^{M} H_{ij}$$

PK;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수

WHi: j 주부(연령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평균임금

다시 말하면 주부대체비용법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j), 연령별 무급노동참여 주부수(PK_j) 및 연령별 주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임금(W_{Hj})을 사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산출한다. 이 추계방법에서 기본변수인 연령별 주부대체임금(W_{Hj})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로, 주부대체임금을 주부의 무급노동인 가정관리, 가족살피기 그리고 참여 및 봉사활동의 평균임금을 전체 주부의 총무급노동시간 대 각 유형별 무급노동시간 비율을 가중치로써 가중평균 하였다(주부무급노동 평균임금법). 그 결과 연령별 주부대체비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연령별 시간당 주부대체비용

(단위: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대체비용
대체비용 (W _{Hj})	5,537.8	5,853.7	6,334.6	6,584.5	5,170.6	5,919.0

주 : 전체대체비용은 연령별 대체비용을 연령별 전업주부수의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비용임.

주부대체비용은 50대까지는 상승하다가 60대 이상부터는 하락하였으며, 전체 주부의 대체비용은 시간당 5,919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3>의 가중평균한 주부대체비용을

보면, 20대의 대체비용이 5,537.8원으로 40, 50대의 대체비용보다 낮으므로 20대 전업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연구관례와 같이 가사근로자를 대체근로자로 삼고, 『한국표준직업 분류(통계청, 1993)』기준 KSCO코드 512(51211), 가사 및 관련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주부대체임금으로 사용하였다(가사평균임금법). 가사 및 관련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표 4>와 같이 4,478원으로 추계되었고, 연령별 임금은 20대가 4,805.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대, 5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서였다.

위의 두 접근방법에 의한 주부대체임금을 비교하면, 주부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한 주부대체임금이 가사평균임금법의 주부대체임금보다 약 32% 높게 추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접근방법에 의하여 주부대체비용법에 의한 무급(가사)노동가 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표 4> 연령별 시간당 주부대체비용Ⅱ

(단위: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대체비용
대체비용 (512직종)	4,805.1	4,646.0	4,331.6	4,540.1	3,763.1	4,478.0

(2)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주부가 무급노동에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유급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희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총기회비용법과 순기회비용법으로 구분된다.

1) 총기회비용법

총기회비용법(gross opportunity cost method)은 주부가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노동을 포기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이 한계임금률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GOC} = \sum_{j=1}^{N} H_j PK_j W_{GOCj}$$

단, UWK_{coc} :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총기회비용 추정치

 H_i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PK_i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수

 W_{GOCi} : j 주부(연령별 데모그래픽)의 전체 평균기회비용

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실제로 총기회비용은 무급노동에 대한 총시 간소비를 연령별 전체 평균시장임금율에 곱해서 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총 기회비용법은 노동시장구조, 고용지위(employment status), 심리적 소득(psychic income), 개별노동자에 대한 시장임금율의 적합성에 따른 상이한 가치를 반영하는데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부들의 연령별 총기회비용법(<표 5> 참조)을 구한 다음,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i), 연령별 무급노동참여주부수(PK_i) 및 연령별 총기회비용을 적용하여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2) 순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net opportunity cost method)은 주부들이 유급노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순기회비용으로써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순기회비용은 총기회비용에서 세금과 노동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임금소독에 해당되며, 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NOC} = \sum_{i=1}^{N} H_{i}PK_{i}W_{NOCi}$$

단, UWA NOC: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순기회비용추정치

 H_i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PK_i : j 주부(연령별)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수

 W_{NOC} : j 주부(연령별 데모그래픽)의 평균 순기회비용

그러나, 순기회비용의 측정시 기본자료인 세금과 노동관련비용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므로 순기회비용법에 의거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는 추게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정의 도시가계연보(1999)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여성근로자들의 평균소득세를 추계한 후, 이를 총기회비용에서 제외사켜 순기회비용을 계측하였다.

연령별 시간당 총기회비용, 소득세 및 순기회비용은 <표 5>과 같다. 시간당 순기회비용 역시 30대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시간당 기회비용

(단위 :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기회비용	5,086.3	6,333.1	4,889.3	4,252.2	4,516.5
소득세	10.6	19.5	25.9	8.1	12.1
순기회비용	5,075.7	6,313.6	4,863.4	4,244.1	4,504.4

주 : 소득새 = 연령별 평균소득세 ÷ 365 ÷ 연령별 1일 근무시간

(3) 통합대체비용법

통합대체비용법(integrated replacement cost method)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기회비용법 혹은 개별기능대체비용법으로 추계할 경우, 추계치의 결과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정한 4가지 평가가치를 적용하여 통합 평가하는 모형이다. 즉,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WK_I = \sum_{k=1}^4 \omega_k \cdot UW_k$$

단, ω_k 는 전체 추정방법별 임금가중치($\omega_1+\omega_2+\omega_3+\omega_4=1$)

특히,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다른 어떤 추정방법 보다 적종별로 미시적인 임금자료가 추계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총기회비용법은 현재 무급노동자로서의 주부들이 앞으로 사회진출을 하여 유급노동자로 전환될 경우의 가치를 평가하고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가지 평가기법에 의하여추계된 가사노동가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평가방법에 사용된 평균임금이 전체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통합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 표 6>의 임금가중치Ⅰ은 주부대체비용을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평균임금법에 의하여추계된 시간당 평균임금을, 임금가중치Ⅱ는 주부대체비용을 시간당 가사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되었다.

시간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임급가중치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이 비교석 높았으며, 가중치 편차는 $0.01 \sim 0.06$ 으로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개별기능체비용	주부대체비용	총기회비용	순기회비용
가중치 I	0.2608	0.2739	0.2330	0.2323
가중치Ⅱ	0.2792	0.2227	0.2494	0.2487

<표 6> 임금가중치 Ⅰ, Ⅱ

2. 주부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 추계비교

1999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 평가결과에 의하면,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67.4조원, 주부대체비용법 I 은 78.9조원, 주부대체비용법 II는 60.2조원, 순기회비용법은 71조원, 총기회비용법은 71.2조원으로 추계되었고, 이들 네 가지 방법에 의한 평가가치를 가중 평균한 통합비용법 I 은 72.3조원, 통합비용법 II는 67.7조원으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평가되었다. 주부 1인당 년간 무급노동가치는 평가방법에 따라 1,268만원에서 1,485만원으로 환산되었고, 통합비용법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결과 1,273만원 또는 1,360만원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주부무급노동의 1인당 월별 평가액은 94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추계되었고, 통합비용법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월별평가액은 106만원 또는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7> 각 방법별 주부의 노동가치 평가액 종합표

A. 무급가사노동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0 -3	총평가액 (10억원)	14,093.20 (21.11)	26,423.89 (39.58)	12,413.58 (18.60)	8,595.59 (12.88)	5,228.87 (7.83)	66,755.13 (100.00)
개별 기능 대체	1인당 평가액(원)	14,829,767	14,961,091	11,141,118	10,795,118	7,599,736	12,559,761
비용법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5,814	1,246,758	928,427	899,593	633,311	1,046,647
	GDP 대비	2.92	5.47	2.57	1.78	1.08	13.82
хн	총평가액 (10억원)	14,837.07 (18.99)	28,718.80 (36.77)	16,313.90 (20.88)	11,677.30 (14.95)	6,566.17 (8.41)	78,113.25 (100.00)
주부 대체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5,612,519	16,260,456	14,641,638	14,665,411	9,543,393	14,696,755
Î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301,043	1,355,038	1,220,137	1,222,118	795,283	1,224,730
	GDP 대비	3.07	5.95	3.38	2.42	1.36	16.18
ZН	총평가액 (10억원)	12,858.93 (21.57)	22,792.89 (38.22)	11,147.70 (18.70)	8,041.92 (13.49)	4,784.84 (8.02)	59,626.28 (100.00)
주부 대체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3,530,994	12,905,232	10,004,997	10,099,768	6,954,376	11,218,491
Ĭ Ĭ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27,583	1,075,436	833,750	841,647	579,531	934,874
	GDP 대비	2.66	4.72	2.31	1.67	0.99	12.35
	총평가액 (10억원)	13,611,51 (19.29)	31,069.32 (44.05)	12,583.00 (17.84)	7,531.10 (10.68)	5,742.83 (8.14)	70,537.77 (100.00)
총기회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322,906	17,591,313	11,293,178	9,458,231	8,346,733	13,217,453
Поп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3,576	1,465,943	941,098	788,186	695,561	1,101,454
	GDP 대비	2.82	6.43	2.61	1.56	1.19	14.61
	총평가액 (10억원)	13,582.24 (19.32)	30,969.31 (44.07)	12,494.52 (17.78)	7,511.23 (10.69)	5,718.27 (8.14)	70,275.56 (100.00)
순기회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292,101	17,534,683	11,213,764	9,433.274	8,311,032	13,222,119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1,008	1,461,224	934,480	786,106	692,586	1,101,843
	GDP 대비	2.81	6.42	2.59	1.56	1.18	14.56
	총평가액 (10억원)	14,066.02 (19.65)	29,190.85 (40.80)	13,540.21 (18.92)	8,939.77 (12.49)	5,828.62 (8.14)	71,565.47 (100.00)
통합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801,166	16,527,731	12,152,263	11,227,370	8,471,425	13,464,811
Ι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3431	1,377,311	1,012.689	935,614	705,952	1,122,068
	GDP 내비	2.91	6.05	2.80	1.85	1.21	14.82
	총평가액 (10억원)	13,571.10 (20,26)	27,904.44 (41.66)	12,194.44 (18.20)	7,937.08 (11.85)	5,379.90 (8.03)	66,986.58 (100.00)
통합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280,382	15,799,370	10,944,098	9,968,106	7,819,240	12,603,308
П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0,032	1,316,614	912,008	830,676	651,603	1,050,276
	GDP 대비	2.81	5.78	2.53	1.64	1.11	13.87

B. 무급노동

eren y r. bij	we for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총평가역 (10억원)	14,123.86 (20.95)	26,662.80 (39.56)	12,637.92 (18.75)	8,712.15 (12.93)	5,267.01 (7.81)	67,403.24 (100.00)
개별 기능	1인당 평가액(원)	14,862,026	15,096,075	11,342,466	10,941,508	7,655,167	12,681,701
대체 비용법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8,502	1,258,006	945,206	911,792	637,931	1,056,808
	GDP 대비	2.93	5.52	2.62	1.80	1.09	13.96
	총평가액 (10억원)	14,859.79 (18.83)	28,970.40 (36.72)	16,627.21 (21.07)	11,832.35 (15.00)	6,613.53 (8.38)	78,903.29 (100.00)
주부 대체	1인당 평가액(원)	15,636,428	16,402,912	14,922,835	14,860,130	9,612,226	14,845,398
비용법 I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303,036	1,366,909	1,243,570	1,238,344	801,018	1,237,117
	GDP 대비	3.08	6.00	3.44	2.45	1.37	16.34
	총평가역 (10억원)	12,893.85 (21.41	22,993.79 (38.18)	11,369.81 (21.1)	8,159.42 (18.88)	4,813.20 (7.99)	60,230.07 (100.00)
주부 대체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3,567,731	13,018,983	10,204,348	10,247,331	6,995,589	11,331,919
비용법 II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30,644	1,084,915	850,362	853,944	582,966	944,327
	GDP 대비	2.67	4.76	2.36	1.68	1.00	12.48
	총평가액 (10억원)	13,648.47 (19.16)	31,343.18 (43.99)	12,833.72 (18.13)	7,641.13 (10.73)	5,776.86 (8.11)	71,243.36 (100.00)
총기회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361,794	17,746,369	11,518,196	9,596,420	8,396,198	13,404,072
गिक्स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6,816	1,478,864	959,850	799,702	699,683	1,117,006
1837	GDP 대비	2.83	6.49	2.66	1.58	1.19	14.76
	총평가역 (10억원)	13,619,19 (19.19)	31,243.16 (44.02)	12,745.24 (18.01)	7,621,26 (10,73)	5,752.30 (8.11)	70,981.15 (100.00)
순기회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330,989	17,689,740	11,438,783	9,571,464	8,360,497	13,354,740
н е в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4,249	1,474,145	953,232	797,622	696,708	1,112,895
	GDP 대비	2.82	6.47	2.64	1.58	1.19	14.70
	총평가액 (10억원)	14,097.43 (19.50)	29,449.37 (40.74)	13,801.19 (19.09)	9,063.84 (12.54)	5,867.37 (8.12)	72,279.21 (100.00)
통합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834,222	16,674,102	12,386,497	11,383,182	8,527,750	13,598,917
I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236,185	1,389,509	1,032,208	948,599	710,646	1,133,243
30.0	GDP 대비	2.92	6.10	2.86	1.88	1.21	14.97
	총평가액 (10억원)	13,605.84 (20.11)	28,152.15 (41.61)	12,431.04 (18.37)	8,050.60 (11.90)	5,413.81 (8.00)	67,653.45 (100.00)
통합 비용법	1인당 평가액(원)	14,316,941	15,939,624	11,156,793	10,110,672	7,868,532	12,728,623
n n	월별 1인당 평가액(원)	1,193,078	1,328,302	929,733	842,556	655,711	1,060,719
R1 (A)	GDP 대비	2.82	5.83	2.57	1.67	1.12	14.01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부대체비용법 I 또는 총기회비용법의 경우가 각각 16.3% 또는 14.8%로 가장 높았고, 주부대체비용법Ⅱ의 경우 약12.5%로 가장 낮았다. 각 방법에 의하여 추계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가중평균한통합비용법에 의한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GDP 비중은 14%내지 15%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방법의 추계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GDP에서 12.5% 내지 16.3%의 범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일본의 추계결과(1996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주부무급(가사)노동의 GDP 대비 비율이 약 3%~7%정도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비하여 0.1%~0.2% 낮았으나, 연령대별 추이와 각 평가방법별 평가액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999년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GDP에서 약 15%(각개별평가방법의 통합치)를 차지하는 72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상용하는 주부 1인당 년간 무급노동가치는 약 1,360만원, 월별 무급노동가치는 113만원에 해당된다.

3.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결정요인분석과 회귀분석

회귀분석모형은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수준, 연령, 아동수, 주거전용면적으로써 설정하였으며, 추계결과는 다음의 <표 8>에서 정리된 바와같이 평가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들 네 변수 중 교육수준, 연령, 미취학아동수는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미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UWK_k = a_1 Educ + a_2 Age + a_3 Child + a_4 Area + \varepsilon_t$

(단, UWK_k : 평가방법 k에 의거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 Educ: 교육기간, Age: 연령, Child: 미취학 아동수, Area: 주거전용면적)

그러나 주거진용면적 변수가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에 미치는 효과는 주부대체비용법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다른 평가방법에서는 유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 연령 및 미취학 아동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8> 무급노동가치의 회귀분석 결과

	개별기능	주부대	체비용	총기회	순기회	통	합비용
	대체비용	I	П	비용	비용	I	П
교육수준	867,330	862,562	749,542	963,586	960,879	910,185	889,046,469
	(75.66)	(74.76)	(83.46)	(87.26)	(87.07)	(82.69)	(84.93)
연 령	62,270	103,958	60,340	58,814	58,373	71,978	60,118394
	(19.17)	(31.79)	(23.71)	(18.79)	(18.66)	(23.07)	(20.26)
미취학	2,215,700	1,423,399	1,465,754	2,427,181	2,427,460	2,097,148	2,154,031,942
아동수	(12.83)	(8.19)	(10.83)	(14.59)	(14.60)	(12,65)	(13.66)
주거전용	7,063	34,606	14,695	496	420	11,534	5,491,529
면적	(0.99)	(4.80)	(2.62)	(0.07)	(0.06)	(1.68)	(0.84)
\mathbb{R}^2	0.79	0.83	0.83	0.82	0.82	0.82	0.82

주:() 안의 값은 t 값.

Ⅲ.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1999년 실시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의 주부 시간사용자료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국민경제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1999년 이전에는 진국규모의 주부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가정 하에 1999년의 생활시간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각 연도의 노동부 임금자료를 사용함으로써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부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총기회비용법 에 의한 추계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계열을 보였으나,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추계치는 매우 불안정한 시계열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 주부 무급노동가치는 연평균 14.5%씩 빠르게 증가해 왔고, GDP 대비 비율은 11.8%~17.6%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포함시킨 GDP'(Y' = GDP + 주부무급노동가치)에 대한 노동, 자본 및 주부무급노동(N')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Delta Y^{'}/Y^{'} = 0.3552 \Delta N/N + 0.4387 \Delta K/K + 0.1002 \Delta N^{'}/N^{'} + \varepsilon_{t}$$
(2.91) (3.54) (2.65)
$$R^{2} = 0.93 \qquad D.W = 2.46 \; (단, ()) 안의 수치는 t 값)$$

주부 무급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경우, 주부 무급노동가치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0.1002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난 20년간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평균 14.5% 증가해왔던 것으로 추계됨으로써 14.5% × 0.1002 = 1.45%, 즉 주부의 무급노동가치가 경제성장률에 평균 1.45% 기여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때에는 제외시킬 경우보다 노동과 자본의 경제성장기여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기여도를 Tobit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obit모형은 주부가사노동가치를 GDP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P^{'}-Y>0$

이 되는 반면, 주부가사노동가치를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GDP로부터 제외시킬 경우에는 $Y^{'}-Y=0$ 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즉

$$Y - Y = \alpha + \beta N' + \varepsilon$$
 (주부의 노동가치 포함)
$$-0 \qquad (주부가사노동가치 제외)$$

Tobit모형에 대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을 구성한 다음,

$$L = \Pi_{Y-Y>0} \frac{1}{\sigma} f(Y'-Y-\alpha-\beta N') \Pi_{Y-Y=0} F(-\frac{\alpha+\beta N'}{\sigma})$$

 β 와 σ 를 최대우도함수(maximun likelihood function)방법에 의하여 주부의 무급노동 생산성기여도를 방정식으로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LS추계결과와 Tobit모형을 기초로 한 ML추계방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9>와 같이 OLS추정방법에 의한 생산성기여도(β)는 하향편기 현상을 나타냈다.

	OLS	ML
~	2013.3	-65597.6
α	(2040.0)	(13947.3)
ø	0.24243	0.44324
ρ	(0.00959)	(0.04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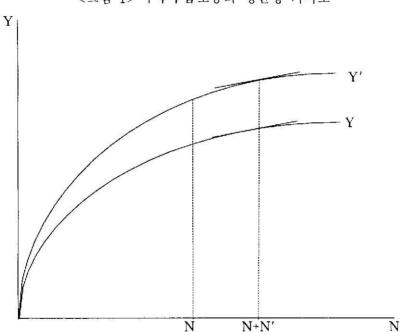
<표 9> 생산성기여도 방정식 추계결과

주 :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Tobit모형에 의한 주부의 무급노동이 생산성에 미친 기여도는 0.4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주부의 무급노동은 생산성을 0.44만큼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것 으로 분석된다. 나아가서 주부의 무급노동가치와 GDP(명목)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무급노동가치가 GDP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GDP가 무급노동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원인이 되는지는 위에서 논의한 경제성장기여도 분석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Granger 인과성 검증을 통하여 GDP와 무급노동가치 사이의 인과성을 점검해 보았다. 인과성 검증결과, 다음 표에서와 같이 1기의 시차를 두고 주부의 무급노동이 GDP 증가를 가져오는2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에서 발견된 주부의 무급노동이 GDP 성장률과 생산성에 유의할 만한 가여를 한 추계결과의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1> 주부부급노동의 생산성 기여도

<표 10> Granger 인과성 검정

인과성	시차	F 값	유의수준
주부 무급노동 → GDP	1	11.85	0.01
GDP → 주부 무급노동	1	1.65	0.22

Ⅳ. 무급(가사)노동가치의 제도적 활용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는 주부들의 법적지위, 경제적 가치와 보상, 그리고 사회보장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부문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 경제, 법률 등 현실적인 구체적 사례로 교통사고시 상해보상,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조세제도에서 부부간 상속 및 증여, 사회보험제도에서 전업주부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가 직용될 수 있다. 즉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액은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공정하게 접근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식적인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의 연령계층별 1일 가치 평가뿐만 아니라 시간당 가치 및 월간가치평가액을 종합고시(告示)하고, 고시된 주부 무급(가사)노동 통합 평가표는 사회, 경제 각 부문에서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한 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손해배상

불의의 사고나 재난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되는데, 특히 주부들의 경우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법적, 경제적으로 많은 논쟁이 야기되어 왔다. 손해배상은 직접당사자에 의한 보상, 국가에 의한 보상, 보험에 의한 보상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연령별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는 주부들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별, 월별, 년별 보상액의 기준을 정하는데 객관적인 삿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손해배상의 경우 현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고시가 격은 현실소득액으로서 일용 도시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기준은 주부의 가계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측면을 분석한 결과 크게 과소 평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무급(가사)노동평가 채널과 고시가 법제화됨으로써 주부들이 직면하게 될 손해배상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진 1999년 자료를 기초로 주부의 손해배상금액을 추정하여 기존의 산정방법과 비교하면 <표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주부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적정수준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 주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존의 일실수입산정법의하여 산정하면 월 73만원대였던데 비하여, 본연구의 통합비용법(I)에 의한 산정 보상액은 연령대별로 월 71만원(60대 이상) - 139만원(30대)으로써 전체 월평균가치는 113만원 수준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의거한 보상액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기존의 일실수입산정법에 의한 보상액 수준은 65%수준(전체평균대비), 특히 무급(가사)노동 가치가 제일 높은 30대 주부가 생산한 가치에 비해서는 53%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표 11> 주부의 손해배상액 비교

방법	기존방법	제안방법
형태	일실수입산정법	통합비용법 [
도시거주 주부	・도시 일용근로자의 보통인부임금 적용 (대한건설협회에서 년간 조사) ・1999년 기준: 1일 33,323원 × 22일 = 월 733,106원 **2000년 기준: 1일 37,483원 × 22일 = 월 824,626원	· 1999년 연령별 가치: 20대 : 1일 40,664.98원 × 30.4일 = 월 1,236,185원 30대 : 1일 45,707.53원 × 30.4원 = 월 1,389,509원 40대 : 1일 33,954.21원 × 30.4일 = 월 1,032,208원 50대 : 1일 31,203.91원 × 30.4일 = 월 948,599원
농촌거주 주부	 · 도시 일용근로자 농촌임금 적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매월조사) · 1999년 기준 : 1일 29,263원 × 25일 = 월 731,575원 ※ 2000년 12월 기준 : 1일 32,561원 × 25일 = 월 814,025원 	60대 : 1일 23,376,51원 × 이상 30.4일 = 월 710,646원 전체 : 1인 37,277.73원 × 30.4일 = 월 1,133,243원 **2000년 기준 (여성평균임금상승을 10% 반영) : 전체 : 1일 41,005.49원 × 30.4일 = 월 1,246,567원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0년 취업여성의 월평균임금 (95만 4천원) 수준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통합비용법 I 의 평가가치금액 약 125만원 보다 24% 낮은 수준에 해당됨으로 취업여성들의 임금수준 역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에도 미달되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2. 재산분할 및 조세

부부의 이혼시 부부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한 법적 성격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부부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에, 전체제산 중에서 분할대상이 명백하게 구분이 가능한 재산을 공제하고, 부부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부부재산별산제'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50%

로 분할한다(우리나라에서도 민법 제830조에 의거 도입됨). 판례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업주부의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현재 최대 30%까지밖에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것 으로 예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부부재산별산제 수 준의 재산분할, 혹은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배우자 소득수준의 상대적 비 율을 재산분할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제도 관련 부부간 상속세, 증여세문제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에, 공동 형성한 재산부분을 증여세 및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데 활용될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기초공제액이 5억원이고, 상속세는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의 증여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우자 기초공제액의산정은 주부의 무급(가사)노동 가치에 입각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재산정 될 필요가있겠다.

소득과세에 있어서도 소득세의 인적공제에 있어서 현행소득세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국민경제기여 도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배우자(주부)에 대한 인적공제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약 8년이 결고 고령인구의 2/3가 여성이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도입된 연금제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실제로 배우자의 연금으로부터 파생된 연금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이혼시 주부들은 이혼배우자 연금분할제도(1998. 12월 도입)에 의하여 연금을 분할받음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분할연금의 지급은 정지하고, 그 정지기간 동안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분할 연금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수급권으로 보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할연금수급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녀간의 평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부들의 사회보장 수급권,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수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가 위해서는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가 보험료산정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무급(가사)노동 조사관련 개선점

주부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생활시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자료로서 이용되며, 특히 주부들의 생활시간조사와 임금조사가주부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의 근간이 된다. 이런 점에서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추계 될 수 있도록 진전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방법과 임금조사방법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1) 생활시간조사의 개선점

생활시간조사와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로 활동분류기준이다.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활동유형 중분류 세 가지 중에서 '가정관리'는 유사한 활동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족 보살피기'와 '참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행동은 무급(가사)노동의 정교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개선안이 요구된다.

둘째로, 생활시간조사의 조사항목 중 조사표 문항의 과학화와 정교화이다. 실제로 조사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정확한 사실을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토대로 풍성한 미래사회의 제도적,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경제적인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향후 생활시간조사중 일부항목이 보완, 첨가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사대상 주부의 결혼연수를 기입하는 항목이나, 미취학 아동의 연령과 더불어 미취학아동의 수를 기입하는 항목, 조사대상자가 취업자일 경우 직업에 대한세분류와 직위기입 및 가구의 월평균소득(자난 3개월 월평균소득)을 년간베이스의 총소득으로 문항을 개선시키거나 추가한다면, 개별기능별대체비용법이나, 기회비용법으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측정하는데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로, 생활시간조사의 무급(가사)노동의 활동분류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의 항목과 서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청과 노동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주부노동가치 에 상용하는 대체임금 변수의 존재여부가 평가의 정확도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2) 임금조사의 개선점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조사의 표본 수를 더 확대하거나, 조사대상직종을 좀 더 세분화하여 무급(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종에 대한 정기적인특별임금조사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된 조사방법은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5년 단위로 임금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매년 정기적인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시 4단위 세분류의 세부 직종에 대한 임금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임금조사가 개선된다면, 무급(가사)노동가치의 평가뿐만 아니라 가계무급생산 위성계정을 정밀하게 개발하는데 새로운 모멘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특히 참여 및 봉사활동과 관련된 주부 무급(가사)노동 가치평가에 있어서 대체임금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노동부에서 조사된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임금을 사용하여 주부의 무급 참여 및 봉사활동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유급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임금조사는 주부 무급(가사)노동활동 중 참여 및 봉사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활동영역별로 보다세분화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9년『생활시간조사』자료를 기초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 노동의 가치를 기존의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이들 추계방 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방법을 가중평균한 새로운 추계방법인 통합대체비용 법을 개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 서 다소 편차는 있었으나,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년간 총평가액은 약 60.2조원에서 약 78.9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중에서 무급(가 사)노동에 대한 총평가액이 가장 높게 추계된 방법은 주부대체비용법 I 이었으며, 가장 낮게 추정된 방법은 주부대체비용법Ⅱ었다.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의 1999년도 GDP대비 비율은 12.5%~16.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별, 월별 1인당 평가액은 최소 63만원에서 최대 148만원이었다. 이를 연령별 분포로 비교하면, 모든 추계방법에서 30 대 주부의 월별 평가액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계층은 60대 이상 주부들이 없다. 또한 20대, 30대 주부를 포함해서 년간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 구성비를 살펴보 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넌도와 추정방법, 추정대상의 범주의 차 이 등으로 인하여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데는 많은 제약 이 있지만, 1999년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총평가액의 GDP대비율은 1996 년 기준 일본의 무급(가사)노동의 GDP비중 15.2%~23.2%보다 약 3%~7%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1999년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는 GDP에서 약 15% (각 개별평가방법의 통합치)를 차지하는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상용하는 주부 1인당 년간 무급노동가치는 약 1,360만원, 월별 무급노동가치는 113만원에 해당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시계열 자료로 연장하여 지난 20년간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이 국민경제에 미친 기여도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측면에서 희귀모형과 Tobit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으로 인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의 국민경제에 대한 가여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추계된 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손해배상, 이혼시 재산분할 및 사회보험 등에서 현실적으로 전업주부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과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에서 주부들을 위하여 적절한 보상을 합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제도적 장치로서 주부의 생산적인 노동인 무급(가사)노동의 표준화된 정의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가 정기적으로 평가된무급(가사)노동가치를 고시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액을 사회보험제도와 사적보험 및 법률적인 보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 주부의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시계열로 연장하여 지난 20년간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14.5%로 빠르게 증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급(가사)노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본 GDP에 반영함으로써다양한 경제, 사회, 특히 노동, 복지, 여성분야의 정책수립과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할수 있는 기본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로 무급노동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하여 국민소득에 반영시켜 나간다면,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사회경제적소수계층에 속하는 결손가정 및 여성가장인 가게들이 직면하는 법률상의 불이의 등에대한 제도적, 정책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사회적 공통가치에 부합되는 삶의 질적 개선과 향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부의 무급노동은 국민경제적으로 주목받아야만 하고,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소득에 체계적이고 자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무급가계생산의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of Household Production)개발이 절실히요구된다.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 金峻永, "가사노동 계량측정 모형개발" 발표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Syracuse University, 2000, 12.
- 金泰洪, "무급노동의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 UNDP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 2001. 4.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0. 12.

政務長官(第2)室,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정책자료, 1997.12

韓國統計廳, 『경제활동인구조사연보』, 1999.

『도시가계연보』, 2000. 1.
 『한국표준직업분류』, 1993. 1.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제2권』, 2000. 12.

2. 외국문헌

- Fitzgerald, John M., Swenson, Matthew S. and Wicks, John H., "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at market prices and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2, No., 2, 1996, pp. 165–180.
- Fukami, Masahito,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in 1996 -Japan-,"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tudies, UNDP and ESCAP, 7-10. Dec., 1999.
- James, H. S. Jr., "The 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How different are the opportunity cost and market price valuation methods?," Working paper, Jan., 1996.
- Sousa-Posa, Alfonso, Widmer, Rolf and Schmid, Hans, "Assigning monetary values to unpaid labour using input-based approaches: The Swiss cas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Helsinki, Aug., 1999.
- Statistics Canada, "Statistics Canada's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unpaid work," Working paper, Oct., 1998, pp. 1-14.
- Trewin Dennis, "Unpaid work and the Australian economy 1997," working paper, Oct., 200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 국민계정체계 및 법체계적용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문 숙 재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분석

- 국민계정체계 및 법체계적용을 중심으로 -

문 숙 재

I. 연구목적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가.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요구

노동시장통계와 국민소득계정에서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과소평가의 문제는 1970년대 이래로 계속 지적되어 왔다. Boserup(1970), Weinerman & Lattes(1981), Beneria(1982), Dixon-Mueller & Anker(1988), Folbre & Able(1989), UN(1989)의 연구활동은 이러한 통계적 정보가 잘못된 사실인을 지적한 바 있으며, 마침내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5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여성의무보수 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199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 워크샵(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ies)'에서도 무보수 가사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1997년 수립한 1998-2002년까지의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를 세분화하여 조사표를 보완하며",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 및제도적 반영을 위해 가사노동량 파악을 위한 생활시간활용조사를 전국단위로 신시하고", "국민계정체계에 가사노동에 대한 위성계정을 설치하며", "가사노동가치의 적용분야를 발굴하고 적용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정무장관 제 2실, 1997)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주부의 무보수노동 및 가사노동의 법 적용 문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GNP 대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산출할 때는 기회비용법 또는 대체비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가사노동종사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적용시에는 시간사용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가치평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윤소영, 1998). 이는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국민연금, 세법 등 개별정책은 그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 가사노동가치평가의 객관적 자료: "1999 생활시간조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1999년 통계청에서는 대단위(전국 만 10세 이상 46,109명)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국규모의 대단위 시간조사연구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할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경제적가치평가 방법 중 투입측정법-구체적으로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은 시간사용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정무장관 제 2실, 1997)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 가, 시간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15세 이상 남녀의 가사노동 참여 경향을 알아본다.
- 나. 투입측정법의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리고 기회비용법을 이용하여 GNP 내에서 가사노동 가치평가 비율을 추정한다.
- 다. 부부의 재산권, 주부의 노동상실권, 주부의 국민연급 수급권 등에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실태와 주부의 지위 수준을 알아본다.
- 라. 위의 각 정책별로 가능한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을 분석한다.
- 마.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을 산정 하는데 필요한 변인들을 찾아내어, 정책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1999년 9월에 조사된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 1999년 7월에 실시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

계조사보고서]와 통계청의 1999년 [경제활동인구연보]의 1차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 졌다. 한국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에서, 연구 목적에 맞도록 경제활동인구1)로 간주되는 만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을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였으며, 그결과 78,576개의 시간일지기록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청의 [시간사용조사]에서 제시된 행동분류체계(대분류 9개, 중분류 51개, 소분류 125개) 중 가사노동시간과 직업노동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한 것을 총노동시간으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성별, 연령,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등이 유의한 변인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여성은 혼인상태 및 배우자유무와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5개의 집단으로, 남성은 혼인상태와 배우자유무를 기준으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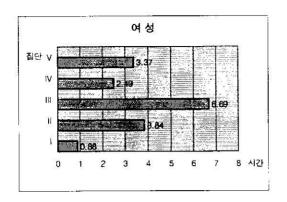
Ⅱ. 연구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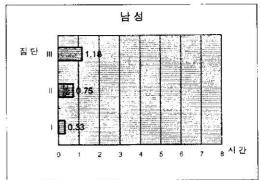
1. 가사노동의 시간사용실태

○ 1일 평균 총 가사노동 시간은 기혼의 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여성 III집단)이 6.6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남성 III집단)이 1.18시간으로 다른 남성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었다.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사용 실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식생활 영역에서의 시간 소비량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생활, 의생활, 가족 보살피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의 유배우자 미취업여성집단(여성 III집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식생활 (2.43시간), 가족보살피기(1.62시간), 주생활(0.98시간), 의생활(0.72시간), 가정관리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취업여부보다는 배우자유무에 의해서 가사노동 시간 사용량이 차이가 나며, 기혼여성의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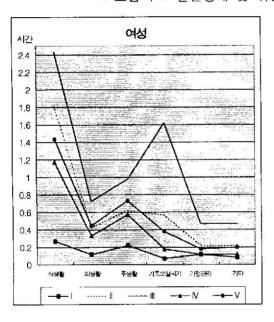
^{1) 1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됨. 이때 경제활동인구라 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포함하며, 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자를 말함(노동부, 2000)

²⁾ 성별, 혼인상태 및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여성표본의 경우, 미혼집단(여성 I집단; 9,566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취업집단(여성 II집단; 13,821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미취업집단(여성 III집단; 11,967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취업집단(여성 IV집단; 2,982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미취업집단(여성 V집단; 3,717표본)의 5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남성표본의 경우, 미혼집단(남성 I집단; 10,749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집단(남성 II집단; 24,618표본), 기혼이며 배우자가 없는 집단(남성 III집단; 1,156표본)의 3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그림 1 >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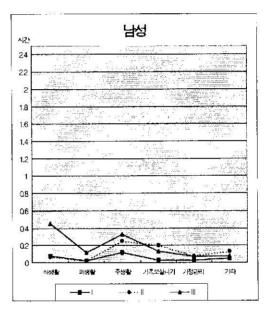


그림 2 > 혼인상태 및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2.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과 대 GDP 비율의 산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간사용자료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법인 전문가 대체법, 종합적 대체법 그 리고 기회비용법을 통해 가치평가액을 추정하였다. 평가방법별 월 평균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 직합한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대체법

- 소 분류별 가사노동 (시간) × 대체직종의 임금율 (원) × 30.4 (일) × 인구수 (천명)

• 종합적 대체법

- 2인 대체 경우.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가사 및 관련 조력원 등의 임금률(원)+종합관리자 임금률(원)] / 2 × 30.4 (일) × 인구수 (천명)

- 1인 대체 경우.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대인 및 보호서비스 관리자의 임금륨 (원) × 30.4 (일) × 인구수(천명)

- 기회비용법
 - 혼인상태별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6,509 (원)[전 직종 평균임금율] × 30.4 (일) × 인구수 (천명)
 - 각 연령별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 × 각 연령별 평균 임금율 (원) × 30.4 (일) × 연구수 (천명)
- 전문가 대체법의 경우, 가사노동 평가를 위한 행동영역의 분류는 해당 가사노동활동이 대체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가 가능한지(제 3자 기준: the 3rd principle) 여부에 근거하여 유형 I과 유형 II(Kulshreshtha & Gulab Singh, 1999)로 나누어 대체직종을 선정하였다. 유형 I에 속하는 주로 가정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단순작업으로, 그리고 유형 II에 속하는 제 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활동은 유사한 해당 직종으로 대체하였다.
- 종합적 대체법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한 1인 대체법과 2인 대체법을 모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1인 대체법의 경우, GNP와의 비교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로 공식적인 임금률이 제시되는 가사근로자(51211)를 대체직으로 선정하였으며, 2인 대체법은 가사노동의 영역이 크게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으로 나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단순노동영역과 관리영역을 각각 가사 및 관련 조력원, 청소원 및 세탁원(913)과 종합관리자(13)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3).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여성근로자 임금률을 적용하였는데,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차가 결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OECD National Accounts, 2000). 본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동일하게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방법 A)하거나, 여성

^{3) 2}인 대체법의 적용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 이에 상용할 만한 한 명의 직업인을 가정에서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보수를 측정하는 종합적 대체비용법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는 두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을 측정하지는 않았다.

은 여성근로자의 임금률을 남성은 남성근로자의 임금률을 적용(방법 B)하였고, 또 한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임금율을 합한 후 2로 나누고 이 평균 임금율을 여성과 남 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방법 C)시키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특히 기회비용법의 경우, 학력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능력의 차이는 배제하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임금율을 적용하였다.

○ 여성과 남성 집단에 따른 가사노동의 월평균 가치는 여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유배 우자 미취업 집단(여성 III집단)의 가치액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집단(남성 III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별로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 방식이 가장 높게, 그리고 1인 대체법이 가장 낮게 산 정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과 평가방법 적용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임금률 적용상의 문제와 대체 직 선정으로 인해 과소,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전문가대체법의 경우 '어떠한 대체직이 선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종합적 대체법의 경우 '1인 대체와 2 인 대체방식 중 더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의 문제, 그리고 기회비용법를 비롯한 모든 평가방법은 '어떠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 표 1 > 평가방법별 월 가사노동 가치

(단위:원)

	집 [<u> </u>	i a		4 &	n'e g		냘		ਜ		
방법		, ,	1	ıı.	1 a	IV	٧	1	1 . 	1111		
-1 H -1	A		112,906	669,043	842,293	332,880	465,120	98,830	119,533	174,070		
전문가 대 체	В		112,906	669,043	842,293	332,880	465,120	136,253	168,811	245,450		
비용법	[용법 C		범 C		155,283	818,520	1,198,520	409,184	564,893	117,557	144,187	213,621
		Α	180,576	787,968	1,372,788	510,948	691,524	67,716	153,900	242,136		
	2 인 대체	В	180,579	787,968	1,372,788	510,948	691,524	83,246	189,194	297,666		
종합적 대 체	~11 ~11	С	201,309	878,438	1,530,404	569,612	770,921	75,491	171,570	269,937		
내 세 비용법	1	A	118,886	518,775	903,803	336,393	455,279	44,582	101,323	159,415		
	1 인 대체	В	118,886	518,775	903,803	336,393	455,279	63,161	143,549	225,850		
80	-11 -11	U	143,658	626,872	1,092,129	406,488	550,146	53,872	122,436	192,633		
8 _8	A		137,666	600,723	1,046,573	389,532	527,197	51,625	117,329	184,597		
기 회 비용·법	В		137,666	600,723	1,046,573	389,532	527,197	78,962	179,459	282,349		
	С		174,129	759,835	1,323,774	492,705	666,834	65,298	148,405	233,491		

A : 여성임금률 적용 B : 여성은 여성임금률, 남성은 남성 임금률 적용 C: 평균 임금률 ((여성임금률+남성임금률) / 2) 적용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평가방식과 적용 임금률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나, 대체로 약 138조에서 약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액이 가장 높게 산정된 것은 종합적 대체법 중 2인 대체법(방법C)으로, 전체 GDP의 47.8% 수준에 해당하는 약 228조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평가액은 종합적 대체법의 1인 대체법(방법A)으로, 전체 GDP의 28.2%에 해당하는 약 134조에 이른다. 이러한 평가액은 우리나라 GDP(약 476,597십억원)의 대략 28%-48% 수준이었다. 이는 최저 34%에서 최고 69%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36%-52%로 산정된 김정희(199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 대체법의 2인 대체와 평균임금률을 사용한 방법(방법 C)을 제외하고는 30%-37%로 산정된 김태홍(2001)의연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 차이는 각 연구들의 조사대상과 평가방법, 적용된 임금률 및 가사노동 활동에 포함된 활동영역의 차이 때문이다.

< 표 2 > 가사노동의 총 평가액과 대(對) GDP 비율

(단위:원)

	방 법	전 문 가	종합적 대	체비용법	기회비	l 용법
평 가		대체비용법	2 인 대체	1 인 대체	혼인상태별	연령집단별
	연평균 평가액	약 146 조	약 204 조	약 134 조	약 156 조	약 157 조
방법 A	대 GDP 비율*	30.62 %	42.88 %	28.23 %	32.69 %	33.06 %
방법 B	연평균 평가액	약 155 조	약 210 조	약 142 조	약 167 조	약 167 조
RA D	대 GDP 비율*	32.64 %	44.18 %	29.79 %	34.99 %	35.02 %
방법 C	연평균 평가액	약 190 조	약 228 조	약 162 조	약 197조	약 193 조
7 H C	대 GDP 비윤°	39.99 %	47.80 %	34.11 %	41.34 %	40.53 %

^{*} 가사노동 연간 평가액 ÷ 1999년도 경상 GDP × 100

3. 정책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과 주부지위 개선 방법

● 사보험제도

○ 현재 사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방법(①사망시 : (월소득-생계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또는 호프만)계수× (1-과실율)%, ②후유장해시: 월소득×노동능력상실율×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또는 호프만)계수×(1-과실율)%)에서, 전업주부의 수익액 산정을 위한 월소득과 월근무일수 및 정년년한이 무직자에 준해서 적용되고 있다.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을 성별, 가사노동영역별, 요일별로 살펴본 결과,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요일별 차이는 검증되었으나 평일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고, 이들의 절대적인 시간량을 남성기혼집단들과 비교한 결과, 월등히 많은 가사노동시간량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과 수행은 여성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전업주부의 경우, 사보험사에서 22일을 월 근무일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할 수 있는 기준 26일로 대체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월 근무일수를 26일로 대체한 결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를 통한 월 소득액수는 임금적용방식에 따라 약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 표 3 > 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요일별

(단위:시간)

	10	e e e			3		여성	un	- e ¹	1.7					남성									
집단		1.	1 H		B	15	i.	HI			IV :	33 33		٧		60	1	- 2	9.0	11			HI-	18
요일	시간 량	N	D	시간 량	N	D	사간 량	N	D	시긴 량	N	0	시간 랑	N.	D	시간 량	N	D	시간 량	N	D	시간 량	N	D
평일	0.70	5944	С	3.73	8473	С	6.95	7174	A	2.37	1776	В	3.54	2251	A	0.25	6536	C	0.67	14931	С	1.11	710	В
토요일	0.97	1847	В	3.85	2698	В	6.79	2442	В	2.62	608	A	3.37	749	A	0.37	2129	В	0.75	4926	В	1.42	22€	A
일요일	1,40	1775	A	4.24	2650	A	5.87	2351	C	2.64	598	A	2.92	717	В	0.51	2084	A	0.98	4761	A	1.20	21%	AB
FZL	18	5.42***		4	4.31***		12	23.65***	is.		6.14**		1	1.47***		6	4.74***		(92.29**	*		3,50+	

p<.01 *p<.001

○ 사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정년년한은 무직자로 간주하여 60세로 일 발 석용되고 있다. 이 기준의 적합성여부를 검증한 결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50세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노동시간량이 전직종 1일 평균 노동시간량과 대체직업으로 선정된 직업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노동시간량과 비교하여 볼 때, 70세 이상이 되어서야 노동시간량이 감소하고 있는 형대를 띄고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60세 정년년한 기준은 부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70세를 정년년한으로 기준하기에도 사회적인 수용에 있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농업종사자의 노동과 가사노동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65세를 정년년한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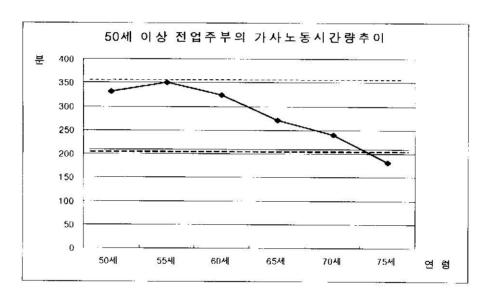
< 표 4 > 여성 집단별 가사노동시간량 : 연령별

(단위 : 시간)

집단		1		II in						1 1	IV .		V		
연령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시간량	N	D
10대	0.54	4315	Е	5.53	12	A	4.99	32	С	1=1	1751	(10)	-	1-	21.77
20대	1.06	4701	DE	4.101	1136	В	7.61	2134	A	2.17	30	A	3.66	18	В
30대	1.75	426	CD	4.29	4319	В	7.47	3966	A	2.29	218	A	4.86	60	A
40대	2.66	88	ВС	3.63	4185	ВС	6.30	2502	В	2.39	534	A	4.21	158	AB
50대	4.17	20	Α	3.11	2463	ВС	6.03	1788	В	2.58	658	Α	4.63	400	A
60대	3.5	14	AB	3.52	1442	ВС	5.32	1107	С	2.69	878	A	4.25	985	AB
70대 이상	2.08	2	CD	3.10	264	С	4.13	438	D	2.22	664	A	2.63	2096	С
F값	146	.23***	k	46.	97***		225	.87***	-	5.5	29***		8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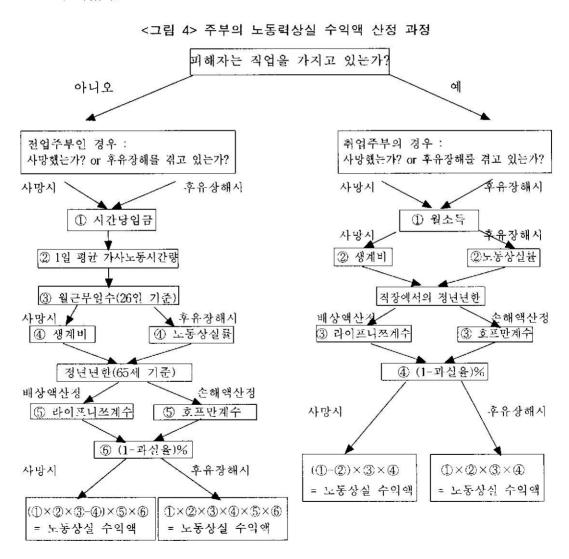
*** p<.001

<그림 3> 50세 이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 추이



- ① ----전업주부의 1일평균 가사노동시간량(355분)
- ② 전직종 1일평균 노동시간량(210분)
- ③ ----- 대체직종 기준의 1일 평균 노동시간량(202분)

○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여성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이 있는지 그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나누게 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 망과 후유장해의 경우로 산정과정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취업주부라고 응답한 경 우는 자신의 직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월 소득과 정년년한을 기준으로 사망 시 배 상액이나 손해액, 혹은 후유장해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프로그램 순서를 계획하였으며, 전업주부라고 응답한 경우는, 피해자의 월 소득 산출을 위해본 연구에서 산정된 시간당 임금,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 월 근무일수 26일, 정년년한 65세를 기준하여 사망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후유장해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프로그램 순서를 계획하였다. 이 때 시간당 임금과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자료분석 자료가 1999년도를 기준하여 산정되었으므로 매 해 그 해의 시간당 임금 혹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수정하도록하며, 통계청에서는 매 5년마다 전국민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므로이 자료를 토대로 5년마다 한번씩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 재산분합청구권

- 혼인 생활과정에서 부부 양 당사자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하여 온 재산을 혼인 관계 청산시 분활하는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권은 노동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전업주부의 부부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 정도나 가사 노동의 경제적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맞벌이형이나 가업협력형보다 그 기여도의 인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시간자료에 근거하여 부부의 총노동시간에 대한 노동분담비로 평가해서 분석하였다.
-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총합한 총노동시간을 살펴본 결과, 비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 유형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총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총노동시간 산정을 토대로 가정내 부부의 노동분담율을 측정한 결과, 임금근로자 남성과 비취업여성, 자영업 남성과 비취업여성의 조합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여성의 노동분담율이 남성의 노동분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인 기간중 전업주부를 제외한 모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라 하여도 약 40%에서 50%미만에 달하는 노동분담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분담량은 재산분할 판결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

<표 5> 연령별 총노동시간

(단위: 시간) 10,20대 30대 40대 연령 50CH 60대 70대이상 계 구분 N (F弘) M D N М D M D N М D N M D N M 임급 1,041 9.20 В 4.564 8.96 В 3,443 888 R 1.892 8.49 В 595 8.48 C 36 7.79 C 11,571 근로자 고용주및 169 8.68 В 2,040 8.96 B 2,662 8.55 В 1,975 8.03 B 1,498 7.47 D 470 6.46 D 8,814 납 자영업자 무급가족 42 7.27 C 66 7.78 C 84 6.41 56 6.27 C 100 5.62 Ε 104 5.13 452 종사자 미취업자 2.24 D 98 413 2.69 I) 487 2.18 D 776 1.97 D 1,199 1.99 F 808 1.25 3,781 양급 764 10.00 2,382 10.31 1,919 10.56 A Α A 934 10.57 316 10.53 10.93 Α 36 6.351 근로자 고용주및 130 9.98 A 814 10.46 944 10.68 Α Α 462 10.44 Α 226 10.37 Α 50 8.91 2.626 여자영업자 무급가족 254 10.56 A 1,123 10.55 A 1,322, 10.49 A 1.067 10.09 900 9.65 A В 178 8.58 4,844 종사자 C 3,966 비취입자 2,166 7.63 7.63 C 2,502 6.55 C 1,788 6.22 C 1,107 5.76 438 E 4.54 E 11.967 4.664 15,368 13.363 8.950 5941 2,120 50,406 Fat F=124.73*** F=428.60*** F=596.36*** F=603.00*** F-614.73*** F=289.17***

^{***}p < .001

<표 6> 가정내 남성과 여성의 총노동시간 비율 : 연령별 분석

(단위: %)

7是	연령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임금	임금근로자여성	48:52	46:54	46:54	45 : 55	45 : 55	42:58
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48:52	46:54	45 : 55	45 : 55	45 : 55	47 : 53
남성	미취업여성	55 : 45	55 : 45	59:41	59 : 41	61 : 39	65 : 35
	임금근로자여성	46:54	46 : 54	45 : 55	43:57	42:58	37 : 63
고용주 및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47 : 53	46 : 54	44:56	43 : 57	42:58	42:58
자영업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여성	45:55	46:54	45 : 55	44:56	44:56	43:57
ь о	미취업여성	53:47	55 : 45	58 : 42	57:43	58:42	61 : 39
무급가족 종사자 남성	자영업여성	42:58	43 : 57	38 : 62	38 : 62	35 : 65	37 : 63
_1 =1 a1	임금근로자여성	13:87	13:87	11:89	10:90	13:87	8:92
미취업 남성	고용주 및 자영업여성	13:87	12:88	11:89	10:90	13:87	10:90
ਰ <i>ਲ</i> 	미취업여성	16:84	17:83	17:83	17:83	22:78	19:81

-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생활 기간 중 가정내 가사노동을 통한 노동기여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이혼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 판결시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업주부를 포함한 모든 여성의 실질적 노동량을 통한 한 가정내 노동분담율은 남성의 분담율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과 실제로 재산분할 판결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살펴볼 때, 기여가 동등하다고 판명될 경우 혼인생활 중의 잉여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독일의 잉여청산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 독일의 잉여청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각 배우자가 잉여를 반분하는 방식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각 배우자는 종국재산에서 당초재산을 차감한 뒤여기서 산출된 잉여액을 서로 비교한 뒤 잉여 차액을 계산한다. 이 때 잉여가 적은 배우자는 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잉여 차액의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의 잉여를 공평하게 치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부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 방법을 통한 재산청산은 실제 재산분할 판결시 실제 적용가능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Y' = | (A - A' - B) - (A - A' - B)' | \times \frac{1}{2}$$
 (4)

Y': 잉여 차액의 반분액

(A-A'-B): 일방 배우자의 잉여액 (A-A'-B)': 타방 배우자의 잉여액

A : 종국재산(연금, 퇴직금 및 보험 포함)

A ': 당초재산

B: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 국민연금제도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전업주부는 자신의 명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할 필요도 없지만, 가입하길 원한다면 '임의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이런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수가 산정은 중위수 표준소득월액 즉, 45등급의 중간 정도인 22등급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남부 보험료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산정시 타가입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업주부의 노동력의 가치나 생산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22등급의 평가는 편의상의 이유와 보험료 하락 방지의 이유에 기인한다. 또한 무소득 배우자, 즉, 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가급연금액은 연 15만원(월 평균 12,500원 정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가족수당적 성격이 강하다. 즉 가급연금액은 연급수급권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무보수배우자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표 7 > 가치평가방식별 월 가사노동가치평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등급

(단위: 위)

방법	분류	전문가 대체비용법	종합적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HLHI A	월 가사노동 가치평가	842,293	2인대체: 1,372,788 1인대체: 903,803	1,046,573	
방법 A	표준소득월액 등급	20등급	27등급 21동급	23등급	
нгн о	월 가사노동 가치평가	1,198,520	1,530,404 1,092,129	1,323,774	
방법 C	표준소득월액 등급	25등급	29동급 23등급	26등급	

* 방법A : 여성인금률 적용

방법C : 평균 임금률 (여성임금률+남성임금률)/2 적용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통한 표준소득월액 등급은 임금적용방식에 따라 20등급(약 84만원/월)에서부터 29등급(약 150만원/월) 까지 산정되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이 남편과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 표준소득월액 등급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강제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전업주부의 실질 화폐소득이 없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결국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으로 가 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그 노동의 시간과 가치는 임금노동자의 노동과 다 르지 않지만 노후보장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실시된 보완적인 제도가 분할연금제도이 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분할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해 서는 연금분할제도를 이혼 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계속하여 적용 하여야 함과 최소혼인기간을 12개월로 할 것, 또한 맞벌이 부부에게도 실시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분할연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혼한 사실이 증명이 될 경우 자동시행되어야 하며 연금자체가 아닌 연금수급권의 분할이 이루 어져야 한다.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뿐만 아니라 취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분할연금제도는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 이혼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 도 혼인기간 동안 자녀양육, 환자의 간호 등의 이유로 취업을 중단하고 가사노동 을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분할받아 자신의 연금수급권에 부가해 야 할 것이다.
- 주부에게 할당되는 분할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식 2,3,4) 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연금액 = 기초연금액 + 가급연금액 = 1.8(A+B) ×(1+0.05n/12) + α

(식 2)

1.8: 가입기간 20년(240개월)일 때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

A: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0.05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연수마다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율(5%)

n: 20년 초과 가입년수

이혼시 분할수급권 =
$$(P \times \frac{T-M}{T}) + \{(P' \times \frac{M}{T}) \times \frac{1}{2}\}$$
 (식 3)

T: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T':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P: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1+0.05n/12) P':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1+0.05n/12)

M: 총 혼인기간월수

혼인중 분할연금액 =
$$(P \times \frac{T-M}{T}) + [\{(P \times \frac{M}{T}) + (P' \times \frac{M}{T'})\} \times \frac{1}{2}]$$

(식 4)

T: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T': 배우자의 국민연금 총 가입월수

P: 가입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1+0.05n/12) P: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인 1.8(A+B) ×(1+0.05n/12)

M : 총 혼인기간월수

Ⅲ.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소프트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체직의 선정과 임금률 적용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국민계정체계 내에서의 가사노동 가치평가와 그 제도적 반영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기준, 즉 동일한 임금률을 적용받는 문제는 중요한 일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C(여성과 남성의 임금률을 합하여 2로 나누어사용하는 평균임금률 적용)의 유용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다양한 정책적용에 가능한 가사노동 가치측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모든 연령층에게 동일한 임금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임급시장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노동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무급 가사노동의 숙린도 역시 결혼년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객관화된 지표로서 임금율의 적용시 결혼지속년수를 근속년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연평균 임금상승율을 가산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보다는 임금율 및 인구수의 프로그램 적용시 매해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통계 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근거해 새로운 Data Base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보힘제도, 재산분할청구권, 국민연금권에서 가사노동과 주부 노동 의 인정을 위해 몇가지의 기준들을 제안하였으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기준 이 실제 적용되고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작성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나 통계관련 행정기관 및 법조계, 보험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인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실험적인 단계로 현재의 적용기준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보다 실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대체노동력 고용비설에 근거한 종합직 대체법을 사용하여 전업주부의 대체직업을 선정하고 월소득 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그외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인 전문가 대체법이나 기회비용법 등을 적용하게 되면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실제적인 평가방법이 고안될 수 있고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담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국민재정체계와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무보수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요구되는 생활시간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사간자료는 무보수노동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위해 세부적인 활동분류체계를 갖춰야 하며, 전국규모의 대단위 조사이어야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된 시간조사의 틀이 마련되어 각국의 자료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시간자료는 다른 관련 통계자료와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산정에 유용하게 적용된다. 이에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연관되어 체계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무보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관련된 기초자료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조사와 함께 임금조사나 직종 조사의 조사시기나 조사내용이 상이한 이유로 인해 무보수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상의 한계가 지적되므로, 관련된 공식적 통계자료의 통합 체계가 요구된다.
- 우리나라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렇게 무급노동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GNP에 반영하고, 이 를 기초로 기존의 경제체계와 법체계에 적용, 시행가능한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소득에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무급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을 개 발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서울대학교이 기영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이 기 영

I. 서론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자원으로서 시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물적 자원이 풍요해짐에 따라 시간자원의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자원으로서의 시간의 가치는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은 그 배분방식이 생활양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직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여가 또는 이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양식 내지 생활문화를 보여주기도한다.

시간 및 시간의 배분이 갖는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증적인 연구는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일지법에 의한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1981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에 의해 5년 간격으로 실시되어 온 국민생활시간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방송시간편성이라는 조사 목적의 한계로 인해 생활의다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다는 점, 조사의 목적이국민 생활시간과 생활양식의 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생활시간배분 방법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규범, 습성, 가치 등이 반영 되며, 따라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나라 국민들의 생활시간의 배분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국가간의 국민생활을 비교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는 유럽의 12개국 시간을 비교분석한 Szalai(1972)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Szalai 조사에 비견하는 연구가 행해지면서 표집이나 분류 및 코딩체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국가간 협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결과 유럽재단(The European Foundation o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의 후원으로 국제생활시간아카이브(MLTBA-Multinational Time Budget Archives)가 설립되었으며, 유럽통계연합(EUROSTAT)에서는 1995~1996년에 유럽지역의 생활시간 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생활행동의 분류를 통일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의 선진국들은 생활시간연구를 위한 표준적인 수법, 예를 들면 자료의 수집, 코딩, 제시방법 등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늘날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대한 선진국들의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도 이 제는 통계청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적인 규모의 생활시간조사를 계기로 하여 생활시간의 국제비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생활 습성이나 특성을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의 특성을 밝힐수 있으며, 세계 속에서의 우리 사회의 위상이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연구방법

제 1 장 자료의 선정 및 분석체계

1. 분석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핀란드 3개국을 선정하여 한국파 비교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아시아권에 속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국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로는 시간일지법에 의한 국가적인 규모의 시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미국과 핀란드를 선정하였다.

1) 한국

우리 나라의 자료는 통계청에 의하여 1999년에 최초로 실시된 「1999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자료의 조사기간은 1999. 9. 2 ~ 9. 14(13일간)이었으며, 한국 전역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일본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간 사용 조사는 일본 총무청 통계국에 의한 「社會生活基本調查報告,와 NHK에 의한 「국민생활시간조사」이다.이 중 본 연구

에서 선정한 자료는 통계국에 의한 「1996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로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소규모 표본에 의한 NHK자료보다 지역별, 개인속 성별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3) 미국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FEPA National Time Use Survey 1992~1994 」를 미국 자료로 선정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주체는 Maryland 대학의 사회조사센터(Survey Research Center)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 2000년에 시간조사가 실시되었으나, 보고서가 2001년 말에 발간될 예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핀란드 통계청에 의한「핀란드 국민생활시간조사(Finnish Time Use Study) 1987/1988 」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조사기간	유효 표본수	조사대상연령	유효율	조사방법	조사기관
한국	1999. 9.2-9.14	42,973	만 10세 이상	93.4%	일지법	통계청
일본	1996.9.28-10.6	111,405	만 10세 이상	41.3%	일지법	통계국
미국	1992.9-1994.10	9,386	전 연령	63%	일지법	Maryland대 사회조사센터
핀란드	1987년 1년간	5,224	10세 이상	74%	일지법	통계청

<표 2-1-1> 각국 자료의 개요

2. 표본 및 분석설계

앞의 〈표 2-1-1〉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국가별로 조사대상의 연령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국의 20세 이상 인구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성과 취업여부, 연령이 성인의 시간사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성과 여성, 남녀취업자 및 전업주부, 연령별로 나누어 생활시간을 집계하였다. 비교국가의 표본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표 2-1-2〉와 같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여성이 50% 이상 표집되었고, 남녀 모두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으며, 미국은 전업주부 집단이 많이 표집된 반면 핀란드는 전업주부가 6.2%만을 차지하고 있다.

난성 여성 여성 성인 성인 생이 여 व्य 여 낚 낚 남 남 취업자 취업자 미취업자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394 2333 1671 미국 7264 3241 4023 672 756 631 476 655 866 747 587 8.7 9.0 10.3 8.1 33.0 32.1 23.0 100.0 44.6 55.4 9.3 10.4 6.6 11.9 49502 9608 38471 27711 17640 일본 95890 46388 7894 9795 8036 9365 7768 9787 8321 40.1 28.9 100.0 48.4 51.6 10.0 8.2 10.2 8.4 9.8 8.1 10.2 8.7 18.4 편란드 10277 5039 5238 1341 1496 1265 937 1467 1462 1354 955 4277 4115 639 100.0 13.0 12.3 14.3 14.2 13.2 9.3 41.6 40.0 6.2 49.0 51.0 14.6 9.1

<표 2-1-2> 표본의 특성¹⁾ (요일 평균)

제 2 장 생활행동분류 체계의 조정

1. 생활행동의 분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행동의 분류체계는 〈표 2-2-1〉과 같다. 아래의 생활행동의 분류는 우리 나라 통계청의 분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였으나, 비교대상 3개국의 자료와 공통되게 분류하였다. 활동분류를 조정할 때 문제가 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식사준비 및 설거지', '청소·세탁', '기타 가사일'이 합하여가사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가사시간 내의 소분류에 따른 시간량을 구할 수 없었던접이다. 또한 사회적 활동과 레저활동에 있어서도 각국 분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회적 활동의 경우 일본은 종교활동이라는 항목이 없었으며, 핀란드는 사회참여 시간속에 종교활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국과 핀란드는 학생의 학습시간-수입노동에 포함됨-과 성인의 학습 시간-레저활동에 포함됨-이 구분되지 않아 해석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일본은 관람 및 행사라는 활동분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분류 상의 차이는 대분류 분석을 위한 합계에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¹⁾ 미국의 경우는 원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여성 미취업자를 전업주부로 대용하여 사용하였다.

<표 2-2-1> 생활행동의 분류

		·		통계청	일본	핀란드	미국
	수면		11	수면	수면	수면	수면
개	식사		12	식사 및 간식	식사	식사	식사
인 유	신변에		13	개인관리	개인관리	신변에 관한 일	개인관리
지	관한일		14	건강관리(의료직)	의료		의료
	815. <u>-</u> 81		199	기타 개인유지			기타 개인유지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일	입	주업
			220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제외)			구직
			23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근무 중 이동
	근무		24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부업
수			250	구직활동			근무 중 휴식
입			260	일관련 물품구입			
동			299	기타 일관련 행동			
3			31	학생의 학교학습	학교	학업	수업
			32	학생의 학교외 학습			수업 외 강습
81	학업		330	학습관련 물품구입			숙제
							도서관 이용
							기타 학습시간
		식사 준비				3555	
	가사	및	41	음식준비 및 정리	가사	식사준비및	식사준비,
	ed. 58c	설거	79500			설거지	설거지
		지	40	A -1 -2 -2			
]			42	의류관리		청소, 세탁	의복관리
			43	청소 및 정리		}	옥내외 청소
-1			44	161		기타가사일	가정잡일
가 사			46	가정경영			관공서, 재정
노			499	기타가사일	i.		서비스
ㅎ							기타 가사일
	구매		45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구매	구매	구매
	T A					Appropriate parties and appropriate parties are appropriate parties and appropriate parties are appropriate parties and approp	Nosa Vosadozio
ľ	가족원		201-0.0744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가족원의	사녀와 대화	자녀돌보기
1	돌보기			초중고생보살피기	신체적돌보기		
				배우자 보살피기	자녀돌보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21	ルトおとな			그의 가족 보살피기	1) a) a) a) =	0.01=11	
사 회	사회적 하도	사회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사회적 활동	68 19. 00 1000 10001	사회참여
활	활동	참여		지역 공동체 활동		(교회 포함)	
운				사회참여			
9			640	자원봉사	<u> </u>		

<표 2-2-1> 생활행동의 분류(계속)

				통계청	일본	핀란드	미국
사	사회적	苦卫	74	종교활동	=	-	종교활동
회	활동	활동					
홮		9			3		
동	교제		71	교체	교세	교제	교체
러	학습		73	일반인의 학습	학습	-	-
저	관람및		76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	건물감상,영화	관람, 영화
활	행사						
동	스포츠	70	75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스포츠	행락산책	스포츠 및 옥외활동
						스포츠	777000
	취미및		771	독서	취미, 오락	취미	취미
	기타	8	772	컴퓨터게임		승부	독 서
	여가		773	놀이		독서	
İ			774	그외 취미활동			
			775	Ŷ 		8	
			780	교제 및 여가관련 물품구입			
			799	기타여가관련활동	223		
11			72	대중매체 이용	신문잡지TV등	TV, 버디오	대중매체이용
대 중						라디오	
						신문잡지	
			2000			레코드, CD	
齐			776	담배피우기	휴식	휴식	휴식
식			777	아무것도 안하고 쉽			
þ	통근		821	출퇴근	통근, 통학	통근, 통학	통근, 통학
-옷-	통학		822	그외 일관련이동			
			831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28		
	그의		800	이동하기위해 기다리기	그 밖의 이동	그 밖의 이동	그 밖의 이동
l	이동		811	개인유지관련이동			
			841	가정관리관련이동			
			851	가족보살피기관련 이동			
			861	참여 및 봉사활동관련이동			
				교제관련 이동			
			872	그외 여가활동관련 이동			
R			891	기타이동			
7]			-	생활시간조사 설문지 기입	20 기타		
타			999	그외 기타			
4			333	그러 가다			<u> </u>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의 휴식시간은 각기 다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화', '생각·휴식'이 휴식에 포함되었으며, 일본 통계국에서는 가족 및 동료와의 대화를 휴식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우리 나라의 분류에서는 가족간의 대화는

교제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고, 휴식이라는 중분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분류를 재조정하면서 '취미 및 여가활동'의 일부로 되어 있는 '담배피우기'와 '아무 것도 안 하고 쉼'을 한국 자료의 휴식으로 재정의하였다. 생활시간량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교제시간이 길고, 일본은 휴식시간이 월등히 긴대, 이는 활동분류에서 오는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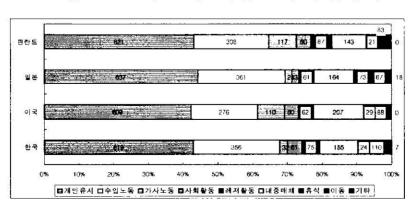
Ⅲ.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장 생활행동별 국제비교

1. 생활시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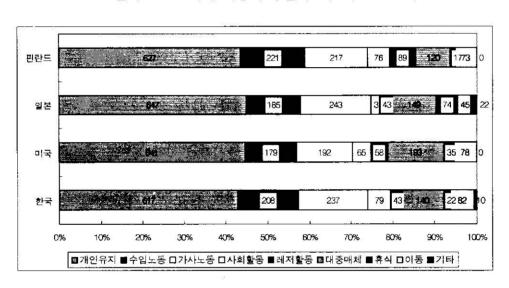
우선 성인 납성과 여성의 생활시간구조를 국가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각국 성인 남성의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본 결과 〈그림 3-1-1〉에서 보듯이 성인 남성의 하루 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유지로 하루의 40% 내외이며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다. 수입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은 국가에 따라 비중의 순위에 차이가 나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수입노동 시간이 길고 미국과 핀란드는 자유노동시간이 더 길다. 한국 남성의 수입노동 시간을 가장 짧은 미국 남성과 비교해 보면, 한국 남성이 하루에 1시간 20분, 일주간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9시간 27분을 더 일하는 셈이 된다. 자유시간은 미국이 가장 길어 24.8%를 차지하며 일본은 22.8%이고, 한국과 핀란드는 각각 21.9%, 21.6%로 짧은 편이다. 반면 가사노동은 성인 남성의 생활시간에서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남성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각각 하루 평균 32분(2.2%), 28분(1.9%)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이동시간은 하루의 4.7%(일본)~6.3%(한국)로 한국 남성의 이동시간이 가장 길다.



<그림 3-1-1> 4개국 남성의 생활시간 구조(요일 평균)

다음 성인 여성의 생활시간에서(〈그림 3-1-2〉참조), 남성과 비교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사노동 시간으로, 하루 시간의 13.3%~16.9%를 차지하여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수입노동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적어서, 하루의 12.4%(미국)에서 15.3%(핀란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볼 때 한국과 일본은 성역할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미국과 핀란드는 비교적 성 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많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많은 것은 조사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4개국 여성의 생활시간구조(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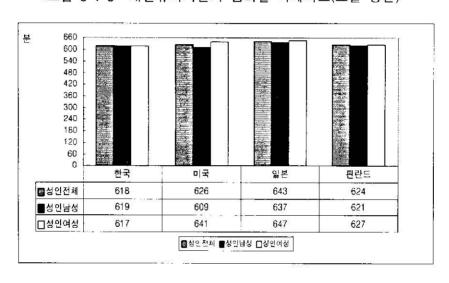
한국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 구조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한국인의 생활상은 개인 유지시간과 자유시간이 비교적 적고,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긴 것이다. 특히 한 국 여성의 경우 수입노동시간(208분)이 남녀 평등에 있어 가장 앞선 핀란드에 이어 2 위, 가사노동시간(237분)은 한국과 더불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에 이어 2위를 함 으로써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점이 특기할 만 하다.

2. 생활행동별 시간

여기에서는 전체 생활시간을 개인유지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유시간,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유지시간은 활동의 특성상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평균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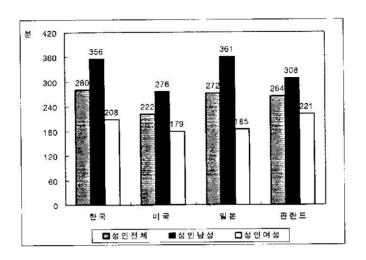
간 18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유지 시간이 약간 적은 편이다(<그립 3-1-3>참조). 또한 다른 3국은 모두 여성의 개인유지 시간이 남성보다 더 긴 반면 한국의 경우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남성의 개인유지시간(619분)이 여성(617분)보다 약간 긴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개인유지 시간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수면과 식사에 있어서 일본과는 유사하고, 미국, 핀란드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나 핀란드보다 수면시간은 짧고 식사시간은 길다.



<그림 3-1-3> 개인유지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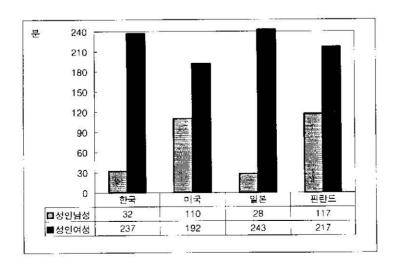
각국의 수입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1-4〉에서 보듯이 미국(3시간 42분)은 수입노동시간이 짧고, 한국(4시간 40분)과 일본(4시간 32분)은 수입노동시간이 길며 핀란드(4시간 24분)는 중간 정도이다. 특히 한국 성인의 수입노동시간이 비교 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길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성인 남성은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이 서양권보다 현저하게 긴 데 반해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은 핀란드가 가장 길고 한국, 일본, 미국의 순이다. 한국 성인 남성의 수입노동시간(5시간56분)은 일본 남성(6시간 1분)에 뒤이어 두 번째로 길며, 한국 성인 여성(3시간 28분) 또한 핀란드 여성(3시간 41분)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을 합한 한국 성인의 수입노동시간에 가장 길며 남성, 여성 모두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미국이고, 수입노동시간에서 가장 동등한 분담을 보이는 것은 핀란드이며, 남녀간에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다.

<그림 3-1-4> 수입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요일 평균)



다음으로 각국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과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0분 내외로 2시간 가까운 미국과 핀란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의 $1/3\sim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4시간정도로 미국이나 핀란드 여성보다 $20\sim50$ 분 정도 길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된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비교적 성평등한 모습을 보여 동서양간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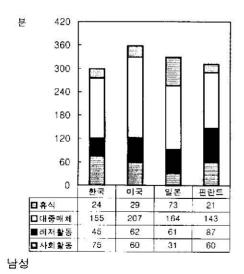
<그림 3-1-5> 가사노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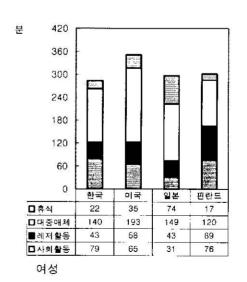


한편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을 합한 충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 28분으로 충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미국(6시간26분) 다음으로 적으나, 한미일 3국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남성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핀란드(7시간 5분)인데, 이는 핀란드 남성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성인 여성의 총노동시간은 한국이 하루 평균 7시간 25분으로 가장 길다. 이처럼 가사노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할 경우, 한국 여성의 노동시간이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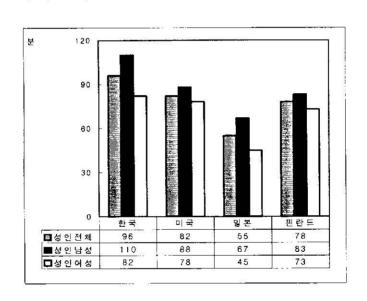
다음에 자유시간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미국인의 자유시간이 가장 길고, 한국 성인의 자유시간이 가장 적다. 성별에 따라 보면 한국 남성은 가장 짧은 핀란드보다 조금 길지만 한국 여성은 가장 짧았다. 성별에 따른 자유시간의 내역별 사용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대중매체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성이 대중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반면 사회활동 시간은 여성이더 길며, 특히 한국 여성의 사회활동시간이 가장 길다. 이는 한국 여성의 종교활동시간(하루 16분)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레저활동 시간은 전체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더 길지만, 특히 핀란드 남성과 여성의 시간이 길다. 마지막으로 휴식은 남녀간의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일본의 남성과 여성 모두 휴식시간이 비교국에 비해 간 것이 눈에 띤다(<그림 3-1-6>참조).

<그림 3-1-6> 4개국 남성과 여성의 항목별 자유시간 (요일 평균)





마지막으로 이동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성인이 이동을 위하여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은 1시간 36분으로 비교국가 중 가장 길다. 반면 일본은 55분으로 우리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짧다(그림 3-1-7). 또한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동시간이길지만,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이동시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이동시간이 이렇게 긴 것은 특히 통근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비해 직장이 주거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통사정이 복잡한 것과 주6일 근무제인 것도 긴 이동시간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한국인의 이동시간, 특히 통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긴 것은 전체국민의 생활시간 배분의 관점에서볼 때 국가적인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7) 이동시간의 남녀별 국제비교 (요일 평균)

제 2 장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의 국제비교

1. 생활행동별 성별차이 비교

우선 생활행동영역 대분류에 따른 남녀차를 지표화해서 이 지표로 각국의 특징을 보고자 한다. 지표는 남성의 주평균시간에서 여성의 주평균시간을 뺀 수치를 분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부호가 +로 되어 있는 것은 남성의 시간이 여성보다 많은 경우이고, -부호는 여성의 시간이 긴 경우이다. 생활행동별로 보면 수입노동, 대중매체, 이동에 있어서는 4개국 모두 남성의 시간이 긴 반면, 가사노동과 사회활동은 여성의 편이 길다. 나머지 영역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인유지는 한국을 제외하면 여성의 시간이 길고 레저활동은 핀란드를 제 외하면 남성이 길다. 휴식은 한국과 핀란드는 남성이, 미국과 일본은 여성이 길게 나 타났다.

한편 생활시간배분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 정도를 보기 위해 절대치를 합해서 불평등지표로 하였다. <표 3-2-1>에서 불평등지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이 각각 3123 분(52시간 3분), 3184분(53시간 4분)으로 수치가 크고 미국과 핀란드가 1738분, 1678분으로 수치가 작다. 핀란드의 불평등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나 남녀문제에 있어서 평등 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서구에 비하면 남녀간 불평등이 여전히 큰데, 이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가부장적 사고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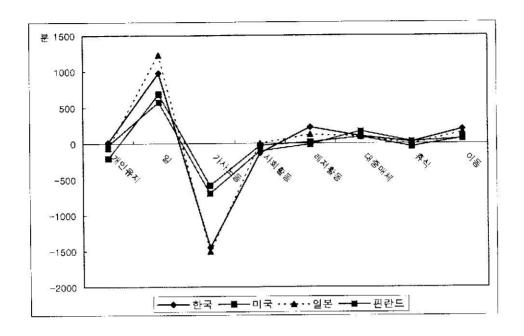
<표 3-2-1> 1주간의 남녀차

단위 : 분(주합계)

1000	한국님	녀차	미국님	녀차	일본 님	남녀차	핀란드 남녀차		
***	분.	%	분	%	분	%	분	%	
개인유지	12	0.4	-210	12.1	-62	1.9	-29	1.7	
일	980	31.2	688	39.6	1230	38.6	575	34.3	
가사노동	-1450	46.1	-586	33.7	-1507	47.3	-694	41.4	
사회활동	-133	4.2	-28	1.6	O	0.0	-103	6.1	
레저활동	226	7.9	19	1.1	124	3.9	-13	0.8	
대중매체	100	3.2	89	5.1	95	3.0	169	10.1	
휴식	22	0.7	-45	2.6	-9	0.3	29	1.7	
이동	200	6.4	73	4.2	157	4.9	66	3.9	
불평등지표(%)	3123	100.0	1738	100.0	3184	100.0	1678	100	

4개국의 남녀차를 부호를 포함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불평등 정도의 차이가 명 배해진다(<그림 3-2-1> 참조). 즉, 불평등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역할분담에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근무시간은 남성이 길고,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긴므로, 이 두영역의 남녀시간차가 전체의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남녀차의 77.8%를 두 영역이 설명하며, 일본은 85.9%를 설명한다. 미국은 73.3%, 핀란드는 75.7%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영향이다.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영향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1> 한국·일본·미국·핀란드의 생활영역별 참여의 성별차이



남녀간 불평등에 대한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의 영향을 비교해보면 한국, 일본, 핀란드의 3국은 가사노동의 남녀차가 근무시간보다 큰데 반해 미국은 근무시간의 남녀차가 가사노동의 남녀차보다 크다. 불평등지표가 낮은 미국과 핀란드만을 비교하면 가사노동에서는 미국이, 근무시간에서는 핀란드가 보다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평등자가 높은 한국과 일본 양국만을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근무시간의 남녀 차이가 적은데, 이는 일본 남성의 근무시간(42시간 7분)이 한국 남성의 근무시간(41시간 31분)보다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의 근무시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긴데 기인한다. 여성의 근무시간은 한국이 24시간 11분, 일본이 21시간 37분으로 한국쪽이 더 긴데, 이는 일본 여성의 시간제근무가 한국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것, 즉 양국간 여성의 취업구조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활행동 내역별 성별차이 비교

생활행동 중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차이에 비하면 다른 행동의 성차는 상당히 적 은데, 항목별 소분류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몇가지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

개인유지에 있어서는 미국에 있어 여성이 우위인 방향으로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 났는데 이는 「수면」과 「신변 관련 일」에서 여성의 우위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다른 3개국에 비해 「수면」에서는 남성의 우위가, 「신변에 관한 일」에서는 여성의 우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은 개인유지의 내역별 성별 격차 정도가 크지 않는데, 「신변 관린 일」에서의 여성 우위정도가 적은 반면에 「수면」과 「식사」에서 다소간의 남성우위를 보여 개인유지에서 유일하게 남성우위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서구의 가사노동 평등도가 높은 것은 가사노동의 불평등지표 뿐 아니라 가사노동 항목별 남성의 협력정도를 통해서도 분명해진다. 즉, 모든 항목에서 서구 남성의 가사 협력도가 한국 남성의 가사협력도 보다 크며, 한국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 가사노동 내역 중 남성 중심형 과제로 볼 수 있는 「기타 가정관리」를 제외하면 「구매」의 가사협력도가 가장 크다. 그러나 여성 중심형 과제로 볼 수 있는 가사노동만 보면 남성참여정도가 1/4정도에 불과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전히 여성이라고 하겠다.

여가활동은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소분류로 나누어 볼 경우 항목에 따라 국가간에 차이를 보였다. 「종교활동」의 경우 한국 여성의 우위가, 「교제」에서는 핀란드 여성의 우위가, 「스포츠」는 특히 한국과 미국 남성의 우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는 4개국 모두 남성 우위가 두드러졌고 특히 핀란드의 남성 우위정도가 가장 크다. 「취미」에서는 동서양간에 큰 차이를 보여 한국과일본에서는 남성 우위가, 미국과 핀란드에서는 여성 우위가 두드러졌다. 결국 문화권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여가활동양식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연령별 생활시간비교

1. 남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남성의 연령별 국가변 생활시간 구조가 <표 3-3-1>에 나타나 있다. 모든 국가에서 다른 연령에 비하여 30대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국가별 연령별로 볼 때, 일본의 30대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한국의 3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층은 50대 남성이다. 가사 노동 시간의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50대 남성이 가장 긴 시간을, 20대 남성이 가장 짧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핀란드의 50대 남성은 수입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반면 가사노동 시간과 개인유지 시간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수입노동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남은시간을 가사노동이나 개인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유지 시간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50대 남성이 가장 긴데 반하여 미국과 핀란드는 20대 남성이 가장 길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30대 연령층의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개인 유지시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유지시간은 국가별로 연령에 따라 어떤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자유시간의 경우는 수입노동시간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국가에서 30대 남성의 자유시간 길이가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나 20대 남성이 자유시간이 두번째로 길다. 그런데 일본 남성의 경우는 20대 남성이 자유시간의 길이가 가장 길게나타나고 있다. 이동시간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은 30대 남성이, 일본과 핀란드는 20대 남성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이동시간은 4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40대부터 수입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하다.

<표 3-3-1> 4개국 성인 남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단위 : 분, %)

		한	국			اِت	국	1. 20.		일	본			핀란드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u> 남성</u>							
개인	608	610	611	618	611	600	587	599	607	602	609	627	636	610	613	626
유지	42.2	42.4	42.5	42.9	42.5	41.7	40.8	41.6	42.2	41.8	42.3	43.5	44.2	42.4	42.6	43.4
수입	355	414	402	346	338	335	325	281	402	447	441	409	307	333	320	253
노동	24.7	28.8	27.9	24.2	23.5	23.3	22.6	19.5	27.9	31.0	30.6	28.4	21.3	23.1	22.2	17.6
	24	32	26	33	72	102	110	125	20	28	20	21	94	123	125	132
노동	1.7	2.2	1.8	2.3	5.0	7.1	7.6	8.7	1.4	1.9	1.4	1.5	6.5	8.5	8.7	9.2
자유	326	260	279	329	331	310	326	345	314	270	278	292	307	289	308	360
시간	22.6	18.1	19.4	22.8	23.0	21.5	22.7	23.9	21.8	18.8	19.3	20.3	21.3	20.1	21.4	25.0
이동	121	118	114	105	87	95	91	90	83	80	76	74	97	85	75	70
	8.4	8.2	7.9	7.3	6.0	6.6	6.3	6.2	5.8	5.6	5.3	5.1	6.7	5.9	5.2	4.9
기타	6	6	6	8	0	0	0	0	14	13	15	17	0	0	0	0
	0.4	0.4	0.4	0.6	0.0	0.0	0.0	0.0	1.0	0.9	1.0	1.2	0.0	0.0	0.0	0.0

2.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표 3-3-2>를 보면 수입노동 시간의 연령에 따른 경향이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수입노동 시간이 긴 연령층은 20대와 40대 여성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30대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짧은데 비하여 미국과 핀란드는 50대 여성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 남성 30대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여성의 경우는 30대에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취업 단절 때문에 나 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국가 여성의 연령에 따른 수입노동시간 유형은 M자 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두 국가의 30대 여성 가사노동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되 고 있다. 가사노동 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짧은 집단은 일본의 20대 여성이다. 개인유지 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20대 여성이 가장 길고, 40대 여성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시간은 국가별로 연령별 경향이 일치하지 않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50대 여성이 핀란드는 20대 여 성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유시간은 젊은 집단과 나이든 집단에서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30대 여성은 자유시간과 수입노동 시간이 모두 짧은데 이는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수입노동시간에 적게 할애된 시간을 자유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시간은 핀란드를 제외하고 모든 국 가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길고 30대 여성이 가장 짧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도 30 대 여성의 수입노동시간이 짧은 것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20대 여성은 모 든 국가별 연령 집단에서 이동시간이 가장 긴 집단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50대 여성 은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집단으로 한국 20대 여성의 전반도 안 되는 시간이다.

<표 3-4-1> 취업여부별 생활시간구조(요일평균)

		한	국			미	국	at 15/42/2017		일	方			필루	<u> </u>	Windster.
	20대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0내	30대	40대	5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이성							
개인	627	604	592	606	647	633	628	620	643	618	604	627	648	616	617	624
유지	43.5	42.0	41.1	42.1	45.0	44.0	43.6	43.0	44.7	42.9	41.9	43.5	45.0	42.8	42.9	43.3
수입	248	191	247	214	257	229	244	196	268	178	227	209	212	229	244	183
<u></u> 노동	17.2	13.3	17.2	14.9	17.9	15.9	17.0	13.6	18.6	12.4	15.8	14.5	14.7	15.9	17.0	12.7
가사	175	308	247	249	141	202	197	210	150	323	282	261	185	246	216	225
노동	12.2	21.4	17.2	17.3	9.8	14.0	13.7	14.6	10.4	22.4	19.6	18.1	12.9	17.1	15.0	15.6
자유	281	247	260	278	305	294	287	333	287	250	259	279	311	272	296	345
시간	19.5	17.2	18.1	19.3	21.2	20.4	19.9	23.1	19.9	17.3	18.0	19.4	21.6	18.9	20.6	23.9
이동	102	78	84	83	91	81	84	81	72	50	45	41	86	7 2	68	63
	7.1	5.4	5.8	5.8	6.3	5.6	5.8	5.6	5.0	3.5	3.1	2.8	6.0	5.0	4.7	4.4
기타	8	10	10	11	()	0	0	0	19	23	23	23	0	0	0	0
2	0.6	0.7	0.7	0.8	0.0	0.0	0.0	0.0	1.3	1.6	1.6	1.6	0.0	0.0	0.0	0.0

제 4 장 남녀의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취업여부별 생활시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업주부, 취업여성, 취업남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전업주부집단의 경우 미국 자료에는 결혼여부에 관한 정보가 없어 미혼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3국과 다른 제한점이 있다. 취업자의 경우 남녀 모두 미혼자가 포함되어 있다.

<표 3-4-1> 취업여부별 생활시간구조 (요일평균)

단위 : 분, %

-		한국		- 1	미국		30 30	일본		8	핀란드	
	전업	여성	남성	전업	여성	남성	전업	여성	남성	진업	여성	남성
	주부	취입자	취업자	주무	취업자	취업자	주부	취업자	취업자	주부	취업자	취업자
개인유지	637	600	607	661	625	595	649	631	627	645	618	613
	44.2	41.6	42.1	45.9	43.3	41.2	45.1	43.8	43.5	44.7	43.0	42.6
수입노동	12	372	428	23	292	351	5	305	410	60	261	339
	0.8	25.8	29.7	1.6	20.2	24.3	0.3	21.2	28.5	4.2	18.2	23.6
가사노동	338	166	28	239	158	101	382	185	23	3 1 5	204	114
	23.5	11.5	1.9	16.6	11.0	7.0	26.5	12.9	1.6	21.8	14.2	7.9
자유시간	373	204	259	452	281	306	348	248	294	358	280	290
	25.9	14.2	18.0	31.4	19.5	21.2	24.2	17.2	20.4	24.8	19.5	20.2
이동 및	81	99	121	66	86	92	56	70	86	64	74	83
기타	5.6	6.9	8.4	4.6	6.0	6.4	3.9	4.9	6.0	4.4	5.1	5.8

<표 3-4-1>을 보면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은 개인유지시간으로 하루 평균 9시간 55분~11시간 1분, 비율로 볼 때 41.2~ 45.9%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전업주부의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많은데, 특히 미국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개인유지활동에 사용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개인유지시간이 많은데, 한국의 경우 취업여성이 미소한 차이지만 취업남성보다 개인유지시간이 더 적다.

취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수입노동시간에 사용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이 18.2%~25.8%를 구성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 23.6~29.7%를 구성하고 있어 남성취업자의 수입노동시간이 더많다. 남녀 모두 한국 취업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수입노동에 사용하고 있고, 핀란드취업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적다.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취업자의 경우 하루 중 11. 0~14.2%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지만, 남성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2% 미만이고 미국과 핀란드의 경우 7%대이다. 동양 남성의 낮은 가사노동참여가 두드러져 보인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16.6~26.5%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주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하루 평균 6시간 22분), 미국주부가 가장 적은 시간(하루 평균 3시간 59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자유시간이 취업자에 비하여 많은 것은 모든 국가에 공통된 현상이지만, 전업주부와 취업자 사이의 차이, 취업자 중 남녀의 차이는 국가별로 다르다. 미국의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고, 일본의 주부가 가장 적은 시간을 갖는다. 한국 취업자는 남녀 모두 자유시간이 다른 3국에 비하여 적을 뿐 아니라 남녀간의 차 이도 55분이나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히 크다. 따라서 한국의 취업여성이 가장 적은 자유시간을 갖는다.

취업여부별 이동 및 기타시간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한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어느 국가에서나 전업주부의 시간이 가장 작고, 취업자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취업여부별로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수입노동시간 차이로 인하여 비취업자의 취업의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생활영역을 크게 분류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개별 활동별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전업주부의 수면시간이 남성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유무와 관계없이 여성의 수면시간이 남성보다 더 적은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진업주부와 취업자의 시간사용방식이 크게 다르고, 남녀 취업자 사이에도 시간사용이 평등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핀란드와 미국이 한국과 일본보다는 취업자간 남녀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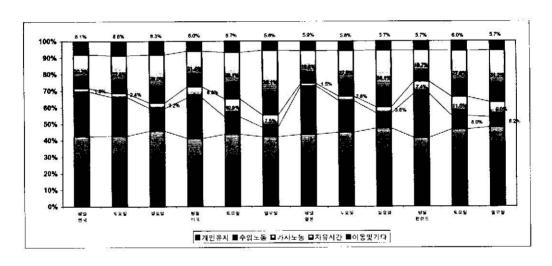
한국의 남녀 취업자는 가장 많은 수입노동을 하며, 자유시간은 가장 적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취업자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비교국의 모든 집단중 가장 많아 이중역할로 인한 부담이 극심한 문제점이 시간양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업주부가 다른 나라의 전업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특히 길고 자유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반대로 미국의 전업주부는 가장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며,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개인유지시간은 가장 길다. 한국의 취업자가 장시간노동의 어려움을 겪는데 비하여 한국 주부의 경우 미국 주부 다음으로 많은 자유시간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취업자는 특별히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수입노동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 생활영역간 부조화가 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제 5 장 요일별 생활시간 국제비교

다음은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을 비교하였다.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평일과의 시간차이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요일에 따라 생활시간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원인은 근무시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 주5.5일로 토요일의 반일 근무가 원칙이나 미국, 일본, 핀란드는 기준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주5일 근무가 정착되어 있어서 토요일의 생활시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즉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일과 토요일의 생활시간 차이가 많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시간차이가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2002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되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생활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성인남성과 성인여성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생활시간 배분을 살펴보았다. 각 생활행동의 대분류에 따른 하루의 생활행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 3-5-1>과 <그림 3-5-2>에 나타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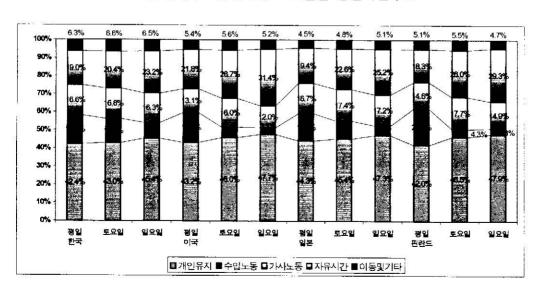


<그림 3-5-1> 성인남성의 요인별 생활시간구조

<그림 3-5-1>에서 성인남성의 요일변 생활시간구조를 보면, 평일은 4개국 모두 개인유지시간이 가장 많고, 다음은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충노동시간, 그리고 자유시간, 이동 및 기타의 순서로 배분되어 있다. 그러나 토요일의 생활시간구조는 나라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한국은 토요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개인유지시간, 충노동시간, 자유시간의 순인데 비해 미국, 핀란드의 경우는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충노동시

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토요일 반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타 난 현상이다. 일요일은 4개국 모두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총노동시간의 배분을 갖 는다.

전 요일에 걸쳐 하루 중 비중이 가장 큰 개인유지시간은 전반적으로 평일에 비해 토 요일, 일요일에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평일 개인유지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 는 일본이고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이다. 수입노동시간은 국가에 따른 요일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일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 고, 토요일과 일요일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한국으로, 한국 남성들의 토요일 수입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27.2%→23.5%), 그러나 미 국의 남성들은 평일 전체의 24.5%를 소비하던 수입노동시간이 토요일에는 10.4%, 일 요일은 5.7%로 감소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도 평일 26.7%에서 토요일 8.0%, 일요일 은 6.2%로 줄어들고 있다. 평일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컸던 일본도 토요일, 일요일은 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납성들의 가사노동시간 비중도 국가에 따라 요일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들은 가사노동시간의 비중도 크지 않고, 요일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핀란드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이나 일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크게 증가한다. 자유시간의 요일에 따른 차이를 보 면, 각국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시간은 일본을 제외하 면, 한국, 미국, 핀란드가 토요일의 비중이 평일이나 일요일에 비해 컸다. 이동의 내용 을 보면 한국은 토요일 근무를 위한 통근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통근이 외의 이동시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2> 성인여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

<그림 3-5-2>에는 성인여성의 요일별 생활시간구조가 나타나 있다. 평일의 생활시간구조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4개국 모두 개인유지시간, 총노동시간, 자유시간, 이동의순서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토요일 한국과 일본의 여성은 자유시간보다 총노동시간이 많은 반면 미국과 핀란드는 자유시간이 총노동시간보다 많다. 일요일은한국여성들만 자유시간보다 긴 총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여성들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전 요일에 걸쳐 노동시간이 자유시간보다 더 길어서 노동 중심적인 생활시간구조를 가진다. 평일 개인유지시간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이고 토요일과일요일은 핀란드 여성들의 개인유지시간 비중이 컸다. 요일별 생활시간 구조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여성들의 생활시간구조는 요일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생활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핀란드나 미국의 여성들은 평일은수입노동시간의 비중이 큰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성인의 생활시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 중요하게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생활시간구조에서 나타난 한국 남성의 시간사용의 특징은,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특히 통근시간-이 길고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이짧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국가 중 일본과 거의 유사하나 한가지 차이점은 일본 남성의 이동시간이 짧고 우리 나라 남성은 긴 것이다.

한국 여성 또한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많고 자유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는 한국 남성과 일치되나 가사노동시간이 긴 점에서는 남성과 대조적이다. 특 히 한국 여성은 수입노동시간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에 있어 가장 앞선 핀란드에 이어 2위,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는 한국과 더불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본에 이어 2위를 함으로써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생활시간배분의 성별차이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핀란드로 대표되는 서구에 비해 남녀간 불평등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주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입노동에 있어서 남성의 우위와 가사노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우위가 동양권에서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불평등을 규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가 근무시간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가용성의 차이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규범의 차이가 큰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규범에서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가사노동보다 수

입노동시간의 양국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데, 이는 여성의 근무시간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남성의 수입노동시간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여성의 근무시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적으므로 근무시간의 남녀간 차이가 커서 일본이 한국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가 되고 있다.

한편 여가활동은 남녀가 비교적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여가활동 내역별로 볼경우 남녀의 차이가 국가간에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문화권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여가활동양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생활시간의 특성을 비교할 경우 남성의 수입노동 시간은 4개국 모두 20대와 50대 남성이 짧으며, 30대와 40대가 길어 전체적으로 역 U자형의 수입노동시간 라이프사이클을 가진다. 자유시간은 수입노동시간과 대조를 이루어 30, 40대가 짧고 20대와 50대가 긴 편이다. 한편 여성의 연령별 수입노동시간은 국가에 따라 다른데, 특히 한국과 일본의 30대의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취업을 단절하는 전형적인 M자형 수입노동 라이프사이클을 보인다. 가사노동시간은 한국과일본의 경우 30대에 이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증가 정도가 서구 두 나라보다 현저하다. 자유시간은 30대가 짧은데 이는 긴 가사노동시간 때문으로 생각된다.

취업여부별로 생활시간을 비교하면 모든 국가에서 전업주부와 취업자의 시간사용 방식이 크게 다르고 남녀취업자 사이에도 시간사용이 평등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핀란드나 미국보다 취업자간 남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녀 취업자는 가장 많은 취업노동을 하며, 자유시간은 가장 적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 취업자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총노동시간이 비교국의 모든 집단 중 가장 많아 이중역할로 인한 부담의 문제점이 시간양으로도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의 취업자가 장시간노동의 어려움을 겪는데 비하여 한국 주부는 미국 주부 다음으로 많은 자유시간을 갖는다. 이에 반해 일본의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시간이 특히 길고 자유시간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남성취업자는 특별히 가사노동시간은 짧고, 취업노동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 생활영역간 부조화가 심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요일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산업형태나 근무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요일의 개념이 일찍 확립된 미국이나 핀란드 등 서구사회가 우리 나라나 일본 등 동양에 비해 요일간의 생활시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 우리 나라를 재외한 3개국은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과 토요일의 생활시간 차이가 크고,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짧고 식사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은 물론 일요일보다 길어서 토요일이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우리 나라는 토요일의 근무시간이 평일과 별 차이가 없고, 이에 영향을 받는 수면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활동시간, 레저활동시간 등도 평일과 토요일의 차이가 크지 않

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가장 큰 변화는 토요일의 생활시간에서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요일은 모든 나라가 유사하게 휴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요일 역시 우리 나라 성인 남녀의 근무시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길다.

우리는 생활시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긴 점, 가사노동을 포함한 총노동시간에 있어 한국 여성, 특히 여성취업자의 시간이 길어 이중 부담을 가장 크게 안고 있다는 점,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짧아 성별 불평등도가 높다는 점, 긴 이동시간으로 인한 국가적 시간손실이 크다는 점, 육아로 인한 여성의 취업단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요일에 따라 생활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등의 특성 내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국민의 생활양식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각자의 의식 전환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노동력정책, 여성정책, 교통정책 등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시간조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의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생활시간량편.

webuse.umd.edu/data_analysis.htm

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1994, 1995). 「生活時間の國際比較」. 東京: 大空社. 日本總務廳統計局(1998). 「平成8年 社會生活基本調査報告」 第1卷 全國 生活時間編.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 승 권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 승 권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으로 주어져 있으나, 개인의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여부, 직업유형, 개인적 성향 등 다양한 특성에 의하여 달리 지각되고 배분된다. 시간의 비효율적 소비는 에너지의 낭비이므로, 개인 당사자에게 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겠다. 즉, 시간의 소비는 에너지의 소비이며, 시간의 '질'은 사용된 시간의 흐름 그 자체보다는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내용이 무엇이며,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시간의 양(quantity)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분야 및 항목에 얼마나 배분하는가에 따라 시간의 질(quality)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양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간사용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양적 측정이 필 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개인, 집단, 전체 사회인의 생활시간배분의 실태를 파악하 고 분석하는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99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자원을 효율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정경희 박사와 송수진 주임연구원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와 효율화 방안」을 요약한 것임.

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사회학의 특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의 배분실태를 파악하고, 시간활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직업유형, 여성의 경제활동여부, 노인계층 등 주요 인구집단의 생활시간배분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셋째, 생활시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연구목표는 '시간'이라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한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3. 연구내용

- 가.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 한국인의 전체 및 요일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항목별, 요일별 생활시간배분실태
- 나. 직장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 직업유형별,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실태
- 다. 유배우부인의 경제활동여부별 생활시간배분실태
 - 경제활동여부별, 직업유형별,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실태
- 라. 노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 노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시간 배분실태 비교

Ⅱ. 전체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1. 전반적 생활시간배분

10세 이상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은 1일 평균 개인유지가 10시간 21분(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제 및 여가활동 4시간 57분(20.7%), 일 3시간 34분(14.8%) 등이었다. 이 외에도 1시간 이상의 시간배분을 한 항목은 가정관리 1시간 36분(6.7%), 이동 1시간 32분(6.4%), 학습 1시간 22분(5.7%) 등이었으며, 1시간 미만의시간배분 항목으로는 가족 보살피기 25분, 참여 및 봉사활동 3분, 기타 9분 등이 있었다.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 노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량이2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항목별 생활시간배분은 요일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개인유지,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 일요일에 더 많았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평일 4시간 26분에서 도요일 5시간 11분, 일요일 6시간 23분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이동등을 위한 시간배분은 요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다만 이동을 위한 시간은 평일 및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약 6~7분 더 많았다. 따라서 토요일 및 일요일의 여유시간을 가정관리에 투입하기보다는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단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1:}					
1 Z	평인	토요일	일요일	평간			
개인유지	10:10(42.4)	10:16(-42.8)	11:02(46.0)	10:21(43.2)			
일	3:58(-16.5)	3:34(14.9)	2:17(9.5)	3:34(14.8)			
학습	1:44(7,2)	1:06(4.6)	0:29(2.0)	1:22(5.7)			
가정관리	1:32(6.4)	1:39(6.9)	1:44(7.2)	1:36(-6.7)			
가족 보살피기	0:25(1.7)	0:25(-1.7)	0:24(1.6)	0:25(1.7)			
참여 및 봉사활동	0:04(0.3)	0:03(0.2)	0:03(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4:26(18.5)	5:11(-21.6)	6:23(-26.6)	4:57(20.7)			
이동	1:31(6.3)	1:37(6.8)	1:30(-6.3)	1:32(6.4)			
기타	0:09(0.6)	0:09(0.6)	0:09(0.6)	0:09(0.6)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註: 1)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수는 총 85,906사례이며, 요인별로는 평일 52,365사례, 토요일 16,986사례, 일요일 16,555사례인.

2.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한국인에게 있어서 개인유지를 위한 생활시간배분은 수면시간 7시간 51분, 식사 및 간식은 1시간 32분으로 대부분 하루일과를 마무리하고, 내일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수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활동을 위한 식사 및 간식에도 시간투입이 제법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의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수면과 식사 등 대부 분 먹고 자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그 외의 개인위생, 옷갈아 입기 및 외모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의 개인 관리를 위하여 51분을 투입하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자가치료, 의료서비스 받기, 아파서 쉬는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불과 7분만을 할애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면 과 식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개인관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투입을 증대시 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한국인의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വിരിറെ എ ÷ി ⊞	3893	평군		
개인유지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인	-8 (1
수면	7:41(75.6)	7:46(-75.6)	8:29(-76.9)	7:51(75.8)
식사 및 간식	1:31(15.0)	1:32(15.0)	1:36(14.5)	0:32(14.9)
개인관리	0:50(8.3)	0:51(8.2)	0:51(7.7)	0:51(8.1)
건강관리	0:08(1.2)	0:07(1.2)	0:06(0.9)	0:07(1.2)
기타 개인유지	0:00(0.0)	0:00(0.0)	0:00(0.0)	0:00(0.0)
계	10:10(100.0)	10:16(100.0)	11:02(100.0)	10:21(100.0)

3.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일 항목 중 한국인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항목은 고용된 일 및 자영업으로 3시간 4분이나 되었다. 이는 요일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일 3시간 28분, 토요일 3시간 3분, 그리고 일요일 1시간 49분이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한국인도 많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 한국인의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A) +1 L		요일					
일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고용된 일 및 자영업	3:28(87.4)	3:03(85.5)	1:49(-79.6)	3:04(86.0)			
부급가족종사일	0:11(4.6)	0:12(5.6)	0:09(6.6)	0:11(5.0)			
농립·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0:13(5.6)	0:13(6.1)	0:13(9.5)	0:13(6.1)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0:03(1.2)	0:04(1.9)	0:05(3.4)	0:04(1.9)			
구직활동	0:00(0.0)	0:01(0.5)	0:00(0.3)	0:01(0.5)			
일 관련 물품구입	0:03(1.2)	0:01(0.5)	0:01(0.3)	0:01(0.5)			
기타 일 관련행동	0:00(0.0)	0:00(0.0)	0:00(0.1)	0:00(0.0)			
계	3:58(100.0)	3:34(100.0)	2:17(100.0)	3:34(100.0)			

4. 학습 항목의 생활시간량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평균 1시간 22분이었는데, 이는 10세 이상 한국인 전체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체 학습시간 중 정규수업을 위한 시간은 전체 학습시간량의 72.1%인 59분이었으며, 정규수업 외 학습을 위한 시간은 27.9%인 23분으로 나타났다. 학습시간량은 정규수업인지 여부에 따라 요일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수업의 경우 평일에는 종일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는 반일 수업을 하며, 그리고 일요일에는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정규수업 외의 학습은 학교에서의 특강, 학교 밖에서의 학원, 개인자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일별 차이는 현저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학교수업을 마치고 여러 학원을 다니며,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한국인의 학습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학습 항목		요일				
थ स ४ ५ 	평일	토요일	일요인	- 평균		
학생의 정규수업	1:20(76.9)	0:47(71.2)	0:04(-13.8)	0:59(72.1)		
학생의 정규수업외	0:24(-23.1)	0:19(28.8)	0:25(-86.2)	0:23(27.9)		
학습관련 물품구입	0:00(0.0)	0:00(0.0)	0:00(0.0)	0:00(0.0)		
계	1:44(100.0)	1:06(100.0)	0:29(100.0)	1:22(100.0)		

5.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가정관리 항목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음식준비 및 정리 항목으로 평균 49분이었으며, 다음은 청소 및 정리 21분, 의류관리 13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8분, 집관리 4분, 가정경영 1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의 항목별 배분시간량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가정경영을 제외하고는 평일보다 토요일이,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많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일 또는 토요일이 일, 학습 등에 얽매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상적인 음식 만들기나 상차림 외에 요리재료를 다듬거나 구입해온 식품을 정리하는 등 음식준비활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집작할 수 있다.

〈표 5〉 한국인의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요일					
가정관리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인	평균			
음식준비 및 정리	0:47(51.0)	0:49(-49.6)	0:50(48.0)	0:49(51.0)			
의류관리	0:13(14.3)	0:14(14.2)	0:14(-13.5)	0:13(-13.5)			
청소 및 정리	0:19(-21.1)	0:22(-22.2)	0:24(23.1)	0:21(-21.9)			
집관리	0:04(4.3)	0:04(4.0)	0:05(4.8)	0:04(4.2)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0:07(7.9)	0:09(9.0)	0:10(9.6)	0:08(8.4)			
가정경영	0:02(1.5)	0:01(1.0)	0:01(1.0)	0:01(1.0)			
기타 가사일	0:00(0.0)	0:00(0.0)	0:00(0.0)	0:00(0.0)			
계	1:32(100.0)	1:39(100.0)	1:44(100.0)	1:36(100.0)			

6.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보살피는데 사용되는 시간량은 25분에 불과하였는데, 미취학 아동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16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살피기 5분, 배우자 보살피기 2분,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1분, 기타 가족 보살피기 1분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아동, 노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항목의 시간배분량과 비교하여 가족보호 시간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6〉 한국인의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요일					
가족 보살피기 항목	평일	토요인	일요일	평균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16(64.0)	0:16(64.0)	0:17(-70.8)	0:16(-64.0)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05(20.0)	0:04(16.0)	0:03(12.5)	0:05(20.0)			
배우자 보살피기	0:02(8.0)	0:02(8.0)	0:01(4.2)	0:02(8.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4.0)	0:01(4.0)	0:01(4.2)	0:01(4.0)			
그 외 가족 보살피기	0:01(4.0)	0:02(8.0)	0:02(8.3)	0:01(4.0)			
계	0:25(100.0)	0:25(100.0)	0:24(100.0)	0:25(100.0)			

7.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참여 및 봉사활동은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항목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량인 3분에 불과하였다. 친구가게 봐주기, 이웃집 농사일 또는 잔치음식 준비 돕기 등의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는 2분, 민방위·예비군 훈련, 환경운동 등 집회·시위참여나 투표참여, 각종 선거유세 관람, 정치적 집회등 정부기관 행사 참여, 정부나 민간의 각종 설문조사 등의 사회참여활동은 1분이었다. 특히 반상회, 쓰레기 분리수거당번, 마을 청년회·부녀회 활동, 지역의 대책회의, 방범활동, 마을청소 등 지역공동체 활동과 국가 및 지역행사,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 복구관련 등의 자원봉사는 0.5분 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이러한 영역이 비교적 활발한 선진국가에 비추어 보아 시간배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인 지역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이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표 7〉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		요일				
게 또 중 사원당 왕 축 	평일	토요일	일요일	0:02(66.7)		
이웃 및 친분있는 사람돕기"	0:02(50.0)	0:02(66.7)	0:02(66.7)	0:00(0.0)		
지역 공동체 활동	0:00(0.0)	0:00(0.0)	0:00(0.0)	0:01(33.3)		
사회참여 활동**	0:01(25.0)	0:01(33.3)	0:00(0.0)	0:00(0.0)		
자원봉사 ⁴¹	0:01(25.0)	0:00(0.0)	0:01(-33.3)	000 Wago - 600 Windows (COS) - 400 Windows (COS)		
게	0:04(100.0)	0:03(100.0)	0:03(100.0)	0:03(100.0)		

8.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에서 수면 등 개인유지 다음으로 큰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평균 4시간 57분이나 된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TAPE 등 음악 듣기, 컴퓨터 정보이용 등 대중매체 이용은 가장 많은 2시간 27분이었으며, 가족·친척, 친구 등과의 만남, 대화, 전화통화 등 교제관련 행동은 55분, 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취미활동, 유흥, 흡연, 휴식

등의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는 53분을 배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19분), 종교활동(11분), 일반인의 학습(8분),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 품구입(2분) 등 다양한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제 및 여가활동의 각 항목 중 일부는 요일에 따라 현저한 시간량의 차여를 보여주었다. 즉, 대중매체이용은 평일에는 2시간 11분이었으나 토요일에는 2시간 36분으로, 일요일에는 3시간 14분으로 증가하였고, 교제활동도 평일의 50분에서 토요일 58분으로, 일요일 1시간 7분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평일 49분에서 토요일 56분, 일요일 1시간 2분으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항목도 평일보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이 여가시간에 자기계발을 위해 하는 학습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취업 관련, 취미 관련 강습은 평일 9분에서 토요일 7분, 일요일 6분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서 관심을 갖게 하는 또 하나는 교제 및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매체 이용 항목이 대부분 TV 시청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인의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매두 낮아 좋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TV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인식되며, 양절의 프로그램에 의한 방송이 요망됨을 시사한다.

〈표 8〉 한국인의 교제 및 여가활동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200	요일		37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교제활동	0:50(18.8)	0:58(18.6)	1:07(17.5)	0:55(18.5)	
대중매체 이용	2:11(49.2)	2:36(50.2)	3:14(50.6)	2:27(49.6)	
- TV시청	1:54	2:18	2:55	2:10	
일반인의 학습	0:09(3.4)	0:07(2.3)	0:06(1.5)	0:08(2.7)	
종교활동	0:07(2.6)	0:08(2.6)	0:24(6.3)	0:11(3.7)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0:01(0.4)	0:03(1.0)	0:03(0.8)	0:02(0.3)	
스포츠, 집밖의 레저활동	0:16(6.0)	0:20(6.0)	0:23(6.0)	0:19(6.4)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0:49(-18.4)	0:56(-18.0)	1:02(16.2)	0:53(1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0:02(0.8)	0:03(1.0)	0:03(0.8)	0:02(0.7)	
기타 여가관련활동	0:01(0.4)	0:01(0.3)	0:01(0.3)	0:01(0.3)	
계	4:26(100.0)	5:11(100.0)	6:23(100.0)	4:57(100.0)	

9.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1시간 32분이 소요되고 있었는데,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이 33분, 교세활동 및 그 외 여가관련 이동이 29분으로 두 영역을 위한 이동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이동을 위한 시간은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13분), 가정관리 관련이동(7분), 개인유지관련 이동(5분),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3분), 이동을 위한 기다리기(1분),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1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을 위한 시간량을 항목별로 요일에 따라 살펴보면,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은 평일 37분, 토요일 33분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일요일은 18분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며,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도 마찬가지로 평일 16분, 토요일 12분, 일요일 2분으로 요일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직장과 학교가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일요일에는 대부분 쉬기 때문과 평일의 교통체증현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이동은 평일 20분에서 토요일 33분으로, 일요일 51분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은 평일과 토요일 1분에 불과하였으나 일요일은 4분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위한 이동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며, 이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한국인의 생활주기(life style)가 변화하고 토요 휴무제도의 정착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한국인의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이동 항목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 균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1)	0:01(1.1)	0:02(2.1)	0:01(1.1)	0:01(1.1)	
개인유지 관련 이동2)	0:05(5.5)	0:05(5.2)	0:04(4.4)	0:05(5.4)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3)	0:37(40.7)	0:33(-34.0)	0:18(20.0)	0:33(35.9)	
통학 및 학습관련이동4)	0:16(-17.6)	0:12(-12.4)	0:02(2.2)	0:13(-14.1)	
가정관리 관련이동5)	0:07(7.7)	0:08(8.2)	0:07(7.8)	0:07(7.6)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6)	0:03(3.3)	0:03(3.1)	0:03(3.3)	0:03(3,3)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	0:01(1.1)	0:01(1.0)	0:04(4.4)	0:01(1,1)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 관련이동 7)	0:20(22.0)	0:33(-34.0)	0:51(56.7)	0:29(31.5)	
기타 이동	0:00(0.0)	0:00(0.0)	0:00(0.0)	0:00(0.0)	
계	1:31(100.0)	1:37(100.0)	1:30(100.0)	1:32(100.0)	

Ⅲ. 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1. 전반적 시간배분실태

한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대분류에 기초한 각 행동의 생활시간량을 요약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는 행동유형은 일,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학습 등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는 행동유형은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등이었으며, 일,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남녀간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일은 1시간 40분, 교제 및 여가활동은 39분, 이동은 22분, 학습은 11분의 차이로 남자가 많은 생활시간을 배분하고 있었다.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시간량을 배분을 하고 있는 항목은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로 각각 2시간 20분, 31분의 차이로 여자가 많은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었다. 또한 시간배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족 보살피기는 여자가 39분인데 비해 남자는 8분에 불과하여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성별 생활시간배분을 요일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가 토요일 4시간 30분, 일요일 2시간 45분이었고, 여자는 토요일 2시간 45분, 일요일 1시간 52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상당한 시간을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많은 여성들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교제 및 여가활동에 배분하는 시간량이 평일에는 남자 4시간 39분, 여자 4시간 14분으로 25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나 토요일에는 남자 5시간 32분, 여자 4시간 52분으로 40분의 차이가 났으며, 일요일에는 남자 7시간 6분, 여자 5시간 45분으로 1시간 51분의 현저한 격차를 보여 우리나라 남자들이 주말이나 일요일에 가사를 돕거나 가족을 보살피는 등 가족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보다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투입을 하고 있음을 집작케 한다.

〈표 10〉 성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량

(단위: 시간, 분, %)

10	a sa	COLUMN TO THE PROPERTY OF	(원.	ㄲ 시신, 판, ⁄0/
-7 H		요일		T4 -1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
		남자	<u>.</u>	
개인유지	10:11(-42.5)	10:15(42.7)	11:04(46.1)	10:22(43.2)
일	4:59(20.8)	4:30(-18.7)	2:45(11.5)	4:27(18.6)
학습	1:51(7.7)	1:12(5.0)	0:31(2.1)	1:28(6.1)
가정관리	0:19(1.3)	0:22(1.6)	0:29(2.0)	0:22(1.5)
가족 보살피기	0:07(0.5)	0:08(0.6)	0:12(0.8)	0:08(0.6)
참여 및 봉사활동	0:04(0.3)	0:03(0.2)	0:03(0.2)	0:04(0.3)
교제 및 여가활동	4:39(19.4)	5:32(23.1)	7:06(29.6)	5:18(22.1)
이동	1:42(7,1)	1:50(7.7)	1:42(7.1)	1:44(7.2)
기타	0:08(0.5)	0:08(0.5)	0:08(0.5)	0:08(0.5)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8		여자		
개인유지	10:10(42.3)	10:17(42.9)	10:59(45.8)	10:21(43.1)
일	3:03(12.8)	2:45(-11.4)	1:52(7.8)	2:47(11.6)
하습	1:38(6.8)	1:00(4.2)	0:27(1.8)	1:17(5.4)
가정관리	2:37(10.9)	2:47(11.6)	2:51(11.9)	2:42(11.2)
가족 보살피기	0:41(2.8)	0:39(2.7)	0:34(2.4)	0:39(2.7)
참여 및 봉사활동	0:03(0.2)	0:03(0.2)	0:02(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4:14(-17.6)	4:52(20.3)	5:45(24.0)	4:39(19.4)
이동	1:22(5.7)	1:26(5.9)	1:19(5.5)	1:22(5.7)
フロー	0:10(0.7)	0:11(0.7)	0:10(0.7)	0:10(0.7)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2. 성 및 대분류 항목별 생활시간량

가. 개인유지 항목의 생활시간량

수면을 위한 시간량은 남자 7시간 55분, 여자 7시간 48분으로 남자가 단지 7분 많이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일별 수면시간도 이러한 경향을 보일 뿐이었다. 식사 및 간식을 위한 시간량은 요일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수준이었다.

개인관리를 위하여 할애하는 시간량은 남자 48분, 여자 52분으로 나타나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단지 3분 많았다. 따라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여성의 개인관리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도 개인관리를 위하여 여성과 유사한 수준에서의 시간투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은 남자 6분, 여자 7분으로 성별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아울러요일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

일 항목의 생활시간량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을 위한 시간배분이 남자는 4시간 13분으로 전체 일 항목을 위한 시간량의 94.8%나 차지하였고, 여자는 2시간 5분으로 74.5%로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급가족종사일은 남자 4분, 여자 17분이었고,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은 남자 5분, 여자 20분으로 나타나 이들 두 유형의 일을 위한 시간은 일 항목의 전체 시간량에 대하여 남자는 3.3%, 여자는 22.1%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일 항목을 위한 전체 시간량은 전업주부 등 미취업 여성에 의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일 항목을 위한 시간량 중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을 위한 투입시간의 비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한국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영업이나 농·어업등의 직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 학습 항목의 생활시간량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여자(77분)보다는 남자(88분)가 다소 많았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정규수업을 위한 시간량이 남자 64분, 여자 55분인 점에서 이해된다. 요일별로 는 남자와 여자 모두 평일에는 정규수업을 위한 시간배분이 많고, 일요일에는 매우적었다. 정규수업 외 학습은 여자의 토요일 시간량(18분)을 제외하고는 절대시간량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 가정관리 항목의 생활시간량

가정관리의 항목변 배분시간량은 성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동 시간량은 여자가 2시간 42분이었으나 남자는 22분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는 미취업 여성, 즉 전업주부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취업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정관리를 위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직장・남자, 가정・여자」의 경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대됨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가정은 여자가 주로 책임을 갖고 돌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직장 - 남자와 여자, 가정 - 여자」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 한국여성의 이중적 역할부담이 우려된다.

가정관리를 위한 남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 7분, 음식준비 및 정리와 집관리에 각각 5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3분, 의류관리와 가정경영 각각 1분 등으로 가정관리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일별로 구분하면,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가정관리를 위한 남자의 시간량이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진히 매우 적은 시간량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를 위한 여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에는 1시간 17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청소 및 정리 33분, 의류관리 24분,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 13분, 집관리 3분, 가정경영 2분 등이었다. 또한 여자의 가정관리 항목별 시간량은 남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가정관리를 위한시간량은 요일에 따라서는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가족 보살피기 항목의 생활시간량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평균 25분에 불과하였는데, 그 나마도 여자는 39분이었던 반면 남자는 겨우 8분에 그쳐 성별격차가 심하였다. 이를 가족 보살피기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는 남녀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및 배우자를 보살피는데 사용하는 시간량은 차이가 현저하였다. 즉, 미취학아이를 보살피는 시간량은 남자 5분, 여자 26분이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보살피는 데는 남자 1분, 여자 8분, 배우자를 보살피는 데는 남자 0.5분 마만, 여자 2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보산피기는 주로 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메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이는 취업여성의 중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한 영역인 것으로 가사, 가족돌보기 등에 대한 남녀의 역할분담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토요일 및 일요일 에 가족을 위한 시간할애가 요망된다. 물론 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일'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쉽지는 않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개인과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참여 및 봉사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 활동의 성별 시간량은 1일 평균 남자 4분, 여자 3분으로 낮았으며, 각 항목별 시간량도 미미하였다. 다만 다소의 특징이 있다면 남자는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 지역공동체, 사회참여, 자원봉사 등 네 가지 항목 모두 각 1분을 활동하고 있었으나, 여자는 주로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 2분, 자원봉사 1분 등으로 나타나 지역공동체 및 사회참여의 활동에는 더욱 미흡한 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일별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은 남녀 모두 미미하게 나타났다. 즉,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러한 활동이매우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참여 및 봉사활동이 평일에는 일, 학업, 가사 등의 사회적 및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시간을 배분하지 못할 수 있음은 이해되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러한 활동에 시간배분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동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몽 및 인식부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사, 교제 및 여가활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교재 및 여가활동의 시간량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중매체 이용은 남자 2시간 36분, 여자 2시간 21분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고, 교제활동은 남자 52분, 여자 58분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으며, 그리고 취미활동은 남자 1시간 6분, 여자 41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항목은 일반인의 학습(남자 10분, 여자 6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남자 26분, 여자 12분) 등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항목은 종교활동(남자 6분, 여자 15분),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남자 1분, 여자 3분) 등이었으며,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는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다.

이러한 교제 및 여가활동의 항목에 따른 시간량을 요일별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것을 간략히 설명하면, 남녀 모두 일반인의 학습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소폭이나마 적었고(약 1~3분), 그 외의 대부분의 항목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었다. 특히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 tape 등 대중매체이용은 남자의 경우 평일 2시간

17분에서 일요일에는 3시간 29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증가를 이루었고, 여자는 평일 2시간 5분에서 일요일에는 3시간으로, 취미 및 여가활동은 남자의 경우 평일 1시간에서 일요일에는 1시간 20분으로, 여자는 평일 40분에서 일요일 46분으로 증가하여 성별에 따른 요일별 시간배분량의 증가폭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아. 이동 항목의 생활시간량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 이동을 위한 평균 시간량은 1시간 32분이었는데, 이는 남자가 1시간 44분, 여자 1시간 22분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출·퇴근 등 일을 위한 아동시간과 교제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출·퇴근 관련 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남자 46분, 여자 23분이었으며, 교제 및 여가관련 활동을 위한 이동시간량은 남자 32분, 여자 10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 관련 이동은 남자 3분, 여자 26분으로 현저한 차이가 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동시간량을 요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출·퇴근 및 그 외 일 관련이동과 통학 및 학습 관련이동을 위한 시간량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근무 및 수업시간의 감소, 근무 또는 등교하지않는 등 요일이 갖는 특성으로 미루어보아 당연한 결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 관련 이동과 교제활동 및 그 외 여가활동 관련이동은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교제 및 여가 관련이동은 남자는 평일 21분에서 토요일에는 36분으로, 그리고 일요일에는 1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는 평일 20분에서 토요일에는 29분으로, 그리고 일요일에는 45분으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현저하였다.

IV. 연령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1. 전반적 시간배분실태

개인유지와 관련된 행동은 어느 연령대를 불문하고 가장 많은 시간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생명의 유지를 위한 수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량은 10대가 10시간 22분이었으며, 40대에는 10시간 4분으로 가장적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50~64세는 10시간 17분에 이르렀으며, 65세 이상에서는 11

시간 18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량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이 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어 개인유지시간을 다소 감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노인계층에서는 직장으로부터 은퇴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는 점차 기력이 쇠하여 수면을 많이 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과 관련된 행동에 투입되는 시간량은 10대에 매우 낮은 비율(1.7%)을 보였으나 20대부터는 급증하여 40대에 최고점(21.8%)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점차 낮아졌다.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10대에서는 16분에 불과하였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1시간 14분, 2시간 2분으로 급증하였고, 40대에는 2시간 6분, 50~64세 연령층에서는 2시간 9분으로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시간 58분으로 조금 감소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결혼과 관련하여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은 유사한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인층에서 비록 약간의 시간량 감소가 있었으나 70~80대 고령층 노인들은 가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을 집작케 한다.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한국인 전체가 25분에 불과하여 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가족원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10대에는 3분에 불과하였으나 20대에는 38분으로 증가하였고, 30대에는 54분으로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급감하여 40대에는 14분, 50~64세 에서는 17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15분으로 저하되었다. 이는 20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결혼 및출산에 의한 영향과 30대는 미취학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나타나는 것은 배우자 및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한국인의 시간은 불과 3분이었으며, 이 또한 연령층에 따라서 별다른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추세를 간략히 보면, 10대에는 단지 1분이었고, 20대 이상에서는 약 3~5분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서 노인들의 지역사회참여 및 자원 봉사를 위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 11〉 연령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량

(단위: 시간, 분, %)

<u> </u>			(단.	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21	
	평일	토요일	인요일	평균	
20 45 10 100	**************************************	10대			
개인유지	10:03(41.9)	10:09(42.3)	11:40(48.6)	10:22(43.2)	
일	0:27(1.9)	0:25(1.7)	0:20(1.4)	0:25(1.7)	
학습	8:10(34.0)	5:39(23.5)	2:22(9.9)	6:37(27.6)	
가정관리	0:11(0.8)	0:18(1.3)	0:32(2.2)	0:16(1.1)	
가족 보살피기	0:02(0.1)	0:03(0.2)	0:05(0.4)	0:03(0.2)	
참여 및 봉사활동	0:01(0.0)	0:02(0.1)	0:01(0.1)	0:01(0.1)	
교제 및 여가활동	3:27(14.4)	5:34(23,2)	7:41(32.0)	4:38(19.3)	
이동	1:33(6.5)	1:43(7.1)	1:11(5.0)	1:31(6.3)	
기타	0:06(0.4)	0:07(0.5)	0:08(0.5)	0:07(0.5)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20대		21-00(100,0)	
개인유지	10:08(42.1)	10:22(43.2)	11:10(46.5)	10:23(43.3)	
<u> </u>	4:28(18.6)	3:42(15.4)	1:52(7.8)	3:48(15.8)	
학습	1:04(4.4)	0:35(2.4)	0:20(1.4)	0:50(3.5)	
가정관리	1:09(4.8)	1:14(5.2)	1:27(6.0)	1:14(5.1)	
가족 보살피기	0:38(2.6)	0:38(2.7)	0:37(2.6)	0:38(2.6)	
참여 및 봉사활동	0:06(0.4)	0:04(0.3)	0:03(0.2)	0:05(0.3)	
교제 및 여가활동	4:37(19.2)	5:24(22.5)	6:41(27.9)	5:08(21,4)	
이동	1:47(7.4)	1:53(7.8)	1:42(7.1)	1:47(7.4)	
기타	0:07(0.5)	0:08(0.5)	0:07(0.5)	0:07(0.5)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AND AND STREET	30대		2100(100.0)	
개인유지	9:56(41.4)	10:04(42.0)	10:57(45.6)	10:10(42.4)	
일	5:26(22.6)	4:36(19.1)	2:45(11.5)	4:44(19.7)	
학습	0:01(0.1)	0:01(0.1)	0:00(0.0)	0:01(0.1)	
가정관리	1:58(8.2)	2:04(8.6)	2:10(9.0)	2:02(8.5)	
가족 보살피기	0:56(3.9)	0:52(3.6)	0:50(3.4)	0:54(3.8)	
참여 및 봉사활동	0:03(0.2)	0:02(0.2)	0:02(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3:57(16.5)	4:29(18.7)	5:30(22.9)	4:21(-18.1)	
이동	1:33(6.5)	1:42(7.1)	1:37(6.7)	1:36(6.7)	
기타	0:09(0.6)	0:09(0.6)	0:08(0.6)	0:09(0.6)	
게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50/0-509/19 - obdess	40대		0100(1,,,,,,,,,	
개인유지	9:54(-41.3)	9:59(-41.6)	10:39(44.4)	10:04(41.9)	
일	5:48(24.2)	5:16(22.0)	3:21(14.0)	5:14(21.8)	
학습	0:01(0.1)	0:00(0.0)	0:00(0.0)	0:01(0.1)	
가정관리	2:03(8.5)	2:09(8.9)	2:14(9.3)	2:06(8.8)	
가족 보살피기	0:15(1.0)	0:14(1.0)	0:12(0.9)	0:14(1.0)	
참여 및 봉사활동	0:04(0.3)	0:02(0.2)	0:03(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4:10(17.4)	4:29(18.7)	5:39(23.5)	4:31(18.8)	
이동	1:36(6.7)	1:41(7.0)	1:43(7.2)	1:38(6.8)	
기타	0:09(0.6)	0:09(0.6)	0:09(0.6)	0:09(0.6)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00.0/	3.00(100.0)	21.00(100,07	24.00(100.0)	

〈표 11〉 계속

		50-	-64세	720
개인유지	10:14(42.6)	10:13(42.6)	10:32(43.9)	10:17(42.8)
일	4:42(19.6)	4:27(18.5)	3:15(13.5)	4:22(18.2)
학습	0:00(0.0)	0:00(0.0)	0:00(0.0)	0:00(0.0)
가정관리	2:07(8.9)	2:12(9.2)	2:08(8.9)	2:09(9.0)
가족 보살피기	0:18(1.2)	0:17(1.2)	0:15(1.0)	0:17(1.2)
참여 및 봉사활동	0:05(0.3)	0:04(0.3)	0:04(0.3)	0:05(0.3)
교제 및 여가활동	4:55(20.5)	5:08(21.4)	6:04(25.3)	5:11(21.6)
이동	1:26(6.0)	1:28(6.1)	1:32(6.4)	1:28(6.1)
기타	0:11(0.8)	0:11(0.8)	0:10(0.7)	0:11(0.8)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200	**************************************	65세	이상	
개인유지	11:19(47.1)	11:17(47.0)	11:19(47.1)	11:18(47.1)
일	2:28(10.3)	2:19(9.7)	1:58(8.2)	2:21(9.8)
학습	0:00(0.0)	0:00(0.0)	0:00(0.0)	0:00(0.0)
가정관리	2:00(8.3)	1:57(8.1)	1:53(7.8)	1:58(8.2)
가족 보살피기	0:15(1.0)	0:15(1.0)	0:13(0.9)	0:15(1.0)
참여 및 봉사활동	0:05(0.3)	0.06(-0.4)	0:03(0.2)	0:05(0.3)
교제 및 여가활동	6:40(27.8)	6:51(28.6)	7:16(30.3)	6:49(28.4)
이농	1:01(4.2)	1:02(4.3)	1:05(4.5)	1:02(4.3)
기타	0:13(0.9)	0:12(0.9)	0:12(0.8)	0:12(0.8)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교제 및 여가활동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개인유지의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투입하는 행동유형이다. 연령층에 따른 동 유형의 시간량 변화양상의 특징은 10대, 30대, 40대에는 한국인 평균 시간량 (4시간 57분)에 미치지 못하는 4시간 38분, 4시간 21분, 4시간 31분이었으며,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5시간 이상의 시간량을 보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가장 많은 6시간 49분을 나타내어 일, 가사, 학습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이러한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집작케 한다.

2. 연령 및 대분류 항목별 생활시간량

연령별 주요 항목의 생활시간량을 보면, 가장 많은 시간량을 나타내는 수면은 65세이상 노인층이 8시간 33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대의 8시간 3분이었고, 가장수면시간이 적은 연령층은 40대의 7시간 32분이었다. 따라서 연령층에 따른 수면차이는 최고 1시간 1분으로 나타났다. 식사 및 간식시간은 수면 다음으로 많은 시간량을 보였는데 30~40대가 1시간 36분이었으며, 10대는 1시간 24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량을 나타냈다. 따라서 식사 및 간식시간의 연령층별 차이는 최고 12분에 불과하였다.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20대가 58분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층은 40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반면에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많아 10대

는 단 1분, 20대는 2분, 30대는 3분, 40대는 5분, 50~64세는 11분, 그리고 65세 이상은 33분으로 중년기 이후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일 관련 항목의 생활시간량을 살펴보면, 전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 층에서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이 가장 많았으나 이는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즉,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은 10대에서는 22분으로 동 연령층의 일 관련 시간량의 88.0%를 차지하였으나 20대에서는 93.9%로 급증하여 시간량은 3시간 34분을 나타냈다. 동 항목의 경우 30대에 시간량은 4시간 18분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90.8%로 감소하였고, 40대에서는 4시간 34분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87.3%로 감소하였다. 이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의 시간량 외에도 무급가족종사일, 농립·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등을 위한 시간량의 증가로 전체 일 관련 시간량이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고용된 일 및 자영업의 시간량은 50~64세에는 3시간 32분, 65세 이상에서는 1시간 31분으로 감소하였다.

무급가족종사일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을 위한 시간량은 64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증가하였다. 즉, 10대는 3분, 20대 13분, 30대 23분, 40대 35분, 50~64세 41분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고,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35분으로 감소하였는데, 대신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에 대한 시간량이 증가하였다.

연령별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항목의 생활시간량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층에서 대중매체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할애를 하고 있는 점은 전체 한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동 항목을 위한 시간량은 65세 이상 노인층이 3시간 23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sim64$ 세의 2시간 41분, 20대 2시간 22분 등의 순이었으며, 30대가 2시간 15분으로 가장 적었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 역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1시간 20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대가 1시간 11분으로 많았고, 30대와 40대는 각각 38분, 42분으로 적은 시간량을 보였다. 종교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았는데, 10대와 20대는 7분이었으며, 30대는 9분으로 증가하였고, 40대 13분, 50~64세는 14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층은 17분으로 증가하였다.

V.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

1. 전반적 시간배분실태

혼인상태에 따라 생활시간배분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간량을 배분하고 있는 분야는 개인유지이었고, 두 번째는 혼인상태별로 차이를 보여. 이혼상태의 경우는 일, 그 외의 미혼, 유배우, 사별인 상태인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이었고, 세 번째는 미혼자는 학습, 유배우 및 사별인 경우는 일, 이혼자인 경우는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다소 상이한 시간배분을 하고 있었다.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은 사별이 요일평균 10시간 59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이혼이 10시간 25분, 미혼 10시간 22분, 유배우 10시간 16분으로 나타나 결혼상태에 따라 최고 43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일을 위한 시간량은 결혼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혼이 5시간 7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유배우 4시간 28분, 사별 2시간 43분, 미혼이 2시간 4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상태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며,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는 사별상태의 사람은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한다기 보다는 교제 및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사별이 6시간 12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혼 5시간 1분, 이혼 4시간 55분, 유배우 4시간 46분 등의 순이었다.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미혼은 4시간 14분으로 매우 많았고 그 외의 혼인상태의 사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미혼자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시간량의 변화에 있어서 요일별로 특징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면, 일을 위한 시간은 미혼 및 유배우 상태의 사람은 요일에 따라 차이가 많았으나 사별 및 이혼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 량은 혼인상태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미혼자의 경우 요일에 따라 4시간 2분~7시간 30분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유배우 상태의 사람은 4시간 26분~5시간 46분을, 이혼인 경우는 4시간 46분~5시간 19분을, 그리고 사별인 경우는 6시간 2분~6시간 46분을 나타냈다.

2. 혼인상태 및 대분류 항목별 생활시간량

혼인상태별 개인유지 항목의 시간량은 사별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수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면을 위한 시간량은 미혼, 유배우,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7시간 44분~7시간 56분이었는데 비하여 사별인 상태의 사람은 8시간 22분이나 되었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미혼, 유배우, 이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2분~10분에 불과하였으나 사별상태의 사람은 27분이나 되었다.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사별인 경우는 42분으로 가장 적었고, 유배우 상태의 사람은 48분, 미혼상태의 경우는 57분, 이혼상태의 경우는 58분으로 혼인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별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이혼은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의 사회적 부담감을 줄이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외모, 이 미용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혼상태의 경우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무려 4시간 55분이나 되었으며, 이어서 유배우 상태인 사람은 3시간 49분, 사별은 2시간 7분, 미혼자는 1시간 55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일에 따라서는, 미혼자의 경우는 평일 2시간 14분에서 일요일에는 1시간 3분으로 감소하였고, 사별상태의 사람은 평일 2시간 14분에서 일요일 1시간 40분으로 감소하였으며, 유배우자는 평일 4시간 18분에서 일요일에는 2시간 14분 동안 이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혼인상태별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량

(단위: 시간, 분, %)

				_(단위: 시간, 분, %
구 분		요일		평 권
	평일	토요일	일요인	31.
-1) A) A -1	10.05/ 10.05/		12	
개인유지	10:05(42.0)	10:16(42.8)	11:27(47.7)	10:22(43.2)
일	2:21(9.8)	2:06(8.8)	1:12(5.0)	2:04(8.6)
학습	5:19(22.2)	3:28(14.4)	1:30(6.3)	4:14(17.6)
가정관리	0:19(1.3)	0:26(1.8)	0:40(2.8)	0:25(1.7)
가족보살피기	0:02(0.1)	0:03(0.2)	0:05(0.3)	0:03(0.2)
참여 및 봉사활동	0:03(0.2)	0:03(0.2)	0:03(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4:02(16.8)	5:41(23.7)	7:30(31.3)	5:01(20.9)
이동	1:43(7.2)	1:50(7.6)	1:26(6.0)	1:41(7.0)
기타	0:06(0.4)	0:07(0.5)	0:07(0.5)	0:07(0.5)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배우	70 N
개인유지	10:07(42.2)	10:11(42.4)	10:48(45.0)	10:16(42.8)
일	4:59(20.8)	4:26(18.5)	2:50(11.8)	4:28(18.6)
학습	0:01(0.1)	0:00(0.0)	0:00(0.0)	0:00(0.0)
가정관리	2:06(8.8)	2:10(9.0)	2:13(9.2)	2:08(8.9)
가족보살피기	0.39(-2.7)	0.37(-2.6)	0:36(2.5)	0:38(2.6)
찬여 및 봉사활동	0:04(0.3)	0:03(0.2)	0:03(0.2)	0:03(0.2)
교제 및 여가활동	4:26(18.5)	4:48(20.0)	5:46(24.0)	4:46(19.9)
이동	1:28(-6.1)	1:35(6.6)	1:35(6.6)	1:31(6.3)
기타	0:10(-0.7)	0.10(-0.7)	0:09(0.6)	0:10(0.7)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별	
개인유지	11:00(45.8)	10:52(45.3)	11:04(46.1)	10:59(45.8)
일	2:51(11.9)	2:44(11.4)	2:13(-9.2)	2:43(11.3)
학습	0:00(0.0)	0:00(0.0)	0:00(0.0)	0:00(0.0)
가정관리	2:26(10.1)	2:29(10.3)	2:21(-9.8)	2:25(10.1)
가족보살피기	0:19(1.3)	0:19(1.3)	0.12(-0.8)	0.17(-1.2)
참여 및 봉사활동	0:06(0.4)	0:07(0.5)	0:03(0.2)	0:06(0.4)
교제 및 여가활동	6:02(25.1)	6:09(25.6)	6:46(28.2)	6:12(25.8)
이동	1:04(4.4)	1:07(4.7)	1:09(4.8)	1:06(4.6)
기타	0:12(0.8)	0:13(0.9)	0.12(-0.8)	0.12(-0.8)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11 a) a)			혼	
개인유지	10:19(-43.0)	10:31(43.8)	10:38(44.3)	10:25(43.4)
<u>oj</u>	5:21(-22.3)	4:57(20.6)	4:29(-18.7)	5:07(21.3)
학습	0:01(0.1)	0:00(0.0)	0:00(0.0)	0:01(0.1)
가정관리	1:35(6.6)	1:43(7.2)	1.44(-7.2)	1:38(6.8)
가족보살피기	0:11(0.8)	0:12(0.8)	0.09(-0.6)	0:11(0.8)
참여 및 봉사활동	0:06(0.4)	0:04(0.3)	0:03(0.2)	0:05(0.3)
교제 및 여가활동	4:46(19.9)	5:00(-20.8)	5:19(-22.2)	4:55(20.5)
이동	1:31(6.3)	1:23(5.8)	1:28(6.1)	1:28(6.1)
기타	0:10(0.7)	0:10(0.7)	0:10(0.7)	0:10(0.7)
계	24:00(100.0)	24:00(100.0)	24:00(100.0)	24:00(100.0)

註: 1) 미혼 27,645사례, 유배우 50,406사례, 사별 6,595사례, 이혼 1,265사례로 총 85,906 사례가 분석대상이었음.

그런데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혼상태인 사람으로 이들은 평일 5시간 13분에서 일요일에도 무려 4시간 15분 동안 할 있어 요일에 상관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장근무 또는 자영업종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록 석은 시간량이긴 하지만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에 종사하는 이혼상태의 사람은 평일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이혼상태인 가구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집작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사별상태의 사람이 가장 많고, 유배우 상태인 경우는 가장 적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별상태인 경우는 대중매체의 이용이 3시간 1분으로 미혼의 2시간 20분보다 41분이나 많았으며, 교제활동도 1시간 15분으로 가장 적은 미혼자의 47분보다 28분이 많았다.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도 사별상태의 사람은 1시간 9분으로 운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연령층이 많은 미혼자의 1시간 7분보다 많았으며, 가장 적은 유배우자 43분보다 24분이나 많았다.

취미 및 여가활동은 미혼자의 경우 요일에 따라 달리 나타났는데, 평일에는 56분, 토요일 1시간 19분, 일요일 1시간 35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결혼상태에서는 요일별로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을 뿐 현저한 격차를 보이지는 않은 특징을 보였다.

VI.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효율화 방안

이상 전체 한국인 및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생활시간배분을 검토하였다. 자원 으로서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등 모두를 위하여 중 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다양한 생활시간배분 양상을 토대로 한국인의 생활시간을 효율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 방안이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 반드시 최선의 방안인 것은 아니며, 통계학적으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 인식 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면시간을 위한 과다한 시간량을 적절히 다소 줄여 개인 및 건강관리, 스포츠 등을 위한 시간에 할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유지를 위한 많은 시간량은 대부분 수면시간이며, 이는 평일과 토요일은 각각 7시간 41분, 7시간 46분으로 유사하였으며, 일요일은 8시간 29분으로 현저하게 많았 다. 그러나 개인위생, 옷갈아 입기 및 외모관리, 이·미용 관련 서비스 받기 등의 개인 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51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자가치료, 의료서비스 받기, 아파서 쉬는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은 7분이었다. 따라서 수면시간을 다소 줄여 개인관리와 건강관리를 위한 시간투입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군다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토요 휴무제가 도입되면 공휴일이라고 인식하여 현재의 일요일처럼 수면 시간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뒤에서 논의되는 가족과의 공유시간을 증대시키고,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운동의 시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혼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필요로 하며, 실제 취업을 많이 하고 있었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이혼가족의 가정 관리, 가족원 보살피기 등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 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을 위한 시간량은 결혼상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혼이 5시간 7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유배우 4시간 28분, 사별 2시간 43분, 미혼이 2시간 4분이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이혼상태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던 이혼자의 경우 고용된 일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무려 4시간 55분이나 되었으며, 이들은 평일 5시간 13분에서 일요일에도 무려 4시간 15분 동안 할 있어 요일에 상관없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장근무 또는 자영업종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에 종사하는 이혼상태의 사람은 평일보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더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이혼상태인 가구의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경제활동여성의 부족한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가정관리는 자신의 가족 및 가구를 위한 가정유지 및 관리 행동으로 요리, 세탁, 청소, 물품구입, 가정경영 등 가사 일이 포함되어있는 활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은 4시간 38분(19.3%),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3시간 4분(12.8%)을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경제활동에 참여부인은 경제활동 비참여부인보다 가

정관리 시간량이 약 1시간 30분 적었다. 음식준비 및 정리를 위한 시간량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인 1시간 47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인 1시간 27분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부인들의 시간 사용은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에 평일보다는 주말로 갈수록 시간사용량이 중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부인들의 경우는 평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시간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부인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가정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들의 가정관리와 일과의 병행을 위한 시간사용의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경제활동참여 부인의 경우 평일에 일을 함으로써 절대시간 부족에 따라 돌볼 수 없었던 가정관리를 휴일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경제활동참여부인들이 일과 가사 및 가족 보살피기에 따른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 보살피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시간 37분이나 경제활동참여부인은 34분만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평일에 일을함으로써 절대시간 부족에 따라 돌볼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참여부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간의 시간활용상 차이를 보여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보살파는 데 있어 경제활동참여부인은 28분을 소요하는데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는 1시간 25분을 소요하였다. 특히 미취학아동 보살피기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참여부인은 17분에 불과한데비해, 경제활동에참여하지 않는 부인은 1시간 9분으로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 및 조부모 등의 기타 가족원을 보살피기에 있어서 경제활동참여부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인의 절반 수준으로 경제활동참여부인의 경우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시간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집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족 내에서의 대책, 즉, 남편의 도움 등과 함께 사회적 지원체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남성의 시간량이 중대되어야 하겠다.

가정관리의 항목별 배분시간량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동시간량은 여자가 2시간 42분이었으나 남자는 22분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는 미취업여성, 즉, 전업주부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감안할 경우 취업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정관리를 위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가정관리를 위한 여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식준비 및 정리에는 1시간 26분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청소 및 정리 33분, 의류관리 24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13분, 집관리 3분, 가정경영 1분 등이었다. 또한 여자의 가정관리 항목별 시간량은 남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량은 요일에 따라서는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관리를 위한 남자의 시간량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청소 및 정리 7분, 음식준비 및 정리와 집관리에 각각 5분,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3분, 의류 관리와 가정경영 각각 1분 등으로 가정관리에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요 일별로 구분하면, 대체로 평일보다는 토요일에,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가정관리를 위 한 남자의 시간량이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우 적은 시간량을 보 였다.

가족 보살피기를 위한 시간량은 평균 25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39분, 남자는 겨우 8분에 그쳐 성별에 따른 격차가 심하였다. 가족 보살피기는 주로 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이는 취업여성의 증대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한 영역인 것으로 가사, 가족 돌보기 등에 대한 남녀의 역할분담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토요일 및 일요일 에 가족을 위한 시간할애가 요망된다. 물론 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일'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적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쉽지는 않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개인과 사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인이 취업여성인 경우 남성의 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이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5. 가족원을 보살피는 절대적 시간량을 늘려 가족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 해하여 화목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특히 자녀 및 노부모에 대한 관심은 최근 부부중심의 가족관에 의하여 소외되고 있는 취약가족원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 자니, 노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25분에 불과하다. 대상가족별로는 미취하 아동을 보살피는 시간량이 16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초·중·고등하교 학생 보살피기 5분, 배우자 보살피기 2분, 부모 및 조부모보살피기 1분, 기타 가족 보산피기 1분 등으로 메우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아동, 노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원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인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 본자료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항목의 시간배분량과 비교하여 가족을 보

살피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족 보살피기의 개별항목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 보살피기는 요일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보살 피는 시간은 평일(5분)보다는 토요일(4분)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3분)이 미미하나마 적었다

따라서 수면시간과 식사 및 간식시간의 합리적 조정으로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전체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과 노인은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들 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10세 이상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1일 평균 3분에 불과하였다. 이를 개별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친구가게 봐주기, 이웃집 농사일 또는 잔치음식 준비 돕기 등의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는 2분, 민방위·예비군 훈련, 환경운동 등 집회·시위참여나 투표참여, 각종 선거유세 관람, 정치적 집회 등 정부기관 행사 참여, 정부나 민간의 각종 실문조사 등의 사회참여활동은 1분에 불과하였다. 특히반상회, 쓰레기 분리수거당번, 마을 청년회·부녀회 활동, 지역의 대책회의, 방범활동, 마을청소 등 지역공동체 활동과 국가 및 지역행사,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 복구관련 등의 자원봉사는 0.5분 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토요일 및 일요일의 여유시간을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별 참여 및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량은 1일 평균 남자 4분, 여자 3분으로 낮았으며, 각 항목별 시간량도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가에 비추어 보아 시간배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무보수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단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돕는 행위인 지역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이를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 및 봉사활동이 평일에는 일, 학업, 가사 등의 사회직 및 가족 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시간을 배분하지 못할 수 있음은 이해되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러한 활동에 시간배분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동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몽 및 인식부족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기혼부인들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량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인은 24시간 중 3분을 사용 하였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부인은 24시간 중 4분을 사용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혼부인이라고 하여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향후 기혼부인의 유휴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역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며, 아울러 참여 및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학적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7.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에서 수면 등 개인유지 다음으로 큰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교제 및 여가활동이며,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TV 시청을 위한 시간량은 매우 많았다. 따라서 자기계발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함 으로써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TV 프로그램 이 시청자의 연령층에 알맞은 흥미중심에서 교양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 중에서 개인유지 다음으로 큰 시간량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4시간 57분이나 된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문, 잡지, TV, 비디오, 라디오, CD·TAPE 등 음악 듣기, 컴퓨터 정보이용 등 대중매체 이용은 가장 많은 2시간 28분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매체 이용 항목이 대부분 TV 시청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인의 학습을 위한 시간량은 매두 낮아 좋은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독서, 사회봉사, 가정관리, 가족 돌보기 등의 항목에 시간량을 증대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에게 TV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질의 프로그램에 의한 방송이 요망됨을 시사한다.

Ⅷ. 결론

오늘날 시간의 가치가 중요시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시간은 정보를 의미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원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라는 명언처럼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성공 또는 실패가 결정되는 것은 비단 대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의 고위공무원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발전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즈음 국가차원에서 최초의 생활시간 실태조사가 1999년 9월에 실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일 24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생활시간 사용양식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원으로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인의 생활시간배분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자원으로 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시간의 효율적 사용은 개인 및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체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상이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5일 근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작금에 있어서 한국인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제도도입 이후 국민의 시간활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이 많은 시간배분을 하고 있는 개인유지, 교제 및 여가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다른 영역, 예를 들면,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시간배분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직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다중적 역할부담은 잘 알려져 있으며, 본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개인 및 집단의 시간배분에 의하여도 가능할 것이며, 사회적 지원체계의 구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튼 본 연구가 국민 개개인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 및 사회가 활기를 되찾으며, 궁극적으로 전체 한국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인의 여가 및 문화 시간 분석

충남대학교이 재 현

한국인의 여가 및 문화 시간 분석

이 재 형

1. 서론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학술적,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국가에서 생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지표의 개발, 각종 정책 수립, 방송 편성, 소비자 행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시간에 대한 이론화와 심충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 시간(time)이라는 범주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시간 요인을 배제하는 탈시간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문화와 여가 행동에 대한 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 국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 패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문화및 여가 시간 패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문화 및 여가 활동과 관련된기존의 이론적 가정들을 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봄으로써 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용한 결과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문화 및 여가 시간에 대한 전반적 분석, 그리고 여가생활 패턴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 나뉘어진다. 이를 위해 먼저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 조사에서 채택한 행동분류표를 검토하여 문화 및 여가 관련 행동 유목들을 추출하였다(<표 1>).

<표 1> 여가 및 문화 관련 행동분류표

중분류		소분류					
		교계관련 전화 통화(가족,친구)	711				
	Ī	가족, 친척과의 교세	712				
교제활동	71	그외 사람들과의 교제	713				
. — .	i	성묘, 벌초 등	714				
		기타 교제관련 행동	719				
	72.53	신문	721				
		잡지	722				
		TV	723				
대중매체 이용	72	비디오	724				
		라디오	725				
		CD, Tape 등 음악듣기	726				
		컴퓨터 정보 이용	727				
		외국어 관련 하습	731				
3		컴퓨터 관린 학습	732				
일반인의 학습	73	자격증, 취업 관련학습	733				
2001 14	1.55	취미관련 강습	734				
		기타 일반인의 학습	739				
	74	개인적 종교활동	741				
종교 활동		종교집회, 모임 참가	742				
0		그외 종교관련 행동	743				
		영화(극장/비디오방)	751				
		연극(극장), 콘서트	752				
관람 및 문화적	75	전시회, 박물관	753				
행사참여		스포츠경기관람	754				
	is .	기타관람, 행사 참여관련 행동	759				
		길기, 산책	761				
		등산, 하이킹(산림욕 포함)	762				
스포츠, 집밖의		체력단련 위한 개인운동	763				
레저활동	76	그외 스포츠(농구, 축구 등)	764				
에 기원 0		드라이브, 소풍, 관광, 구경	765				
		그외 집밖의 레저활동	766				
1900		독서	771				
		컴퓨터 게임	772				
## P ##		놀이(아이들놀이, 바둑, 장기)	773				
취미 및	77	그외 취미활동(서예, 만들기)	774				
그외 여가활동	100	유흥(술, 춤, 노래방)	775				
		담배 피우기	776				
		아무 것도 안하고 쉼	777				
교체 및 여가 화도	<u>.</u> 관련 목	품구입 (아이쇼핑, 비디오 빌리기)	780				
기타 여가관련 활동		01 1 1 N 1 1 1 07 1 1 1 1 1 2 1 2 1 2 1 2 1 2	799				

^{*} 행동유목 옆의 숫자는 행동분류표상 코드번호임.

2. 문화 및 여가 시간 활용 현황

(1) 시간량

199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 10세 이상 전국민은 문화 및 여가 행동에 요일 평균 6시간 10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의 25.7%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일별로 보면, 평일은 5시간 43분, 토요일은 6시간 38분, 그리고 일요일은 7시간 53분이다. 행위자 비율은 요일 평균 99.5%(평일 99.4%, 토요일 99.6%, 일요일 99.7%)로서 수면, 식사 등 생활 필수 행동에 이어 가장 높다.

문화 및 여가 행동의 행위자 평균 시간을 중분류 행동별로 살펴보면, 대중매체 이용이 3시간 20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제 활동이 1시간 12분, 취미 및 기타여가활동이 55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매체 이용이 전체 문화 및 여가 행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이용 중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에 2시간 37분을 사용하고 있어, 결국 여가 시간의 절대시간을 텔레비전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경향은 행위자 비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중매체 이용이 9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제활동이 76.0%, 취미 및 기타 여가활동이 63.5% 등이다. 특히 텔레비전 이용자 비율은 요일평균 90.7%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의 생활 필수 행동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문화 및 여가 행동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요 행동들을 살펴보면, 요일 평균으로 수면이 7시간 48분, 식사 및 간식이 1시간 43분, 일이 3시간 43분, 이동이 1시간 38분, 가정관리가 1시간 31분 등이다. 그리고 행동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재택시간은 요일 평균 14시간 35분으로, 토요일 14시간 47분과 거의 비슷하나, 일요일은 16시간 27분으로 늘어난다.

< 표 2>는 10세 이상 전국민의 주요 행동별 평균 시간과 행위자 비율, 그리고 행위자 평균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문화 및 여가 시간의 주요 행동과 다른 행동을 비교해 살펴볼 수 있다.

<표 2> 전국민의 주요 행동별 시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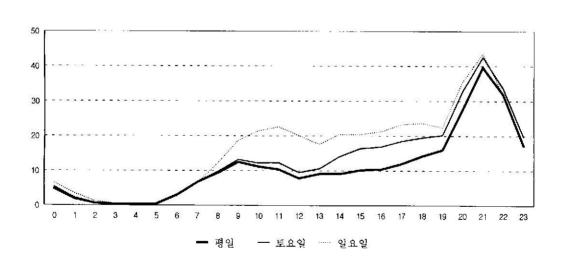
(단위: 시간:분, %)

<u> </u>	_	***	평일			토요일		41 112 25	일요일	
		전체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	전체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	전체 평균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시간
수면	.,	7:40	100.0	7:40	7:45	100.0	7:45	8:32	100.0	8:32
식사 및	및 간식	1:41	100.0	1:41	1:43	100.0	1:43	1:49	100.0	1:49
일		4:03	54.6	7:25	3:35	52.7	6:48	2:13	35.5	6:14
이동		1:34	92.9	1:41	1:41	92.3	1:49	1:33	86.3	1:48
학습(학	†생)	1:45	20.6	8:29	1:07	18.0	6:13	28	14.8	3:12
가정관	리	1:29	58.6	2:31	1:35	62.0	2:34	1:40	68.0	2:27
가족 보	보살피기	27	25.5	1:44	26	26.1	1:40	25	25.1	1:41
참여 등	및 봉사활동	04	2.4	2:26	03	2.1	2:15	03	1.9	2:15
교제활	동	1:08	75.9	1:29	1:18	77.3	1:41	1:27	7 5.5	1:56
대중매	체 이용	3:06	94.1	3:17	3:36	94.9	3:48	4:16	96.3	4:26
	신문	09	24.3	38	09	24.5	37	07	17.5	39
	잡지	01	2.3	43	01	2.5	47	01	2.5	48
	TV	2:22	89.7	2:39	2:52	91.9	3:07	3:33	94.3	3:46
	비디오	02	2.6	1:26	03	3.8	1:28	05	ნ.1	1:44
	라디오	18	17.7	1:39	17	16.6	1:41	15	14.9	1:38
	음악듣기	09	11.7	1:16	09	11.4	1:21	10	12.0	1:23
	컴퓨터 정보이용	03	3.9	1:21	03	3.7	1:33	04	4.1	1:43
일반인]의 학습	09	5.4	2:59	07	4.2	2:55	06	3.8	2:51
종 교활	} 농	07	6.2	2:00	09	6.9	2:06	26	15.7	2:45
관람/	관람/문화행사 참여		0.8	2:01	03	2.4	2:00	04	2.7	2:11
스포츠	스포츠 및 댁외 레저		23.6	1:14	21	24.4	1:25	25	25.4	1:37
취미/2	취미/기타 여가활동		63.4	1:23	1:00	64.1	1:34	1:05	63.3	1:43
7.	컴퓨터게임		6.2	1:20	09	8.7	1:43	12	9.7	2:01
교제・	교제 • 여가관련 물품구입		3.3	0:47	03	5.1	0:55	03	5.3	0:56
교제	여가 활동 전체	5:43	99.4	5:45	6:38	99.6	6:39	7:53	99.7	7:55
재택		14:11	100.0	14:11	14:47	100.0	14:47	16:27	100.0	16:27

(2) 시간대

전국민의 시간대별 문화 및 여가 시간 이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제 및 여가 행동 전체의 행위자 비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전 5시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대까지 일정한 수준을 이루다가, 오후 7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오후 9시경에 최고점을 이루고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평일 낮시간대 교제 및 여가 행동 비율은 대체로 10%를 상회하는 반면, 일요일은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토요일의 경우는 오전 시간은 평일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오후 시간에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높아진다. 한편 저녁 시간대는 9시 최고시점을 전후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밤시간대의 경향은 텔레비전 시청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시간대별 교제 · 여가 비율의 추이

3.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

우리 나라 국민의 여가 및 문화 시간 활용 패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텔레비전이 여가를 식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colonization of leisure)는 텔레비전이 여가시간의 절대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유력한 주장이다. 일찍이 사힌과 로빈슨 (Sahin & Robinson, 1980)은 현대사회에서 텔

레비전이 여가 영역을 "식민화"(colonization of leisure)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

이런 가정은 통계청 자료를 비롯해 우리 나라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10세 이상 국민들의 경우, 평일에 텔레비전을 2시간 22분 시청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2시간 52분, 3시간 33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어, 다른 여가활동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하고 있다.

또한 10세 이상의 전체 국민 중에서 텔레비진을 시청하는 사람의 비율인 행위자율에 있어서도 평일 89.7%, 토요일 91.9%, 그리고 일요일 94.3%로 나타나 거의 모든 국민이 매일 텔레비진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시간량과 행위자 비율은 교제활동을 제외할 경우 텔레비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편이다.

4. 여가 패턴의 동시화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의 동시화(synchronization of labor)에 이어 여가 패턴의 동시화를 초래한다(이재현, 1994). 여가시간 이용패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텔레비전 등 방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송, 특히 텔레비전은 현대사회의 여가양식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에 소비하는 시간량에서 뿐만 아니라, 시청패턴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의례화(ritualization)되어 있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은 여가 영역을 식민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가 패턴의 동시화에 대한 가정들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루 24시간의 기간 동안 생활필수행동으로서의 수면, 노동, 그리고 여가가 시간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즉 시간규율에 의한 분절화(fractionation)에 따라, 수면, 노동 및 여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경계(temporal boundaries)가 확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특히 노동과 여가시간에 있어서 특정 활동이 사회적·집단적으로 집중되는 최고점(peak time)이 존재한다. 그 최고점에서는 사회적으로 행위의 다양성이 최저가 되고, 즉 특정 행위로의 집중 정도가 최고점에 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에 있어 가정생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시청시간을 중심으로 여타 행동이 주위에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가 시간에 특정 행동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간대별 집중도 지수 CI(concentration index)를 구성하였다.

$$CI_t = 1 - \frac{1 - \sum_{i=1}^{k} P_i^2}{(K - 1)/K}$$

여기서 Pi는 시간대별 행동 i의 행위자 비율, K는 행동 유목의 수임.

여기서 CI의 값이 크면, 그 시간대 t에 있어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행위들 중에서 특정한 행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CI 값이 1이면 하나의 행동으로 완전히 집중된 것이고, CI 값이 0이면 각 행동에 똑같이 분산되어 있어 행동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즉 시간대에 따라 CI 값의 변동 추이를 통해 행위의 동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0분 단위로 총 108개 시간대에 걸쳐집중도 지수 CI를 산출하였다. 지수 구성에 사용된 행동 유목은 총 10개로서, 교제 및 여가 활동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① 교제활동, ② 대중배체 이용, ③ 일반인의 학습, ④ 종교활동, ⑤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⑥ 스포츠 및 댁외 레저활동, ⑦ 취미 및 기타 여가활동, ⑧ 교제 및 여가 활동 관련 물품 구입, ⑨ 기타 여가활동, 그리고 소분류 항목이지만 그 비중이 큰 ⑩ 텔레비전 시청 등이다.

1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평일 108개 시간대에 걸친 여가 행위의 집중도 추이를 볼 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대별로 집중도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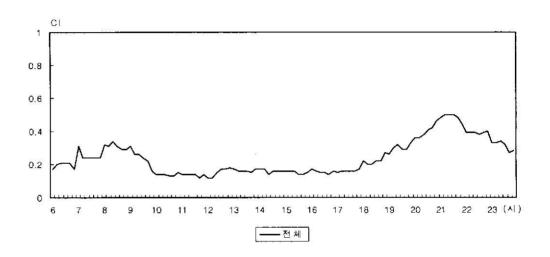
우선 첫 번째로, 앞서 기술한 가정, 즉 시간적인 분절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경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그리고 저녁의 경우는 오후 6시 이후 밤 12시경까지 3개 시간대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전 6시부 터 10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는 여가 행위의 집중도 정도가 낮 시간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후 9시를 전후한 시점에 집중도가 가장 높다.

두 번째로, 이에 따라 시간적 경계가 뚜렷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8시, 밤 12시 등은 여가 행위의 집중도 추이 측면에서 그 전후 시간대를 구별지워는 경계 시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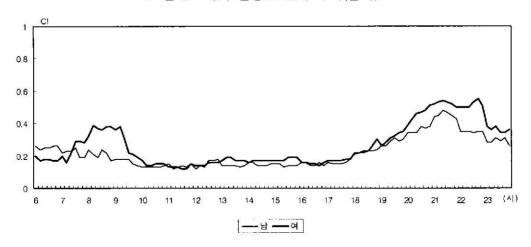
세 번째로 이러한 시간적 패턴을 결정지워주는 행위는, 여기서는 개별 행동별로 행위자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시된 개별 여가행동의 시간대별 추이를 보면 대체로 텔레비전 시청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낮 시간대에는 텔레비전 시청에서 벗어나 다른 여가 및 문화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집중도를 하위집단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고,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이나 기능작업직이 사무기술직보다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그림 3>, <그림 4> 및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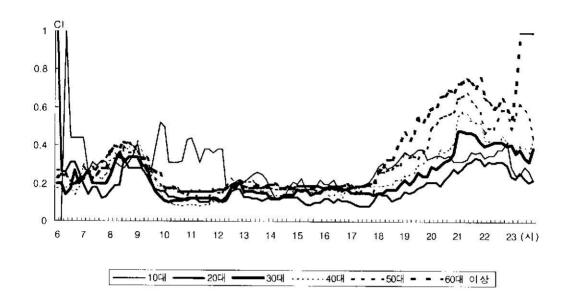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텔레비전 시청을 중심으로 여가 패턴이 동시화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지만, 하위집단에 따라서는 확일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 항에 제시되어 있는 문화자본의 사회적 분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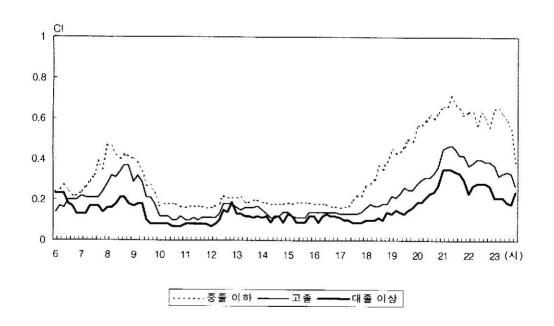
<그림 2> 여가 집중도 CI의 추이(전체)



<그림 3> 성별 여가 집중도 CI의 추이



<그림 4> 연령별 여가 집중도 CI의 추이



<그림 5> 학력별 여가 집중도 CI의 추이

5. 문화자본의 사회적 분포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은 Bourdieu(1977)가 계급관계의 재생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개념화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화적 활동, 문화적 가치와 능력을 지칭한다. 이것은 교육과 같은 재생산 기구를 통해 내면화된 자질, 능력, 취향,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문화직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사회적으로, 특히 계급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문화자본의 사회적 분포는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자본의 사회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자본의 하위 차원들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하위 개념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사교적 자본(social capital), 매체 자본(media capital), 관람·문화 자본(culture capital), 스포츠·레저 자본(sports capital)이 그것이다. 이런 문화자본의 하위 개념들은 시간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문화자본의 유형	문화 및 여가 행동
사교적 자본	교제관련 전화통화 / 가족·신착과의 교제 / 그의 사람들과의 교제 / 성묘, 벌초 등 / 기타 교제관련 행동 / 놀이 / 유흥
매체 자본	신문 / 잡지 / TV / 비디오 / 라디오 / CD, Tape 등 음악 듣기 / 컴 퓨터 정보 이용 / 컴퓨터 게임
관람·문화 자본	영화 / 연극, 콘서트 / 전시회, 박물관 / 스포츠 경기 관람 / 기타 관 람 및 행사 참여관린 행동 / 독서 / 그외 취미활동
스포츠・레저 자본	건기, 산채 / 등산, 하이킹 / 체력 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 그외의 스 포츠 /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 그외 집밖의 레저 활동

<표 3> 문화자본의 하위 개념들

문화자본의 사회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별로 비교해 보면, 대체로 매체 자본과 스포츠·레저 자본은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교 자본과 관람·문화 자본 은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사교 자본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가 많고, 매체 자본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많아진다. 후자의 경우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그리고 관람·문화 자본의 경우는 연령이 적어질수록 많아진다. 그리고 스포츠·레저 자본은 상대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적은 가운데, 1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다(<표 4>).

학력별로 비교해 보면, 사교 자본은 고졸이, 매체 자본은 학력이 낮을수록, 관람· 문화 자본과 스포츠·레저 자본은 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사교 자본은 직업별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매체 자본은 농림어업과 기능작업직 종사자가, 관람·문화 자본은 사무기술직 종사자가, 그리고 스포츠·레저 자본은 사무기술직과 기능작업직 종사자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문화자본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스포츠·레저 자본만 읍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뿐이다.

<표 4> 연령별 문화자본의 분포

(단위: %)

문회	·자본의 소유	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기ス되	사교	(A)	12.7	15.2	15.7	14.8	12.3	10.5	13.7
	매체	(B)	9.7	13.2	13.2	13.9	15.0	16.1	13.3
집중형	관람·문화	(C)	9.6	7.2	4.3	2.4	1.1	.6	4.5
	스포츠ㆍ레	저 (D)	8.3	5.8	6.3	7.1	6.7	5.5	6.7
	A+B	B) 10	5.0	5.8	6.6	7.2	7.9	12.0	7.2
	A+C		5.1	3.9	2.1	1.3	.9	.5	2.4
혼합형	A+D		2.7	3.2	3.6	4.1	5.0	5.6	3.9
도원공	B+C		3.9	4.2	2.4	1.7	.9	1.1	2.5
	B+D		3.5	3.3	3.2	3.8	7.1	9.2	4.8
	C+D	Washington	2.9	1.8	1.4	1.4	.9	.5	1.5
	A+B+C	\$6	1.8	2.3	1.2	.9	.7	.5	1.3
배제형	A+B+D		1.3	1.5	1.6	2.9	5.6	10.0	3.5
세 제 경	A+C+D		1.2	1.2	.7	.8	.5	.4	.8
	B+C+D		1.2	1.3	.8	1.0	1.3	1.7	1,2
분산형	A+B+C+D	700	.3	.7	.4	.4	.7	1.1	.6
Į.	화자본 비소	유	30.7	29.6	36.4	36.7	33.6	24.7	32.1

<표 5> 학력별 문화자본의 분포

(단위: %)

문.	화자본의 소유 형대	중 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사교 (A)	13.1	15.0	13.3	13.9
기즈천	매체 (B)	15.9	13.6	11.1	14.1
집중형	관람·문화 (C)	.9	4.3	7.3	3.4
	스포츠·레저 (D)	5.2	6.1	8.6	6.2
	A+B	9.9	7.4	3.8	7.8
	A+C	.6	2.7	3.2	2.0
혼합형	A+D	4.4	3.8	4.2	4.1
돈밥생	B+C	1.0	2.9	3.5	2.2
	B+D	5.9	4.4	4.5	5.0
	C+D	.4	1.3	2.9	1.2
	A+B+C	.4	1.7	1.9	1.2
배제형	A+B+D	5.9	3.0	2.0	4.0
매제영	A+C+D	.3	1.0	1.3	.8
	B+C+D	.7	1.3	2.1	1.2
분산형	A+B+C+D	.4	.7	1.0	.6
	문화자본 비소유	34.9	30.8	29.2	32.2

6. 인터넷 등 뉴미디어에 의한 올드미디어의 대체

일반적으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매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과 충족 접근(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 계열의 연구들에 따르면 매체 사이에는 기능적 대안(functional alternatives) 관계가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매체를 완전히 대체(replacement)하거나 보완(complementation)하게 된다. 기존 매체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의 결과로 사회적 이용 정도가 약화되거나 기능적으로 재조직화(functional reorganization)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매체관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매체 이용 시간량(amount of use)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매체 이용 패턴을 보면 매체 구도 상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981년 이후 시계열 조사를 하고 있는 KBS의 국민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매체들이 퇴조하고 새로운 매체들이 약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매체 이용량 추이

(단위: 시간:분)

	평'	평일		.일	일요일	
	1995	2000	1995	2000	1995	2000
텔레비전	2:23	2:24	3:07	2:52	4:02	3:46
라디오	31	12	27	11	22	9
신문	9	5	9	5	7	4
잡지·만화	3	1	4	1	4	1
책	13	6	14	7	16	10
비디오	4	1	5	2	8	4
영화	1	0	2	1	1	2
CD · Tape	5	2	4	2	5	
뉴미디어 방송	-	9	-	10	-	8
컴퓨터 이용	_	15	-	24	=	28
PC 통신	1	0	1	1	1	1
인터넷	_	8	-	10	-	11
컴퓨터 작업	-	2	_	1	- /	1
컴퓨터 게임	2	5	3	12	5	15

* 자료: KBS(1996, 2001)에서 재구성함.

1995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볼 때, 텔레비전은 변화가 없거나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라디오, 신문, 잡지, 책, 비디오 등은 그 이용 시간량에 있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일의 평균 이용 시간량만을 비교해 보면, 라디오의 경우 31분에서 12분으로, 신문의 경우는 9분에서 5분으로 5년 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들었고, 잡지·만화나 책도 각각 3분에서 1분으로, 그리고 13분에서 6분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런 경향은 올드미디어의 퇴조라 할 만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올드미디어의 퇴조 경향과 함께 뉴미디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 이용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이용 시간량은 평일 15분, 토요일 24분, 그리고 일요일 28분이며, 컴퓨터 게임의 시간 량도 매우 많은 편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컴퓨터 게임을 고려한다면 특히 인터넷 이용시간의 비중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인터넷 이용 여부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텔레비전과 인터넷 사이의 관계를 평일의 경우만 비교해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 넷 이용자가 평균 81분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반면, 비이용자는 116분 텔레비전을 시 청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량은 비이용자의 69.8%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평일 텔레비전 시청량이 30.2% 감소된다는 것으 로서 인터넷이 텔레비전 이용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인터넷 이용 여부에 따라 텔레비전 시청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남녀 모두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의 텔레비전 시청량이 더 많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그 격차가 더 크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 층에서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의 시청량이 더 많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많을수록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학력별 집단의 경우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의 시청량이 더 많으며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그 격차가 더 크다. 직업별로도이와 같은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지 기능작업직 종사자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이용 여부와 텔레비전 시청량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시청량은 비이용자의 시청량보다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35%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단별로 인터넷이 텔레비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인터넷 이용 여부에 따른 TV 이용 시간 비교

	여가행동	인터넷	N	평균시간	차이	김증
	471888	이용 여부	19	(분)	F	p
22-	olan zirt	이용	1,215	81	107.042	000**
	선체 집단	비이용	33,786	116	127.643	.000**
	1.1	이용	805	79	02.054	000**
1 ન મને	남	비이용	15,563	118	93.854	.000**
성별	a	이용	410	84	0.4.500	000**
10	4	비이용	18,223	114	34.500	.000.
16.	10년)	이용	376	76	1 490	000
	10대	비이용	6,214	81	1.428	.232
	OO ell	이용	474	82	14.550	000**
서 과 배	20대	비이용	5,366	100	14.558	.000**
연령별	20.4]]	이용	247	77	10.500	000**
	30대	비이용	6.871	104	18.583	.000**
	40-31 -131	이용	118	97	10,000	000**
	40대 이상	비이용	15,335	142	16.326	.000**
	고졸 이하	이용	500	89	E0.004	000**
학력별		비이용	23,763	129	58.891	.000**
악덕별	대졸 이상	이용	447	75	10.040	000**
	내를 이상	비이용	4,665	94	18.046	.000**
	가무하스카	이용	224	62	0.000	000**
	사무기술직	비이용	2,389	78	9.266	.002**
직업별	판매서비스직	이용	185	65	0.710	000**
식권물	판매자미스적	비이 용	6,056	85	9.710	.002**
	기능작업직	이용	63	85	1.010	210
	기등작업적	비이용	4,197	96	1.019	.313
	특별시	이용-	246	84	11 407	.001**
	구열시	비이용	3,996	108	11.467	.001
	광역시	이용	446	82	20.550	000**
지역별	ক্ৰাণ	비이용	11,726	115	39.559	.000**
식극별	중소도시	이용	151	73	20.054	000**
	るでエリ	비이용	4,080	112	20.054	.000**
	hr O	이용	372	80	E0.004	000**
	읍 면	비이용	13,984	121	52.264	.000**

주 1) 인터넷 이용자가 적은 하위집단은 제외 또는 통합함

²⁾ 유의도 ** p=.01

7. 결론 및 제언

199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문화 및 여가 행동에 요일 평균 6시간 10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의 25.7%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화 및 여가 행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문화 및 여가 시간의 절대적 부분을 텔레비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를 경험적으로 재확인 해주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이 텔레비전이 여가 시간을 자배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여가 패 턴의 동시화가 초래되고 있다. 즉 텔레비전이 여가 시간의 중심 축이 되면서 다른 여 가 행동들이 그 주위에 분산되는 여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그러나 이와 같은 여가 패턴의 동시화라는 거대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회 집단에 따라 관람,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 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 행동의 다양성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가 행동의 중심을 이루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여가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인터넷 인구의 확대와 함께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문화 및 여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고려하는 여가 분석 모델 수립 또는 이론화가 요구된다.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의 비중이 커진 만큼 매체 사이의 구도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관심과 투자뿐만 아니라 여가 관련 교육이 긴요하다. 특히 다양한 매체 이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범국가직으로 매체 이용 지표와 같은 문화 및 여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함으로써 문화 및 여가 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관 심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재현 (1994). 노동과 텔레비전, 그리고 생활패턴의 同時化.『언론정보연구』제31호, 117-143.
- 이재현 (1996). 생활시간패턴과 텔레비전 편성. KBS 『방송문화연구』제8집, 267-291.
- 이재현 (1999).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텔레비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추광영 (1994). 1980년대 한국인의 매체접촉 행태의 변화 분석. 『언론정보연구』제31 호, 51-80.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보고서』 제1권 및 제2권. 대진: 통계청.
- 한국방송공사 (1982). 『1981 국민생활시간조사』서울: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1991). 『1990 국민생활시간조사』서울: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1996). 『1995 국민생활시간조사』서울: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2001). 『2000 국민생활시간조사』서울: 한국방송공사.
- Block, M. (1979). Time Allocation in Mass Communication. In Voigt, M. J. & Hannenman, G. J.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Volume 1. Norwood: Ablex, 29-49.
- Boh, K. & Saksida, S. (1972). An attempt at a typology of time use. In Szalai, A. et al. (eds.),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Netherlands: Mouton.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rge, S. (1972). Social differentiation in leisure activity choice: An unfinished experience. In Szalai, A. et al. (eds.),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Netherlands: Mouton.
- Ferguson, M. (1990). Electronic Media and the Redefining of Time and Space. In Ferguson, M. (ed.), *Public Communication: The New Imperatives, Future Directions for Media Research.* London: Sage. pp.152-172.
- Robinson, J. P. (1977). How Americans Use Tim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Praeger.
- Robinson, J. P. (1981). Television and Leisure Time: A New Scennario.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1, 120-130.
- Sahin, H. & Robinson, J. P. (1981). Beyond the Realm of Necessity: Television and

- the Colonization of Leisure. *Media, Culture and Society*, Vol.3, No.1, 85–95.
- Sorokin, P. & Berger, C. Q. (1939). *Time-Budgets of Human Behavi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zalai, A. (Ed.) (1972).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Mouton.
- Thompson, E. P.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 Present*, 38 (December), 56-97.
- Weisberg, H. S. (1993). Central Tendency and Variability. Beverly Hills: Sage.